

발 간 등 록 번 호

11-1342000-000136-10

202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 교육급여 운영 방안 안내

시·도교육청



# I 목차 I

## 제1편 제도 개요

I. 교육급여 전체 업무처리과정 및 주요 내용	2
II. 업무처리 프로세스	3

## 제2편 신청 및 선정기준(202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I. 수급자 신청	12
II. 수급자 선정기준	21
1. 보장의 단위 [시행령 제2조]	21
2. 수급자 선정기준	36
III.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법 제14조의2]	38

## 제3편 조사(202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I. 조사의 개요	42
1. 조사의 목적 및 일반원칙	42
2. 조사의 종류	43
3. 자료 제출 요구[시행규칙 제35조]	46
4. 조사수행 주체	48
5. 조사거부 등에 대한 처리	49
6. 유의 및 기타 행정사항	49
II. 근로능력판정	55
III. 소득조사	59
1. 소득의 의미	59
2. 소득평가액산정[법 제2조제9호 내지 제6조의3, 시행령 제5조 내지 제5조의2]	59
3.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68
IV. 재산조사	91
1. 재산의 종류	91
2. 재산의 조사범위[시행령 제5조의3제2항]	93
3. 재산가액 산정기준	94
4.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95
5. 부채[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1호나목]	122
6. 재산의 소득환산액	127



**제4편 ▶ 급여의 실시**

I. 급여의 개요 .....	134
1. 급여의 목적 및 기본원칙 .....	134
2. 급여의 보호 등 .....	135
3. 급여의 결정 .....	136
4. 소멸시효 및 소급지급 관련 .....	137
5. 교육급여 내용 및 지원 기준 .....	138
II. 급여의 지급 .....	142
1. 급여 지급 절차 .....	142
2. 급여의 중지 .....	148
3. 전·입학에 따른 교육급여 지급 관리 .....	151
4. 상급학교 진학 시 급여 지급 .....	152
5. 계좌관리 .....	152
6. 의사자의 자녀 및 의상자와 그 자녀 지원 .....	156

**제5편 ▶ 수급자 관리**

I. 수급자 증명서 발급 .....	158
II. 보장비용의 징수 .....	159
III. 과외수급(반환명령) .....	166
IV. 이의신청 .....	168
V. 개인정보 보호 .....	171
VI. 데이터 미이관자 정비 .....	172

**제6편 ▶ 기타**

I. 보장기관 .....	174
II. 예산 부담 및 정산 .....	175

**제7편 ▶ 서식 .....** 181**제8편 ▶ 부록**

I.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안내 .....	224
II.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안내 .....	229
III. 압류방지 전용통장 .....	231
IV. 연도별 최저생계비 및 기준 중위소득 .....	236

## 2022년 교육급여 주요 개정사항

### 수급자 선정기준 변경에 따른 조정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구분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596,254원 = 2,334,178원(7인가구 기준) + 262,076원(7인가구 기준 - 6인가구 기준)

### 교육급여 지원금액 변경에 따른 조정

【2022년도 교육급여 학교급별 지원 내역】

(단위 : 원)

구분 \ 급여종류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 수업료
초등학생	331,000	-	-
중학생	466,000	-	-
고등학생	554,000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방법	연1회	연1회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주요 개정 사항

구분	2021년	2022년
나. 기존 수급자 (8쪽)		<p><b>다) 교육급여 자격이 2이상인 경우(지자체 · 학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주민등록번호 또는 대체정보(외국인 번호, 사회복지전산번호 등)으로 교육급여를 신청하여 자격을 취득한 수급자가 다른 정보로 교육급여 자격을 취득하여 교육급여 자격이 2개 이상으로 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학교에서 이중지급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행복e음을 통해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나이스)으로 불필요한 자격 정보를 중지 처리 전송</li> <li>- (학교) 지자체에서 중지 처리한 정보를 확인한 경우 부적합 결정을 완료하여 동일한 학생에게 교육급여가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li> </ul> </li> </ul>
1.급여신청 주체 (12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li> </ul> <p>* 기타 관계인의 범위 :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청소년지도사, 수급권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 등(관련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3조 및 제5조제1항)</p>
5.신청 시 안내사항 (16쪽)	<p>가. 처리기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0일 이내 민원처리 후 통보 예정임을 안내</li> <li>○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li> </ul>	<p>가. 처리기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민원처리 후 통보 예정임을 안내</li> <li>○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연장 가능</li> </ul>

구분	2021년	2022년
가.가구단위 보장 1) 보장가구의 범위 (21~22쪽)	가)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보장가구에 포함하고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동거인으로 반영 단,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은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등재 되더라도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임  (2)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나)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거나, 30세 미만의 미혼부·모인 경우,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판단하면 수급자 가구에서 분리	가)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 (중략) 단,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은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등재되더라도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이나,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의 경우 개인별 보장 대상임  (2) 왼쪽과 같음 (가) 왼쪽과 같음 (나) 왼쪽과 같음 ※ 단 다음 ①~④의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판단하면 수급자 가구에서 개별 보장 가능(①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 중위 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② 30세 미만의 미혼부·모인 경우 ③ 30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으로 탈시설 또는 자립을 위해 부모와 주거를 분리하는 경우 ④ 기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개별 가구 보장이 필요한 경우)
나. 실제소득 (62쪽)	2)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 나)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9)「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	2) 왼쪽과 같음 나) 왼쪽과 같음 (9)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및 같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영아수당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1) 사적이전소득 가)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1) 사적이전소득 가) 왼쪽과 같음

구분	2021년	2022년
라. 이전소득 (76쪽)	(1) 정의 :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	(1) 정의 : 왼쪽과 같음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따른 지원금은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
6. 재산의 소득환산액 (127쪽)	가. 기본재산액 나) 적용금액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 복합 “군” 포함)/중소도시 : 도의 “시”와 특별자치시·도/농어촌 : 도의 “군”	가. 기본재산액 나) 적용금액 ※ 대도시 :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도농 복합 “군” 포함), <b>특례시</b> /중소도시 : 도의 “시”와 특별자치시·도/농어촌 : 도의 “군”

※ 기타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202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 제1편 |

# 제도 개요



## I 교육급여 전체 업무처리과정 및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신청	신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li> <li>○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li> <li>※ 교육급여 신청 시 교육비 동시 신청 안내</li> </ul>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li> <li>-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li> </ul> </li> <li>○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li> </ul> </li> </ul>
	처리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일 (60일까지 연장가능)</li> </ul>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정가구의 소득인정액이 <b>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b></li> <li>※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li> <li>○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li> </ul> </li> <li>○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산정되는 재산</li> <li>- 기본재산액 : 대도시(6,900만원), 중소도시(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li> <li>-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li> </ul> </li> </ul>
	부양의무자 기준	해당없음
조사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등</li> </ul>
급여	종류 및 지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지급</li> </ul>
이의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군·구(읍·면·동)에서 접수하여 신청 또는 소득·재산조사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 사·군·구에서 재조사한 뒤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학교(교육청)에 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이의신청의 경우 접수된 내용을 즉시 학교(교육청)에게 이송</li> </ul> </li> <li>○ 교육청에서 접수하거나 학교(교육청)로 이송된 이의신청이 신청 또는 소득·재산조사에 해당하는 내용인 경우 조사를 시행한 사군·구청에 신청서 접수나 소득·재산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를 의뢰받은 사·군·구청의 통합조사관리팀은 즉시 소득·재산 재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학교(교육청)에 송부</li> </ul> </li> <li>○ 학교(교육청)가 처분함</li> </ul>

※ 본 안내 이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202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 II 업무처리 프로세스

### 1 기관별 역할

구분	내용
읍·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신청 안내, 신청·접수, 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 등</li> <li>○ 교육급여 신청서 접수 및 시·군·구 자료 이송</li> <li>○ 이의신청서 접수 및 자료 이송(소득재산조사에 관한 사항⇒시·군·구, 기타 사항⇒학교(교육청))</li> <li>○ 교육급여 증명서 발급, 급여 계좌 변경 접수 등</li> </ul>
시·군·구 (통합조사 관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여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전송 * 자산조사가 필요한 사업의 신규 신청자 조사 및 선정,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확인조사 업무를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전담하여 자산조사 및 자격관리 일원화</li> <li>○ 소득재산조사 관련 이의신청 사항 재조사 및 통보</li> <li>○ 접수된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소득 재조사 및 통보</li> </ul>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장 결정 및 통지</li> <li>○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중복 지원 확인 등 급여액 관리</li> <li>○ 전출·입, 퇴학, 제적 등 학적 변동 관리 및 변동에 따른 급여액 관리</li> <li>○ 부당수급 의심자 보고 및 부당수급 결정에 따른 반환명령 등 관리</li> <li>○ 상담·신청 안내, 교육급여 관련 민원(이의신청) 처리 및 결과 통보</li> <li>○ 급여 계좌 변경 처리, 증명서 발급 등</li> </ul>
교육청 (교육 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행정 지원 및 교육급여 제도 운영</li> <li>○ 교육급여 예산 관리(국고 및 지자체 예산 신청, 정산, 반환 등 포함)</li> <li>○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학적 관리를 하지 않는 기관 수급자의 보장 결정 및 통지</li> <li>○ 각 학교(국립학교 포함)에서 생성된 교육급여 지급액 집행</li> <li>○ 상담·신청 안내, 교육급여 관련 민원(이의신청) 처리 지원</li> <li>○ 급여 계좌 변경 처리, 증명서 발급 등</li> </ul>

## 2 세부 업무처리 절차

### 가. 신규 신청자

#### 1) 신청 (읍 면 동)

##### 가) 신청서 작성

- 신청서(서식1호) : 신청서의 ‘안내 및 유의사항’을 먼저 신청인에게 설명하여 처리기한, 본인신고의 의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한 정보조회 동의 등에 대한 서명을 받은 후 가족관계, 부양의무자 등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하여 반영
  - 상담과정에서 확인된 정보를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신청인에게 나머지 사항을 기재 후 신청인 서명을 하여 제출하도록 함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서식3호) : 신청 시 수급권자의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동의서를 징구
- 기타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할 구비서류 징구 및 추가제출 서류 안내
- 보장기관은 신청접수 및 조사 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구비가 가능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수급(권)자에게 요청하지 않으며 증명서 발급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 공용 발급하여 활용하여야 함

##### 나) 급여 신청

- 급여를 신청하는 수급권자는 기존과 같이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 할 수 있으며, 본인 선택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신청도 가능
  - ※ 수급권자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만 신청할 수도 있으며,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도 있음
- 이에 수급권자가 급여종류별로 선택하여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 신청 자료 등록 시 정확하게 입력 필요
- 단 교육급여만 선택하여 신청하는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조사 및 자료제출은 요청하지 않음
-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교육급여를 신청할 경우 초·중·고 교육비도 함께 신청하도록 유도하여, 교육급여에서 탈락해도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 ※ 다중으로 교육급여 수급정보가 관리되지 않도록 교육급여 수급여부 확인 필요

- 통합신청 등을 통해 교육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연령 미도래 등의 사유로 교육급여를 받지 않던 기초생활수급자가 학교에 입학할 하는 경우,
  - 지자체 담당자는 직접 또는 유선 등의 방식으로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교육급여 수급 의사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보장 적합 의견을 전송할 수 있음(학교에서 학적여부를 확인하여 보장 결정)

#### 다) 신청서 등록 후 통합조사관리팀 이관

-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제출하는 즉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신청서 정보 입력·등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 즉시 급여신청일 자동부여

### 2) 조사 (사군구 통합조사관리팀)

#### 가) 접수 처리된 신청에 대해서 공적자료 조회요청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가구구성원, 누락된 가구원에 대해 확인 후 공적자료 조회요청(금융재산 조회요청 포함)
  - 교육급여만 신청한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부모의 부양의무자인 조부·모는 조사대상이 아님

#### 나) 추가제출서류 징구 및 실태조사 실시

- 소득재산 등의 확인을 위해 추가로 제출받을 서류가 있는 경우 가구방문 시 징구하거나 민원인이 읍·면·동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함
- 공적자료가 불충분하거나 공적자료로 파악이 어려운 사항 등에 대해 가구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실시

#### 다) 조사결과 반영

- 신청서 접수 시 신고 된 사항과 공적자료 조회결과, 주택조사결과, 생활실태조사 결과, 금융재산 조회결과 등을 적용하여 급여종류별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결정

### 3) 수급자 결정 및 결과 통지 (학교 · 교육청)

-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의 판정 결과(적합/부적합)를 기반으로, 학교에 자동으로 보장 결정 명단 생성(담당자에게 알림 기능 제공)
  -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학적 관리를 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교육급여 수급자 관리를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쓰도록 권고 하되, 단기적으로 시도교육청에서 해당 기관의 학생들의 보장 결정 및 통지
    - 읍·면·동은 신청 접수 시 학생의 학적이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을 반드시 확인하여 접수
- 학교(교육청)는 학생들을 보장 결정한 후 즉시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부적합) 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신청 후 30일 이내)
- 확정된 수급자 명단을 학교, 교육청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저장 및 관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전송

#### 【2022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구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4) 급여 지급

- 지급 기준 및 지급 내역 (학년이 시작되는 '22.3월부터 적용)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내역	지급방법	
초등학생	교육활동 지원비	1명당 331,000원	연1회 일괄지급	현금 지급
중학생		1명당 466,000원		
고등학생		1명당 554,000원		
고등학생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1회 일괄지급	학교로 지급*
	수업료	연도별·금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분기별 지급	
	입학금		1학년 제1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 수급자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을 학교에 기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학교에서 수급자에게 환급

※ 학교에서 수급자에게 교과서를 배부하되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학생들과 구별 없이 배부하고 교과서대 징수 시 교육급여 수급자 교과서대금 인출 유보

## ○ 지급 절차

- (급여액 생성, 학교(교육청)) 보장 결정에 따른 급여 자료 생성 및 제출
  - \* 수급자가 타 사업을 통해 급여 항목을 기 지원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 지원 되지 않도록 유의(단, 전액을 지원받지 못한 경우 차액 지원)
- (급여액 확정, 교육청 사업부서) 교육청은 생성된 급여액을 확인하여 해당 분기의 급여액을 확정하고 차세대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 (K에듀파인)을 통해 지출품의 후 회계부서로 지급 의뢰
- (급여 지급, 교육청 회계부서) 의뢰된 급여내역은 차세대 지방교육 행·재정통합 시스템(K에듀파인)을 통해 원인행위→지출결의→지급명령 후 각 시·도교육청 금고를 통해 급여 입금
  - \* 보장결정일과 실제 지급일 사이에 소득재산변동으로 수급자가 수급권을 상실하는 경우, 이미 보장결정이 되었으므로 교과서대,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신청시기가 고등학교 1학년 1분기인 경우)은 지급하고 수업료는 급여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급여 중지일이 속하는 분기까지 지급(단 수급자가 급여 신청을 취소하거나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급여 미지급)

## 5)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사군구 급여 종류별 사업팀, 학교·교육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서 신청을 대행하여,
  - 소득·재산조사에 해당하는 내용인 경우 사·군·구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재조사하여 결과를 15일 이내에 학교(교육청)에 이송하고
  - 기타 사항인 경우 접수된 내용을 즉시 학교(교육청)에 이송하여 학교(교육청)가 처분
- 교육급여만 신청한 수급(권)자가 교육청에 이의신청하는 경우, 교육청은 이를 접수하여 처리
  - 신청서 접수나 소득재산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청에 이의신청하는 경우, 교육청에서 접수하여 조사를 시행한 사·군·구청에 신청서 접수나 소득재산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 조사를 의뢰받은 시·군·구청의 통합조사관리팀은 즉시 소득재산 재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학교(교육청)에게 송부

## 나. 기존 수급자

### 1)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 가) 소득재산, 가구원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 재산정 (통합조사관리팀)

- 공적자료에 의한 변동사항은 매월 15일까지 반영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자동 연계
- \* 변동사항을 당일 미반영 시 해당 분기 급여는 전월기준으로 생성됨

#### 나) 학적변동 (학교 · 교육청)

- 학생의 전학, 퇴학 등 학적변동사항을 개별 학교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 자동으로 교육급여 시스템에 반영

#### 다) 교육급여 자격이 2이상인 경우 (지자체 · 학교)

- 기존 주민등록번호 또는 대체정보(외국인번호, 사회복지전산번호 등)으로 교육급여를 신청하여 자격을 취득한 수급자가 다른 정보로 교육급여 자격을 취득하여 교육급여 자격이 2개 이상으로 된 경우,
- (지자체) 학교에서 이중지급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행복e음을 통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으로 불필요한 자격 정보를 중지 처리 전송
- (학교) 지자체에서 중지 처리한 정보를 확인한 경우 부적합 결정을 완료하여 동일한 학생에게 교육급여가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

### 2) 급여 지급 자료 생성 (교육행정정보시스템)

-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재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송된 조사자 결정정보(적합/부적합)에 따라 학교(교육청)에 수급자 명단이 변경 (담당자에게 알림 기능 제공)
- \* 신청자의 집 주소, 연락처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자동 연계되어 서면통지 및 문자메세지 통보에 활용
- 급여 지급자료(대상자, 금액, 계좌번호 등)는 변동사항을 적용하여 재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매 달 급여생성일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자동 생성

- 계속 급여를 받고 있던 기존수급자의 경우, 교과서와 교육활동지원비는 매 학년 초에 일괄 지급하고,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입학금은 고등학교 1학년 1분기에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
- 신규로 수급자가 된 경우, 보장 결정일이 매월 15일까지인 경우 해당 월에 자동으로 급여가 생성되고, 매월 16일부터 자격이 결정된 경우 다음 달에 급여가 생성

### 3) 급여액 확정 및 지급 (교육청)

- 급여담당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해 자동 생성된 급여 지급자료 내역을 확인하여 확정 처리 및 결재된 급여 지급자료를 지급

## 다. 수급자 수급자격 관리

### 1)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학교·교육청)

- 공적자료에 의한 변동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자동 알림
- 공적자료가 아닌 자료로 소득산정 된 자(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부과자 등)는 연간조사계획에 따른 확인조사로 변경하여 실시
- 입·퇴학, 전·입학 등 학적변동사항은 학교(교육청)가 처리

### 2) 급여중지 요청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 변동사항을 적용하여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한 결과 선정기준(중위소득 50%)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자 본인이 급여중지를 요청\*한 경우,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학교(교육청)에 보장 중지 요청

\* 수급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로 급여 중지를 신청한 경우 해당 학교(교육청)에 급여 중지 요청 공문을 발송하면 해당 학교에서는 공문을 근거로 급여 중지 처리

### 3) 급여중지 및 결정 (학교·교육청)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장 중지 요청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전달되면 담당자는 자격을 중지처리하고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자격이 중지 처리되면 다음 분기부터 자동으로 학비 지원 중지

※ 자격이 중지된 교육급여 기 수급자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중 고교 학비 지원 대상자'인 경우(입학금·수업료는 교육급여 사업에서 받고 있어 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받고 있는 경우) 교육급여 지급이 중지된 때부터 교육비 지원 사업에서 해당 학년의 수업료 지원

○ 학비 지원대상자가 휴학, 자퇴,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가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업료를 일할 계산하여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반납처리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입학금의 경우 정산 안함[법 47조]

#### 4) 부정수급으로 인한 보장 비용 징수 (학교 · 교육청)

-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에서 교육급여 부정수급을 발견한 경우 학교(교육청)에 해당사항 통보

\* 수급자의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학교(교육청)은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에 부정수급 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 정산하지 않음 [법 제47조]

- 수업료 : 자격중지일이 속하는 다음 분기부터 기산하여 기지원금이 있는 경우 환수

\* 신청 시부터 부정수급이었던 경우는 전액 환수

## | 제2편 |

# 신청 및 선정기준

신청 및 소득·재산조사 업무가 초·중등교육법 제62조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과 시·군·구(읍·면·동)에 위임됨에 따라, 제2편 신청 및 선정기준은 보건복지부 「2022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안내」를 참조하여 교육급여 관련 내용을 편집함



## I 수급자 신청

### 1 급여신청 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 기타 관계인의 범위: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수급권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 등  
(관련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3조 및 제5조제1항)
  -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별도 양식 없음) 지참
  - ※ 교육급여 수급(권)자 학생의 부모는 급여 신청의 주체이나,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아님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 특히, 보장기관은 「지역사회 민·관연계 보장체계」를 구축하여 민간사회복지사 등의 협조를 받아 국가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찾아가는 복지’를 실천
- 통합신청 등을 통해 교육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연령 미도래 등의 사유로 교육급여를 받지 않던 기초생활수급자가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지자체 담당자는 직접 또는 유선 등의 방식으로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교육급여 수급 의사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보장 적합 의견을 전송할 수 있음(학교에서 학적여부를 확인하여 보장 결정)

### 2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 수급권자가 통합신청을 하거나, 급여종류별로 신청하더라도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수급자를 포함하여 급여 신청은 시·군·구 및 읍·면·동으로 단일화 함
- 주가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법 제19조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 3 신청 구비서류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 가. 신청 구비서류

필수 신청서	구비 서류 (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li> <li>•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li> <li>•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li> <li>• 사용대차 확인서</li> <li>• 소득·재산 확인서류</li> <li>•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li> <li>•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실태 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li> </ul> </li> </ul>

#### 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서식 1호)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에 기재된 가족상황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 등본을 통해 확인하고 잘못된 사항은 수정함

#### 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서식 3호)

- 급여신청 시 수급권자의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동의서를 징구
- 다만,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로 신청접수 단계에서 수급권자의 보장신청 접수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고,
  - 부양 거부기피 및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의 조사방법에 따라 수급자격 판단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진행
    -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신청하는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음

##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제출 요구
  -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을 적용하지 않는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신청하는 수급권자라도,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또는 제외되는 사람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 마.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로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
  - ※ 주거급여 수급을 위해 필요한 임대차 관계 입증에서는 LH에서 주택조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의 진위여부가 확인되므로 확정일자 부여여부는 필수사항 아님
    - 단, 주거용 이외 임차보증금의 파악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는 진위여부를 보다 객관화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나 전세권설정 여부 등 관계 자료를 징구
-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거주하는 수급(권)자는 사용대차 확인서 제출 안내(주거급여 사업안내 참조)
  - ※ 고시원, 여인숙 등 비주택 거주자의 경우 입실서, 영수증 등 임대차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안내
  - ※ 사용대차란 수급(권)자가 임대인에게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없더라도 현물·노동 등 임차료 이외의 별도 대가(예: 생활비 일부보조, 육아가사노동, 주택관리 등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거주형태를 말함(기존의 무료임차와 유사 개념)

## 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제출 요구

## 사. 신청서류 보존기간

-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신청서 접수 이후 5년이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전산적 보존(스캔문서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종이서류 원본은 1년까지 보관함

## 4 신청절차

### 가. 신청 안내

- 상담을 통해 수급권자가 필요한 급여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신청 방법과 절차 안내
-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은 통합신청이 기본이나 수급권자가 특별히 원하는 경우에는 급여종류별로 선택하여 신청 가능
- 보장기관은 수급권자가 급여종류별로 신청하는 경우에 통합신청의 유리한 점을 안내하여 통합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
  - ※ 특히, 급여종류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장 결정 이후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줄어들어 선정기준이 낮은 급여를 추가로 지급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도 급여 신청 시 신청되지 않은 급여는 재신청 절차를 거친 후 지급하게 되므로 통합신청이 유리함을 안내
-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교육급여를 신청할 경우 초·중·고 교육비도 함께 신청하도록 유도하여, 교육급여에서 탈락해도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 ※ 다중으로 교육급여 수급정보가 관리되지 않도록 교육급여 수급여부 확인 필요

### 나.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및 직권신청

- 초기 상담 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수급권자의 가구특성 및 기초생활보장 신청 사유 등을 고려하여 “긴급복지지원” 제도에서 인정하는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수급권자가 별도로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은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보장결정 이전에 긴급복지 지원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 『긴급복지지원』 제도에서 인정하는 위기상황

- ①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③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④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⑧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 신청서 작성

###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작성 및 구비서류 안내

- 상담과정에서 파악된 정보는 신청서에 기재되어 출력·제공
  - ※ 신청서 상의 정보조회 동의 서명을 받은 후 가족관계 등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하여 반영하고, 상담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나머지 사항을 기재 후 서명하여 제출하도록 함

## 라. 신청 접수

### ○ 읍·면·동 신청등록 후 시·군·구 즉시 접수처리

- ※ 신청서는 원본을 제출받아 등록 원칙, 팩스 등을 통해 사본만을 제출받지 않도록 유의(법적 다툼시 문제 소지 있음)

## 마. 서류보완 안내

- 제출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내용이나 서류 보완 요청
  - 서류 보완은 향후 조사과정에서 추가될 수 있음을 안내

# 5 신청 시 안내사항

## 가.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민원처리 후 통보예정임을 안내[법 제26조제4항]
  -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연장 가능

## 나. 특별한 사유

-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법 제22조제1항·제2항]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법 제2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
  -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등
    - ※ 교육급여만 신청하는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다. 제출서류 안내

- 신청서, 구비서류 이외에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제출기한 등을 안내
  - ※ 수급권자가 신청서 외에 개별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 목록은 (서식42)를 통하여 안내하고 적정한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수급권자가 구비서류를 제출하러 수차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제도 운영 요망

#### 라. 통지방법

-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법 제26조제3항]으로 하되
  - 이와 병행하여 어르신·장애인 등의 문자해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화안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서비스 등으로도 병행하여 통지할 수 있음을 수급권자에게 알리고 수급권자가 가장 적절한 통지방법을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

#### 마. 신고의 의무 [법 제37조]

- 아래와 같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는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정확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변동사항에 따른 급여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
  - 거주 지역, 세대 구성의 변동, 임대차 계약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변동사항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경우

## 바.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보장 비용을 징수함을 안내
- 특히,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해당하는 사항이 성실 신고 되지 않는 경우 과잉 지급된 급여는 보장비용 징수 대상이 되며, 고의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
  - 부정수급 적발 시 형법 및 개별법에 따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 [법 제49조]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과료에 처함
-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 되거나 결정이 취소 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
  -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준용
    - ※ 동 조항이 부양의무자의 서류 제출 미비 시 수급(권)자의 서비스 및 급여 신청 자체를 각하할 수 있는 조항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유의. 신청의 각하 및 결정 취소는 보장결정 단계에서 판단하는 사항임
    - ※ 「주거급여법」 제24조(벌칙)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주거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 동의사항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인적사항과 “소득·재산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에 동의하는지 여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이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신청 접수(대행)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여부

## 아. 고지사항 안내

-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의 목적으로 다음의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음을 안내
  - 복지대상자 등의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등 수혜 이력에 관한 정보
- 기타 보장 실시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 수집된 정보는 복지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됨을 안내
- 보장결정 후 중지자 뿐 아니라 보장신청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도 5년간 보유함에 유의

## 6 급여신청의 효과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를 제출한 날이 ‘급여신청일’임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를 첨부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첨부 생략 가능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
    - ※ ‘급여신청일’이 ‘급여개시일’임 (단,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에 따름)
- 신청조사 실시 : 3편 “조사” 참조
- 급여의 결정 및 통지 : 4편 “급여의 실시” 참조

## 7 신청 등록

- 읍·면·동 또는 시·군·구 담당자는 대상자가 제출한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
  - 제출된 각종 서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스캔하여 등록

## 8 급여종류별 새울 민원접수 및 등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 시 새울 민원행정시스템에 민원등록 및 접수번호가 급여 종류별로 자동 부여

- 수급권자가 통합신청 한 경우에도 민원사무분류번호 및 민원접수번호는 급여종류별로 부여
  - ※ 단, 교육급여의 경우 민원사무분류번호는 채번되거나 처리기한이 있는 민원으로 관리되지는 않음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민원처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하고 교육급여 민원처리는 조사까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행하며, 조사 이후는 시·도교육감이 담당하여 최종 보장결정 처리

## 9

**긴급 생계급여와 긴급지원사업 연계 검토**

- 긴급 생계급여 : [법 제27조제2항, 시행규칙 제41조]
- 긴급지원사업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 \* 보건복지부 「202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제4편 급여의 실시 > Ⅲ. 급여종류별 세부내용 > 01. 생계급여 > 나. 긴급생계급여” 참고

## II 수급자 선정기준

### 1 보장의 단위 [시행령 제2조]

- 보장기관은 가구를 단위로 하여 급여를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음 [법 제4조제3항]
  - 가구단위 보장 : 보장가구에 속하는 모든 가구원 또는 별도가구 보장
  - 개인단위 보장 : 특정 가구원(교육급여는 학생이 대상임)
- \* 학비를 직접 지급받지 않는 학생의 부모는 교육급여 수급권자가 아니며, 동일보장가구로 조사 대상이나, 보장결정시에는 보장가구원 수에서 제외되며 수급자도 아님

#### 가. 가구단위 보장 [법 제2조제8호 및 제4조제3항]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구는 수급자 선정, 급여액 결정 및 지급의 기본단위임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은 가구를 단위로 산정
  - 급여는 가구를 단위로 하여 지급하는 것이 기본원칙

#### 1) 보장가구의 범위

##### 가)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시행령 제2조]

- (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보장가구에 포함하고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동거인으로 반영
    - 단,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은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등재되더라도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이나,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의 경우 개인별 보장대상임
  -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②항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재외국민”은 보장가구에서 제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 귀국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이하 “재외국민”이라 함)은 귀국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더라도 보장가구에 포함하지 않으며 수급권자로 신청·접수하지 않음
  - 즉, 재외국민은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별가구”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수급(권)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하고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더라도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니고 수급권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로 판단함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
  - 자녀가 교육관계로 다른 곳에 기숙(하숙)하고 있는 경우
  - 행상 또는 근무 등의 이유로 자녀를 타인에게 맡겨서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는 경우
  - 병원 등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 직업전문학교 등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 등
- ②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주민등록 세대분리여부로 판단하지 않음)
  - 사실상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나)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예시)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학생이 부양의무자인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등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급여 신청을 학생 주소지에서 학생만 신청한 경우라도, 실제 보장기관은 생계나 주거를 책임지는 부양의무자의 거주지가 되어야 하며, 부양의무자인 부모와 학생을 동일 보장가구로 묶어 신청하여야 함

- 따라서 교육급여만 신청한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조사는 미 실시하나, 보장가구 확정을 위한 부양의무자 유무 여부는 판단해야 함

※ 단, 다음 ①~④의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판단하면 수급자 가구에서 개별 보장 가능(①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② 30세 미만의 미혼부·모인 경우 ③ 30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으로 탈시설 또는 자립을 위해 부모와 주거를 분리하는 경우 ④ 기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개별가구 보장이 필요한 경우)

※ 주거급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보장가구구성 기준 별도참조

(다)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의무자가 되는 경우

※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은 주 소득원 1인으로 한정(즉, 부부의 경우에도 공동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음에 유의)

※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나 형제·자매가 생계 및 주거를 함께 하고 있는 경우 보장가구에 포함

(3) 외국인에 대한 특례: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제 (1)항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다음의 경우에 한함

(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①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 ②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③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나)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 미성년 자녀는 만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함(「민법」 제4조 참조). 양육이란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로 보장시설에 자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양육에 해당하지 않음에 주의

(다)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난민법」 제32조(기초생활보장)에 따름)

※ 이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난민인정증명서를 제출받아 조사·선정



#### 학생이 있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구성 방법 예시

**예시 1** 부, 모,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대학생 형,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급여를 신청한 학생이 한 가구인 경우

- (생계·의료·교육) 학생의 보장가구원수는 4인이며, 부모 주소지에서 보장 신청함
- \* 거주지가 2개소 이상인 경우의 보장기관은 존속인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임
- (주거) 대학생 자녀 및 학생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기준참조

**예시2** 부, 모,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31세의 미혼 누나,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급여를 신청한 학생이 한 가구인 경우

- (생계·의료·교육) 학생의 보장가구원수는 누나를 제외한 3인이며, 부모 주소지에서 보장 신청함
-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가 아니나 자녀가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인 경우 생계·의료·교육급여의 경우 보장가구에 포함하나, 주거급여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기준에 따라 가구구성 기준참조

**예시3** 부, 부와 별거중인 모, 급여를 신청한 학생이 한 가구인 경우

- 학생의 보장가구원수는 별거중인 모를 포함하여 3인이고, 부의 주소지에서 보장 신청함
- 단, 별거중인 모와 부의 혼인상태가 사실이혼 상태임을 보장기관이 확인하면 지방생활보장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장가구원에서 제외(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신청 시 모는 부양의무자로 조사하지 않음)

**예시4** 부, 부와 이혼하여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모, 급여를 신청한 학생이 한 가구인 경우

- 학생의 보장가구원수는 이혼한 모를 제외하여 2인이며, 부의 주소지에서 보장 신청함(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신청 시 모는 부양의무자로 조사하지 않음)

**예시5** 행방불명인 부, 부와 이혼하고 학생과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모,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외)조모, 급여를 신청한 학생이 한 가구인 경우

- 학생의 보장가구원수는 부, 모를 제외하고 직계혈족인 (외)조모는 포함하여 2인이며, (외)조모의 주소지에서 보장 신청함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신청 시 부·모는 부양의무자로 조사하지 않음)

**예시6** 생활비를 지원하는 거주를 달리하는 부, 부와 이혼하고 학생과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모, 주거를 같이하는 (외)조모, 급여를 신청한 학생이 한 가구인 경우

- 보장가구원수는 직계혈족인 부와 (외)조모를 포함한 3인이고, (외)조모의 주소지에서 보장 신청함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신청 시 모는 부양의무자로 조사하지 않음)

※ 상기 가구구성에 따라 보장가구의 부양의무자 관계가 성립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로 반영. 단,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신청한 수급권자인 경우는 부양의무자 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 나)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 [시행령 제2조제2항]

군복무, 외국체류, 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가출·행방불명·실종, 사망 후 미상속 등의 사유로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 명의의 재산(소득이 아님)을 보장가구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 동 재산은 수급자의 재산에 포함

(1)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

- 단, 사회복지무원, 상근예비역은 보장가구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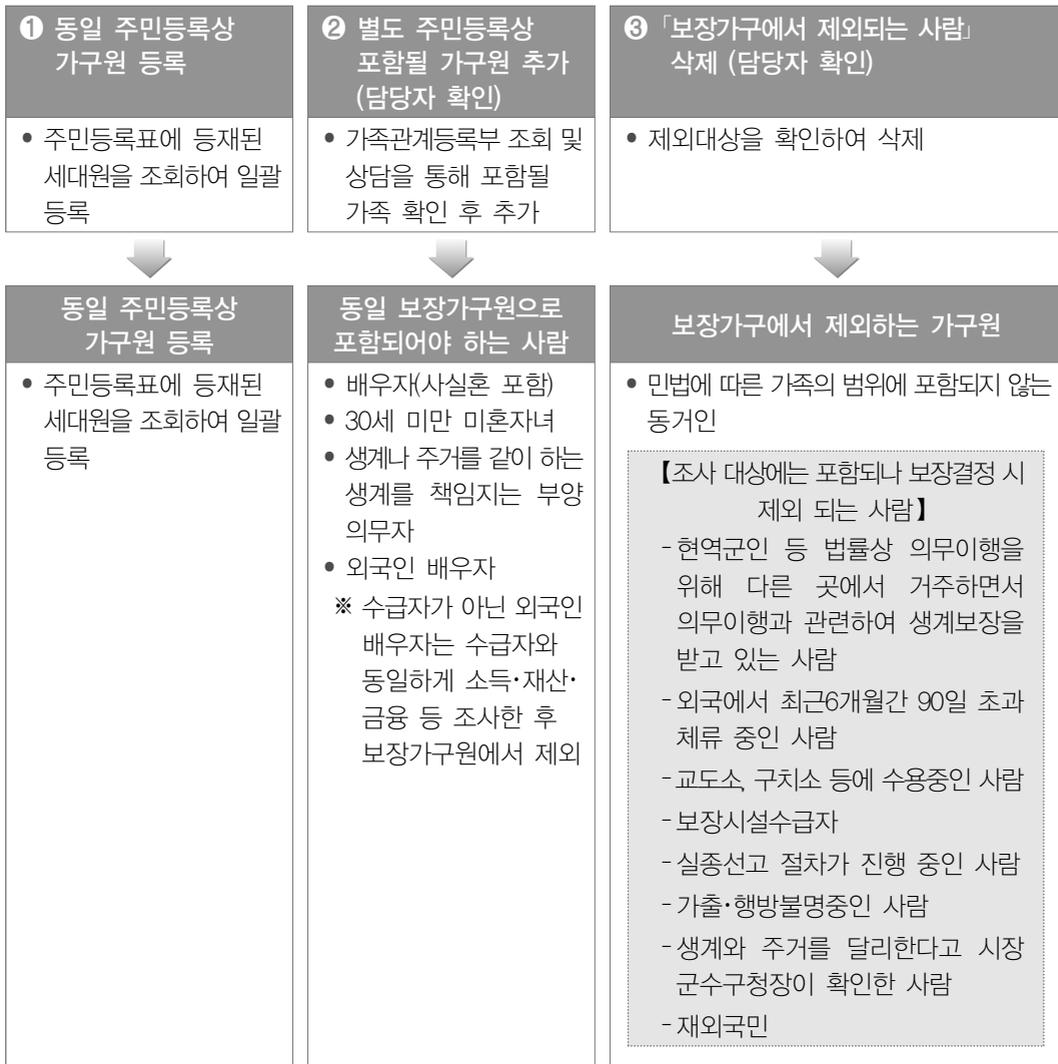
※ 상근예비역 :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기본 군사교육훈련 후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향토방위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

- (2)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체류 중인) 사람  
 - 조사시점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사람이기에 수급자로 보장 결정하였으나, 외국으로 재 출국하여 출국일 시점부터 과거 6개월 중 외국 체류일수와 재 출국하여 외국 체류한 일수를 합한 일수가 91일이 되는 날 보장 중지함  
 ※ 외국국적 소지 여부 확인 및 소지자에 대한 여권사본 제출 필요(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참조)
-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구치소·유치장·치료감호시설·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수용 중인 사람  
 ※ 치료감호시설이란 「치료감호법」 제1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교정시설로 심신장애와 마약 등 중독자의 치료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  
 ※ 교정시설 입소자인 모와 동반 입소아동은 보장 중지되지 않도록 유의, 법무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분유, 이유식 등 급량비를 차감한 후 생계비 지급, 의료급여자격 유지
- (4)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보장시설수급자)
- (5)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 된 후 1개월(30일로 산정)이 자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사실조사보고서 첨부)한 사람  
 ※ 가출·행방불명 신고·해지 여부는 행복e음시스템 변동관리 정보를 확인하여 처리
- (7)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과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주민등록표상 자녀가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생계와 주거를 모두 달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가구에서 제외하고 부양의무자로 처리
- (8)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 귀국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재외국민)  
 - 단, 재외국민 중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 시 신고 받아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재외국민거주자”가 실제 생계가 곤란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수급자로 보장 가능

### 다) 가구 범위 확정 절차

- (1)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람(세대원)을 조회하여 일괄 등록
- (2)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및 상담을 통해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사람 중 동일 보장가구에 포함할 구성원 추가
- (3) 보장가구에서 제외할 가구원을 확인하여 삭제

#### 【가구구성 처리 절차】



※ ‘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가구에서 제외하는 가구원’은 조사 시 가구원으로 등록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보장결정시 급여·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 나. 별도가구 보장 : 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개별가구

### 1) 급여위탁 별도가구 보장

-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별도 가구로 보장하는 경우 적용

### 가) 보장시설 수급(권)자의 별도가구 보장 : 「202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제6편 보장 시설 참조

### 나) 가정위탁 보호로 인한 별도가구 보장

- 친권자의 양육비 지원은 부양의무자로 부터의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 검토
- 친부모사망 후 위탁아동의 상속된 재산(사망보험금 등의 동산, 부동산)이 확인되는 경우, 재산 처분이 곤란한 미성년 아동에 대한 재산특례 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로 제외 검토

#### (1) 대리양육 및 친·인척 가정위탁보호 아동

-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의 가정에서 보호·양육되는 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

#### (2) 일반 가정위탁보호 아동

- 일반인의 가정에서 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 (3) 일시 가정위탁보호 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

#### (4) 가정위탁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 :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2조

-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 ※ (1), (2)의 경우 제3자 부분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을 부과하나, (3)은 주거급여가 미지급되기에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미부과
- ※ 보호자 없이 미성년자 세대로만 수급 신청하는 경우(「아동복지법」 제15조) 아동부서와 협의하여 가정위탁 지정 등 우선 조치 후 부양의무자 조사 실시하지 않음.

## 2)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

-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은 가구 단위로는 급여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하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만 적용
  - 별도가구 보장을 적용하는 가구원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해당 급여의 수급자로 선정
-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을 적용하는 가구에는 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나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를 중복 적용하지 않음(가)와 나) 모두
-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은 가구전체에 대한 조사를 거쳐 급여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 조사 실시 이전이라도 수급(권)자와의 상담과정 등에서 가구전체로는 급여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장이 가능한 가구원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가) 부양의무 미성립 별도가구 보장

- 개념 : 수급(권)자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이지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있음, 의료급여의 경우 미약구간의 부양비 부과로 의료급여 선정기준 초과 포함)으로 인해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어려운 가구 중
  - 그 부양의무자(미약구간인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경우 부양비가 부과되는 모든 부양의무자)와 법률상 부양의무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다음의 가구원은 별도가구로 분리하여 그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급여종류별 수급자로 보장하려는 제도
- (1) (외)조부모와 같이 사는 18세 미만 손자녀(중고등학생(20세 이하), 대학생 포함)가구로
  - (외)조부모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으로 가구전체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그 18세 미만 손자녀(중고등학생(20세 이하), 대학생 포함)를 별도가구로 보장
  - 이때 별도가구로 인정되는 18세 미만 손자녀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어야 함
- (2) (조)부모·(손)자녀(가구)로 이루어진 가구 중 독립한 다른 자녀 또는 부모의 직계 존속으로 인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한 경우
  - 아래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다른 자녀 또는 (조)부모의 직계존속과 부양의무 관계에 있는 (조)부모를 제외한 나머지 (손)자녀(가구)를 별도가구로 보장

- (가) (조)부모 중 1인 이상이 노인, 장애인,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인 경우
- (나) 가구원인 (손)자녀(가구)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 보장이 필요한 경우
- (다) 기타 가구특성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손)자녀(가구)를 별도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일정기간 동안 결정한 경우

## 나) 가구 분리 시 기준충족 별도가구 보장

- 개념 : 가구전체로는 급여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신청하면 기준을 충족하여 급여종류별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가구원 중 다음의 자 또는 가구를 별도가구로 보장

- ※ 동일보장가구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주거급여는 가구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하며, 생계·의료급여는 별도가구로 분리 보장 가능
- ※ 단, 별도가구 보장 대상 가구가 생계 및 의료급여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급여별 보장가구 구성원을 개별 제외하여 구성은 불가

### 동 별도가구 보장 운영 기본 원칙

- ① 별도가구로 인정되어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 외의 나머지 가구원 중 수급자의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생계급여는 '개별 보장 대상자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로 반영하여 처리(단, 동 부양의무자는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미적용)

- ※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 '개별로 보장하는 대상자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1인가구	2인가구
2,722,737원	4,564,119원

- 재산기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5억원	2.5억원	2.2억원

- ※ 소득 또는 재산기준 초과 시 보장 불가하며, 기준이 적용되는 소득 및 일반재산의 종류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와 동일

- ② 별도가구의 가구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상호간에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인 경우 하나의 보장가구로 보장 실시

- 2항 상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가구원 상호간에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별도가구원을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끼리 분리하여 각각 별도가구로 보장 실시

(“별도가구 보장 가구구성 사례” 중 예시4 참조)

- ③ 하단의 (1)~(8)의 별도가구 인정사례 중 “~집에서”의 의미는 주거를 제공하는 사람의 소유권 및 사용권(사용대차 포함)을 모두 포함
- ④ 동 별도가구 보장 적용 시 별도가구가 부양의무자 등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사용대차 사적이전 소득 부과

(1)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다음의 사람 또는 가구

- (가) 65세 이상의 노인
-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다) 만성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사람
- (라) 임산부(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월 미만의 사람)
- (마) 18세 미만의 형제자매[중고등학생(20세 이하), 대학생 포함]
- (바) 이혼·사별한 한부모가족, 미혼 한부모가족
- (사)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으로,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보장기관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 (아) 교정시설에 6개월 이상 수용되었던 사람으로서, 출소한 지 1년 이내(법무보호복지 공단에서의 거주기간은 제외)인 사람

※ 교정시설 출소자가 근로능력자임에도 소득인정액 기준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환경적응기간이 종료되는 출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후에 조건부수급자로 관리하며, 조건불이행자로 결정되면 별도가구 보장 인정불가

(2) 자신의 주거에서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가 없는 형제자매의 소득인정액 때문에 생계 또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다음의 가구

- ① 부부가구 ②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③ 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한부모 가족 포함)

(3) 결혼한 자녀 또는 이혼·사별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

- 동 항목의 자녀에는 미혼모·부인 자녀, 사별한 며느리·사위를 포함하며, 자녀가 사실혼 상태인 경우에는 결혼한 자녀로 판단하지 않음

※ 시부모와 친정부모 모두를 자신의 주거에서 직접 부양하는 경우 양쪽 부모 모두 위 (3)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시부모와 친정부모 모두 별도가구로 인정

- (4) (외)조부모 집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손자녀(중고등학생(20세 이하), 대학생 포함)로 구성된 세대가 부모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가출·유기·방임 등으로 인해 부모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5) (외)손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외)조부모. 단, 65세 이상의 (외)조부모에게는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 한함
- (6) (조)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 (손)자녀로서,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
  - (나)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
  - (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인 배우자가 있는 사람
  - (라)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 (마) 배우자의 복역 또는 군복무로 인하여 배우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 (6)번 조항의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장받는 가구가 아니라도 가구 특성이 한부모가구에 해당하면 동 조항 적용 가능
- (7) (조)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아래의 (손)자녀
- (가)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손)자녀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인 경우
  - (나)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손)자녀로, 만성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경우
  - (다) (조)부모로부터 직접 부양을 받는 결혼한 (손)자녀나 (손)자녀의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인 경우
  - (라) (조)부모로부터 직접 부양을 받는 결혼한 (손)자녀의 가구에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경우
- (8) (조)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30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서 배우자가 없는 (손)자녀, 또는 30세 이상의 만성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미혼이거나 이혼·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손)자녀



### 별도가구 보장 가구구성 사례

- 예시1** 65세의 노인이 형제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정신병원에 장기입원하고 있는 동생이 형의 집에 주소를 둔 경우  
→ 노인 또는 동생을 가구에서 분리하여 별도가구로 보장
- 예시2** 형제의 집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동생 2인이 전입하는 경우  
→ 동생 2인을 1가구 2인으로 별도가구를 인정하여 보장
- 예시3** 65세 이상인 모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자녀가 모의 형제 집에 전입하는 경우  
→ 모와 장애인 자녀를 1가구 2인으로 보장
- 예시4** 65세 이상인 조모의 집에서 한부모가족인 딸 가족 및 사망한 아들의 18세 미만인 자(손자)가 한 가구로 생계·주거를 같이할 때, 조모의 부양능력 있는 다른 자녀가 있어 가구 전체로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보장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가구 인정 방법  
→ 한부모가족인 딸 가족과 사망한 아들의 18세 미만 자(손자)는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이 아니므로 두 가족을 하나의 별도가구로 보장 불가  
→ 한부모가족인 딸 가족은 “가구분리 시 기준총족 별도가구 보장” (6)번의 ‘부모 집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으로 별도가구 보장, 손자는 (4)번의 ‘조부모와 같이 사는 18세 미만의 손자녀’로 별도가구 보장 가능

### 3)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 개념 : 수급(권)자 가구에 동일 보장가구원으로 당연 포함되는 자녀가 취·창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 자녀의 자립을 지원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추후 가족 간의 상호부조로 탈 수급 할 수 있도록 취·창업자녀를 보장가구원에서 제외하고 생계급여는 ‘개별 보장 대상자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로 판단하며, 남은 가구원만 별도 가구로 보장

#### 가) 대상가구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창업 자녀가 있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가구
- 형제자매로만 구성되어 보장받던 가구의 가구원이 취업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
  - ※ 기존 수급자 뿐만 아니라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도 적용 가능
  - ※ ('18.1.1. 이전 기준 적용 대상자) 만34세 초과한 시점부터는 적용기한(3년) 미도래하였더라도 적용 중단

## 나) 보장내용 및 기준

(1) 취·창업자녀를 적용기한 내에서 보장가구에서 제외하고 생계급여는 ‘개별 보장 대상자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로 반영하며 남은 가구원에 대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해당 수급자로 보장

※ 자녀를 포함할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의료급여 선정기준엔 적합한 경우, 의료급여는 동일보장가구로 계속 보장하고, 생계급여에 한해 자녀를 개별 보장 대상자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로 관리할 수 있음

- 하나의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가구에 복수의 취·창업자녀 인정 가능

※ 취·창업 자녀의 주민등록을 가족과 분리하지 않아도 되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은 취·창업자녀 개개인 별로 적용하여 판정

※ 동 보장은 수급(권)자 가구에 취·창업 자녀가 있으면 적용 가능하며, 취·창업 자녀의 소득 인정액 때문에 수급(권)자 가구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도 적용 가능

(2) 동 보장이 적용되는 취·창업자녀의 기준

(가) 공통적용 : 취·창업자녀 1인당 6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동 보장 적용

\* 자활사업 조건부수급자 중 맞춤형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교육 참여 시 조건부과유예 기준 적용

(나) 생계급여 : ‘개별 보장 대상자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3,306,180원	5,542,145원	7,130,992원

- 재산기준(금융재산 및 부채는 적용하지 않음)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5억원	2.5억원	2.2억원

※ 소득 또는 재산기준 초과시 보장 불가하며, 기준이 적용되는 소득 및 일반재산의 종류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와 동일

(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제3편 조사 > V. 부양의무자 조사 > 02. 의료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조사 > 2)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 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4)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적용 부양의무자” 참고)

※ 부양능력 소득평가액의 “있음” 기준은 없으며, 부양능력 소득평가액이 “미약” 구간에 위치하는 경우 “없음”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의 부양비 부과율은 15%임

## 다) 적용기한

- (1) 취·창업자녀의 만 18세(2004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만 35세(1987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적용
  -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학과 재학생이 현장실습에 참여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인정 가능
- (2) 복수의 취·창업자녀를 인정하는 경우 각 취·창업자녀의 적용기한 내에서 보장
  - ※ 단, 가구를 분리하지 않고 보장을 받던 최초 인정된 취·창업자녀의 적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최초 인정된 취·창업자녀를 보장가구에 포함하여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보장여부를 결정하고,
    - 최초 인정된 취·창업자녀를 보장가구에 포함하여도 계속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이후 인정된 취·창업자녀를 적용기한 내에서 계속 적용 가능

## 라) 사후관리

-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특례구분 메뉴에 입력·관리
  - 특례시작일은 특례결정일, 종료일은 적용기한 만 3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 또한, 상담내역에 시작일, 기한 전 종료 시 산정사유 등을 작성 관리
- (2) 동 보장을 적용받는 가구의 취·창업 자녀가 실직·퇴사 등으로 일반수급자로 전환하였더라도 적용기한 내에서 재적용 가능

## 마) 유의사항

- (1) 개별 보장 대상자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로 처리된 취·창업자녀(조손가정의 취·창업 손자녀 포함)와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을 적용 받는 수급자 가구원 중 부양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형제·자매 등에 대해서는 “2)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을 재적용하지 않음
- (2) 조손가정의 손자녀에게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을 적용하는 경우 손자녀는 보장가구원도 아니고 개별 보장 대상자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도 아님
- (3) 취·창업에 따른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보장이며, 근로소득의 유형(상시근로소득, 임시·일용근로소득 등)으로 적용여부를 구분하지 않음

- (4) 동 보장의 적용여부는 별도가구 보장 적용대상 가구원의 소득상황에 따라 동 별도 가구 보장과 근로소득 공제 중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수급(권)자 가구가 선택할 수 있음



**예시**

- 서울지역의 무보증월세 36만원의 주택에 거주하며, 소득인정액이 0원인 4인가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에 만 19세인 첫째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이후 취업을 하여 월 60만원의 임시고용 근로활동을 하는 경우 아래 표와 같이 급여지급의 경우가 발생함

구분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시 (3인, 소득인정액 0원)		근로소득 공제 적용 시 (4인, 소득인정액 14만원)	
	급여지급	산출기준	급여지급	산출기준
급여 계	1,618,410원		1,756,330원	
생계급여	1,258,410원	1,258,410원 (3인 생계급여기준) - 0원(소득인정액)	1,396,324원	1,536,324원 (4인 생계급여기준) - 14만원(소득인정액)
주거급여	360,000원	1급지 3인가구 기준임대료 437천원 > 실제임차료 36만원	360,000원	1급지 4인가구 기준임대료 506천원 > 실제임차료 36만원
의료급여	3인	남은가구원	4인	취·창업자녀 포함

\* 산출기준 : 14만원(소득인정액) = 60만원(근로소득) - 46만원(근로소득공제, 40만원 추가 30%)

- 위 사례의 경우 근로소득 공제 적용시의 급여가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시 급여보다 더 유리하며,
  - 또한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시의 생계·주거급여액이 더 크더라도 취·창업자녀에 대한 의료 급여 지급, 수급자 자격유지가 필요한 경우 등 반드시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을 적용하는 경우가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음

**다. 개인단위 보장 [법 제4조제3항]**

- 가구 전체가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특정급여를 필요로 하는 특정 가구원에 대해 급여를 제공하여 해당 가구가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상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의료급여 특례, 자활급여 특례

## 2 수급자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가. 기준 중위소득

#### 1) 기준 중위소득이란

- 맞춤형급여 도입 이전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함
-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됨
- ※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기준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기준 중위소득이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저생계비를 3년마다 계측

#### 2)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 (1) 산정방식 :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정함
- (2) 기초자료 : 「통계법」제27조에 따라 공표되는 우리나라 가구소득 중 “가계금융복지조사” 사용
- (3) 가구규모 균등화 : 가구원 수의 차이에 따라 가구소득을 조정

#### 3)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 8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 873,588원씩 증가

## 나. 소득인정액 기준

### 1)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2)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초·중고 학생

####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22년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596,254원=2,334,178원(7인가구 기준)+262,076원(7인가구 기준-6인가구 기준)							

## 다. 부양의무자 기준

### 1)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 2)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 적용 : 의료급여
- 미적용 :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3)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Ⅲ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법 제14조의2]

### | 각종 특례 요약 |

특례구분	제도 내용	보장종류
<b>(1)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b>		
○ 의료급여 특례	희귀·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 등으로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는 가구원 개인에 대한 특례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 자활급여 특례	자활소득으로 3개월 평균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초과하는 경우 5년간 보장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	구직촉진수당으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초과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 수급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까지 보장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b>(2) 타 법률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b>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특례	5년간 정착금 재산산정 제외, 부양의무자기준 미적용, 근로무능력가구(+1명기준)	맞춤형 급여체계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특례	생활안정지원금 소득제외, 재산미반영, 부양의무자 미적용	
<b>(3) 기타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b>		
○ 외국인에 대한 특례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배우자, 난민 등 예외적인 경우 보장 가구원 포함	맞춤형 급여체계
○ 영주귀국사할린한인 수급(권)자 특례	특별생계비 소득제외, 재산미반영, 부양의무자 미적용	맞춤형 급여체계
○ 한센인 정착촌 거주자 및 국립 소록도병원 입원자인 수급자 특례	보상금, 배상금 재산 제외, 부양의무자 특례	맞춤형 급여체계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인 수급(권)자 특례	부양의무자 조사유예, 자동차기준 완화	맞춤형 급여체계

특례구분	제도 내용	보장종류
○농어업인 가구인 수급(권)자 특례	농업소득 직접지불금, 보육시설이용료(15만원), 대출금 상환액 추가 지출요인 인정, 재산 500만원 추가 차감	맞춤형 급여체계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정 기준 특례	해외인턴 참가자를 가구원에 포함시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의료급여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군입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군입대자를 가구원에 포함시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의료급여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군 전역(예정) 수급권자 보장특례	전역예정일 2개월 이전 신청가능	맞춤형 급여체계
○가구원 출생시 조사 특례	금융재산 조회 결과 도래전 보장결정 가능	맞춤형 급여체계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아동 조사 특례	금융재산 조회 결과 도래전 보장결정 가능	맞춤형 급여체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관련 주거 급여 특례	기초연금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준연금액의 반영으로 주거급여 자격이 탈락되는 경우 2년간 자격 연장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10.1.)에 따른 특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10.1.)적용으로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여 중지되는 수급자 중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3년간 지속 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b>(4) 재산기준에 대한 특례</b>		
○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의 완화된 기본재산 적용 재산가액 인상시 3년간 추가 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부양의무자 재산범위 특례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되거나,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는 경우 완화된 재산기준 적용 (A+B)×50% 재산가액 인상시 계속 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보장시설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재산범위 특례	완화된 재산기준 적용(A+B)×50% ※ 일반수급자(A+B)×18%	보장시설 수급자

※ 세부내용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 해당 특례편 참조



## | 제3편 |

# 조 사

신청 및 소득·재산조사 업무가 초·중등교육법 제62조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과 시·군·구(읍·면·동)에 위임됨에 따라, 제3편  
조사는 보건복지부 「2022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를  
참조하여 교육급여 관련 내용을 편집함



## I 조사의 개요

### 1 조사의 목적 및 일반원칙

#### 가. 조사의 목적

- 보장기관은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수급권자 소득·재산 등 급여의 결정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급여결정 이후에도 수급자의 수급자격 여부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수급자 소득·재산 등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실시
    - ※ 단,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법 제12조의2]

#### 나. 일반원칙

- 자산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통보)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통보되는 소득·재산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원칙적으로 자동 반영되나, 보유여부만 통보되어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조사·확인 후 반영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인적변동 등 변동사항은 변동 “발생월”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임
  - 단 발생월의 정보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확인월”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음
    - ※ 해당 공적자료가 없거나 자진신고 이전에는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
  - 수급자가 자진 신고한 소득·재산 및 인적변동 등 변동사항의 경우에도 “발생월”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
    - ※ 공적자료의 변동으로 급여종류별 자격 및 급여액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급여종류별 보장중지 및 급여변동 등 처리
  - 변동사항의 처리 방법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규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정수급 기간 및 금액은 부정수급 발생월부터 종료월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 보장기관의 귀책사유로 미지급된 급여에 대한 소급지급도 발생월부터 동일하게 적용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된 소득·재산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공적자료 제공 기관의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 시 수정결과 적용
  - ※ 이 경우 반드시 증빙자료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는 ‘지출실태조사에 의한 소득확인’을 통해 소득을 추가 반영할 수 있음

## 2 조사의 종류

### 가. 신청조사

#### 1) 조사의 목적

- 수급권자 또는 그 친척, 그 밖에 관계인의 급여신청에 대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 [법 제22조]

#### 2) 조사 대상 및 내용

- 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 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 변동 확인, 필요 자료의 제출요구 및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조사내용 : 수급권자의 소득·재산[법 제22조제1항]
  - (가)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조사대상여부
  - (나)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다)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라)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 ※ 필요시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음

#### 3) 조사 시기

- 급여신청서 접수 즉시 조사

#### 4) 조사결과의 처리 : 수급 자격 여부를 판단(적합/부적합)하여 학교(교육청)에 전달

## 5) 조사절차

단 계	업 무 내 용	처리부서
조사대상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 구성 확정 및 신고사항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서 확인</li> <li>- 보장 가구 및 부양의무자의 범위 확정</li> </ul> </li> </ul>	통합조사 담당
공적자료 조회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 조회 요청</li> </ul>	통합조사 담당
공적자료 조회결과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자료 조회결과 확인 및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회된 공적자료 우선 적용</li> <li>-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대해 신청인이 이의제기 시 공적 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먼저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 시 자료 등록 후 수정결과 적용</li> </ul> </li> <li>• 공적자료 조회결과 추가신청 가능한 급여 또는 서비스가 있는 경우 신청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별도신청서 작성 없이 추가 신청</li> </ul> </li> </ul>	통합조사 담당
자료제출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 자료제출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시 진단서 등 추가 자료 확인</li> <li>-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 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li> </ul> </li> </ul>	통합조사 담당
추가소득 파악 및 근로능력 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파악이 곤란한 자에 대한 소득 추가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출실태조사표」 작성 및 상담을 통해 소득출처 파악</li> <li>-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통한 재신고 및 소득 항목별로 추가 파악된 소득 반영</li> </ul> </li> <li>• 근로능력판정절차에 따라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 판정 실시</li> </ul>	
조사결과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조회결과 반영</li> </ul>	통합조사 담당

## 나. 확인조사

### 1) 조사의 목적

-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수행 [법 제23조]

## 2) 조사 대상 및 내용

- 수급자 가구 및 그 부양의무자 가구(조사내용은 신청조사와 동일)

## 3) 조사 시기

- (1) 시·군·구별 연간조사 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 [법 제23조제1항]
  - ※ 단 주기적인 확인조사 이외에 필요한 경우 수시 조사 실시. 특히, 중점관리대상가구 중 부정수급 의심가구에 대하여는 생활실태 등에 대한 확인조사 강화
-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인조사 :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주기적으로 제공, 이에 대한 확인조사 실시
- (3) 연간조사 계획에 따른 조사 : 공적자료로 소득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대상자로서 다음의 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확인조사 실시

구 분	조사주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통보된 공적자료 변동	- 통보시기에 따라 조사
•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대상자,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자, 사적이전소득 부과자, 만성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공제 적용자	- 연1회 (확인조사 주기 시 추가 조사 가능)
• <b>조건부과유예자</b> , 조건불이행자 등 근로능력이 있으나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아니한 자	- 반기별 1회
•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된 자 및 임시일용소득자	- 반기별 1회
• 대부(중개)업체 대출금 부채	- 반기별 1회 (확인조사 주기 시 추가 조사 가능)
• <b>조건부과 유예대상자</b> 중 환경적응기간에 있는 자	- 그 기간 경과 시 소득조사 실시

## 4) 시·군·구별 연간 조사 계획의 수립 [법 제23조제1항, 시행규칙 제37조]

- (1) 보장기관장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1월말까지 수급자 확인조사를 위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따른 공적자료 변동사항 조사는 연간조사계획에 포함
  - 단, 조사내용 및 조사시기는 ‘보건복지부 통보내용 및 시기’로 표시

## (2) 연간조사 계획의 내용

(가) 수급자 등 조사대상자별·조사내용별 조사 시기 및 주기

- ① 수급자별 조사주기 및 조사내용(보장시설수급자 포함)
- ② 수급자별 확인조사 일정

(나) 소득 인정액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다)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라) 수급권자 누락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마) 사회복지관 등에 대한 조사위촉, 기타 조사기간 동안의 행정력 동원, 업무 역할분담 등에 관한 사항

(바) 조사원의 지명과 교육

(사) 관할구역 내 사회복지 관련기관에서 생계곤란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의 종류 등

## 5) 조사결과 처리

- 수급자의 자격조사 결과 변경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송부
- 수급자의 자격, 급여의 종류 및 급여액 등을 변경하고, 부정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 등의 행정절차 수행
-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닌 자가 5인 이상 함께 거주하는 것을 발견 시, 해당 지자체 시설담당 공무원에게 통보
  - 해당 지자체 시설담당 공무원은 미신고 시설 확인 시 수급자에게 보장시설 안내 및 입소 유도

### 3 자료 제출 요구 [시행규칙 제35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되지 않는 자료 또는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재산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
  - 급여종류별 보장 여부 및 급여내용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요구하고,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이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우선적으로 확보
-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 【제출서류 목록】

제출 목적	제출 서류	비고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종 등의 신고접수서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방불명자는 보장가구에서 제외</li> <li>※ 전산 확인이 가능한 군복무확인서, 수용 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제출 서류 제외</li> </ul>
소득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임금확인서</li> <li>월급명세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소득 파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li> <li>퇴직증명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업·퇴직사실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금액증명원</li> <li>휴·폐업 확인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자 소득 파악</li> <li>※ 사업자등록증 전산 확인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종별 출하량 및 수입관련 자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업소득 파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산물 유통기관 판매기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업소득 파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대차 계약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대소득 파악 (건물·상가, 본인 거주 외 주택 등이 조회 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용대차 확인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거급여 대상 확인</li> <li>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파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단서·의료비 영수증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평가액 산정시 가구특성 지출비용으로 실제소득에서 차감처리</li> </ul>
재산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차보증금 파악</li> </ul>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원 판결문, 화해·조정조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 간 부채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대차계약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대보증금</li> </ul>
근로능력 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li> <li>진료기록부 사본(최근 2개월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능력 판정</li> </ul>
급여계좌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장사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급계좌 등록 및 실명 확인</li> </ul>

※ 주거용 이외 임대차계약서는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었거나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징구

## 4 조사수행 주체

### 1) 조사주체

- 보장기관의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담당공무원이 조사를 수행
- 담당공무원은 조사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현장조사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
- 확인조사 시에는 사회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사나 읍·면·동, 시·군·구 공무원, 통·반·이장 등의 지원을 적극 활용
- 주거급여 지급을 위한 주택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행

### 2) 조사의 의뢰

- 관할 지역 외에 거주하는 급여신청자의 가구원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공부상 자료로 조사함을 원칙으로 함
  - 단, 자영업자 등 상당한 소득이 예상됨에도 전산자료로는 소득파악이 곤란하여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체적으로 전화, 방문 등을 통하여 직접 조사하거나 조사대상자 및 조사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해당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 [시행규칙 제36조]
    - ① 소득·재산 전산조회나 급여신청자 면담 등으로 파악이 가능한 사항은 최대한 자체적으로 확인
    - ② 조사를 의뢰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 조사의뢰 및 회신은 시·군·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행

### 3) 조사의 위촉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조사 및 연간조사 계획에 따른 확인조사의 일부를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 관련기관에 위촉하여 실시할 수 있음 [시행규칙 제36조]

## 5 조사거부 등에 대한 처리

- 수급(권)자가 조사 또는 자료제출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한 때에는 급여신청을 각하하거나, 학교(교육청)에 동 사실을 통보하여 급여결정 취소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를 요청 할 수 있음
  - 학교(교육청)는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의 요청에 따라 수급자의 급여결정 취소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법 제22조제8항, 제23조제3항]
  -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및 건강상태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에도 조사 거부·방해·기피에 해당함
  - 급여 정지의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의 주거 및 생활실태, 조사의 거부·방해·기피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정지 기간을 정하여야 함
-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급여실시의 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 실시
  - 이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수급(권)자에게 통보

## 6 유의 및 기타 행정사항

### 가.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은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안내하고 가급적 추가 방문 최소화
- 공적자료 조회 결과 추가로 제공 가능한 급여 및 서비스를 검색하여 안내하고,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별도신청서 작성 없이 추가 신청

### 나. 기타 행정사항

- 개인정보의 보호
  - 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수급자 선정 및 급여결정 등 보장목적에 직접 이용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법 제22조제6항]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8조]
- [법 제23조의2에 따른 금융기관 등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법 제23조의2제6항]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8조]
- 조사의 목적을 충분히 인식하여 조사대상자의 허위진술, 보장대상가구의 조사누락, 조사표 부실 기재 등의 사례가 없도록 조사 및 확인에 철저를 기해야 함
- 조사 시 공부나 전산자료를 근거로 하더라도, 사실조사 결과를 중시하여 부적격자가 선정되거나 보장이 필요한 사람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조사 시에는 지역주민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하여 조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함
- 민간 사회복지사, 보건소 등으로부터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보장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민의 생활실태 및 소득·재산 조사를 즉시 실시

## | 소득·재산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주기 |

구분	조사항목	공적자료	원천기관 변경시기	정보시스템 통보내용	공적자료 입수시기 (주기)*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건강보험 보수월액	4월	전월 보수월액	매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소득신고)	1월	전월 표준보수월액	매월
			고용, 산재보험 보수월액	4월	전월 보수월액	매월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임금내역 * 확인조사시만 제공	매월 (수시)	전월 보수월액	연 2회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11월	연말정산된 근로소득/12	연 2회
		일용근로소득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매분기	신청 조사시 : 최근 3개월 자료 확인조사시 : 최근 6개월 자료)	연 2회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	매분기		매분기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매월	자활사업기관 및 시군구에서 등록한 임금지급내역	매월
	공공일자리 소득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 직접일자리사업 근로소득 (고용노동부)	수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취약 계층 일자리 사업 근로내역정보 (노인, 장애인 일자리 포함)	매월	
	사업소득	농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1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2회
		어업 및 양식업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 소득)	11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2회
		임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1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2회
		기타사업소득 (자영업자)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1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2회
			* 사업자등록증	수시	신규사업자등록자료	연 2회
			* 소유사업장 직원수	수시	소유사업장의 직원수	연 1회
	재산소득	임대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11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2회
		이자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11월	이자소득/12	연 2회
			금융정보 조회결과	4월	(이자소득 보장별 공제금)/12	연 2회
		연금(개인) 소득	금융정보 조회결과	수시	연금(저축, 보험 등) 개시 후 연금의 월 수령액	연 2회

구분	조사항목	공적자료	원천기관 변경시기	정보시스템 통보내용	공적자료 입수시기 (주기)*
기 타 소 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사학퇴직연금급여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공무원퇴직연금급여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국방부퇴직연금급여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별정우체국연금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비정기	전월 지급된 실업급여	매월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비정기	전월 지급된 산재급여	매월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1월	전월 지급된 보훈급여	매월
		*농지연금	매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농림수산식품부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4월	직불금/12	연 1회
재 산	토지	지방세징(재산세, 취득세)	• 재산세 : 11월 • 취득세 : 수시	• 재산세 : 시가표준액 • 취득세 :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연 2회 (취득세 : 매월)
		*국토교통부 지적대장	수시	전월에 변동(취득, 매각 등)된 토지 현황 ※ 매각 현황 제공	매월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지방세징(재산세, 취득세)	• 재산세 : 11월 • 취득세 : 수시	• 재산세 : 시가표준액 • 취득세 :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연 2회 (취득세 : 매월)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시설물제외)	수시	전월에 변동(취득, 매각 등)된 건축물 현황 ※ 매각 현황 제공	매주
	선박	지방세징(재산세, 취득세)	• 재산세 : 11월 • 취득세 : 수시	• 재산세 : 시가표준액 • 취득세 :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연 2회 (취득세 : 매월)
	항공기	지방세징(재산세, 취득세)	• 재산세 : 11월 • 취득세 : 수시	• 재산세 : 시가표준액 • 취득세 :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매월

구분	조사항목	공적자료	원천기관 변경시기	정보시스템 통보내용	공적자료 입수시기 (주기)*	
금융 재산	어업권 및 양식업권	지방세정(취득세)	수시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취득가액)	매월	
	입목재산	지방세정(취득세)	수시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취득가액)	매월	
	회원권	지방세정(취득세)	수시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취득가액)	매월	
	임차보증금	전월세 임차보증금(국토부)	수시	세입자 임차보증금액	매월	
	분양권	*분양권(국토부)	수시	분양권 보유정보	매월	
	조합원입주권	*조합원입주권(국토부)	수시	조합원입주권 보유정보	매월	
	건설기계	*건설기계(국토부)	수시	건설기계 보유정보	매월	
	요구불예금	금융정보 조회 결과	수시	과거 3개월간의 평균금액	연 2회	
	저축성예금	금융정보 조회 결과	수시	계좌잔액	연 2회	
	증권거래	금융정보 조회 결과	수시	(1) 주식, 선물옵션, 펀드, 수익 증권, 출자금, 부동산신탁 등: 최종시계가액 (2) 채권, 어음, 수표, CD (양도성 예금증서), 신주 인수권 증서 등: 액면가액 (3) 예수금: 잔액	연 2회	
	보험증권	금융정보 조회 결과	수시	(1) 보험 해약시 환급금 (계약자 기준) (2) 개시 전 연금보험, 연금저축 해약 시 환급금	연 2회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금융정보 조회 결과	수시	1년 이내 지급된 사고 보험금 지급액(수익자 기준)	연 2회	
	자동차	국토교통부 차적정보		수시	전월에 취득한 차량정보	연 2회
		보험개발원		분기	차량기준가액	매분기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1월	시가표준액	매년	
부 채	대출 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정보 조회 결과	수시	대출 잔액	연 2회
		신용카드 연체금	금융정보 조회 결과	수시	신용카드 미결제액	연 2회
	임대보증금	*국토부 임대보증금	수시	주택소유자 임대보증금액	매월	

※ “\*” 표시된 항목은 참고자료로 제공하며 그 외는 자동반영(일부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

※ 국토부 선박원부 및 해양수산부 어선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로 확인가능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소득·재산·인적정보 연계 현황('20.10월말 기준) |**

기 관 (25개)		연계정보 (82종)
고용 노동부	근로복지공단(3)	신재보험급여, 고용/신재보험 월평균보수금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한국고용정보원(5)	실업급여, 퇴직금, 고용보험, 일용근로소득, 재직자원·알차리 참여금액
	한국장애인고용공단(1)	장애인임금내역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2)	사학퇴직연금 및 재직자 기여금, 연금일시금(기초연금 신청자)
	국가보훈처(3)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국가유공자확인*
국방부	국방부(2)	군인퇴직연금급여, 연금일시금(기초연금 신청자)
	병무청(1)	군복무확인
	국군재정관리단(1)	군인연금 기여금 정보 수신
국토 교통부	교통안전공단(3)	차적정보,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보유정보
	국토교통부(11)	건축물관리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개별(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지적정보, 전월세거래정보, 임대차인정보, 분양권및조합원 입주권정보, 대법원전월세거래정보, 대법원임대차인정보
	보험개발원(2)	차량기준가액, 의무보험가입정보
	금융기관(1)	금융재산정보조회(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수익증권, 보험증권 등)
기획 재정부	국세청(12)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정보/임차보증금*, 종합소득, 근로장려금, 일용근로소득정보, 특정시설 물이용권정보, 연말정산인적공제정보, 연말정산사업장인원수정보,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증권거래과세표준신고
농림축산 식품부(1)	농림축산식품부(1)	농업직불금
	한국농어촌공사(1)	농지연금
	법원행정처(4)	가족관계증명*,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법무부(11)	교정시설입소자자료, 출입국자료(변동분), 출입국자료(이력), 국내 거소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사실증명*, 소년원 입출소자정보, 외국인등록정보, 복수국적자정보, 외국국적동포거소 정보, 치료감호시설입출소자정보
보건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2)	건강보험보수월액, 건강보험 피부양자정보
	국민연금공단(3)	국민연금급여, 소득신고액, 신청자 A급여(기초연금 신청자)
	사회보장정보원(2)	보육시설종사자정보, 민간복지시설종사자정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3)	별정우체국연금, 재직자 기여금, 연금일시금(기초연금 신청자)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관리공단(2)	공무원연금 및 재직자 기여금, 연금일시금(기초연금 신청자)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2)	재산세, 취득세
	행정안전부(3)	주민등록사진정보, 주민정보변동, 주민등록등초본*
	경찰청(1)	실종신고 및 해제자

※ 복지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재산·인적정보(타 시스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G4C)를 이용한 정보 연계(15종)

\*\* 사업자등록정보와 사업자등록증명은 연계방식이 상이하여 별개로 나눔

## Ⅱ 근로능력 판정

### 1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시행령 제7조]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다음의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2022년 기준 만18세(2004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만 65세(1957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까지)
  - ※ 18세 미만 및 65세 이상인 수급자는 당연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임

### 2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시행령 제7조]

#### 가.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
- (2)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의 제출을 통한 근로능력평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만 적용하며,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적용하지 않음
  - 2019.7.1. 전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로 인정된 기존 장애4급 등록자(2019.7.1.~2022.6.30.(3년)까지 일괄 평가유예된 대상자로, 기간 종료 후에는 공단 장애인등록 심사 이력 여부에 따라 평가)
    - ※ 생계급여수급(권)자는 근로능력자에 대한 조건부수급자 지정,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급여 종별을 결정하기 위하여 근로능력평가 실시

- (3) 그 밖에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가)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재학증명서 첨부)
- 2022년 기준 만 20세(2002년생)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 근로 능력자로 전환
    - ※ 한겨레중고등학교(북한이탈주민자녀)에 재학 중인 만 20세 이상 재학생은 근로 곤란자로 판단
  -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1~3급 상이등급 해당자
  - (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 (마)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수급자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2021-210호)」 별표2의 ‘의료급여 회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및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2021-170호)」 별표3의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 산정특례 등록한 본인에 한해 회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암환자는 5년간, 중증화상환자는 1년(6개월 연장 가능)간 근로능력평가 유예
- ※ 결핵질환은 기존 회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에서 '16.7.1일부터 '결핵질환 산정특례'로 별도 분리. 등록기간(등록시작일~치료종료 시까지) 동안 국민기초 1종 수급 및 근로능력평가 유예
- 중증질환 및 회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등록제에 따른 등록자 확인 방법
- (기존 수급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 후 산정특례 등록자인 경우 근로능력평가 유예 및 적용기간 입력
  - (신규 수급권자: 기초수급 예정자로 신청일 현재 건강보험 가입대상)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하여 산정특례 등록자에 대해 ‘근로능력 없음’ 판정 처리
    - ※ 단, 산정특례 등록 대상자이나 미등록 상태인 경우는 신청자가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조치
    - ※ 「2021 의료급여 사업안내」, ‘중증질환 및 회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p.286~297, p.627~671 참고)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AIDS, 상병코드 B20~B24) 감염자의 경우 최초 급여 신청 시에만 ‘일반진단서’로 확인하고, 이후 유효기간 없이 계속 적용

## 나.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가 적용되는 특례

- |                   |                |
|-------------------|----------------|
| 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 ② 북한이탈주민       |
| ③ 수급(권)자의 재산범위 특례 | ④ 보장비용 징수제외 대상 |

(1) “가.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음의 (2)~(3)에 해당하는 사람, 18세 미만의 수급(권)자, 65세 이상의 수급(권)자로만 구성된 가구

(2) 근로능력이 있으나 가구원의 양육·간병 등의 사유로 근로가 곤란한 자를 포함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가) 미취학 자녀를 종일 양육하여야 하므로 근로가 곤란한 수급(권)자

- ①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취학 의무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자녀
- ② 보육료(양육수당은 제외),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않는 경우
- ③ 양육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

(나) 질병·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 가구원을 종일 간병·보호해야 하므로 근로가 곤란한 수급(권)자

- ① 간병대상자 :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자
- ② 보호대상자 : 스스로 식사나 용변이 불가능하거나 보장구가 있어도 실내에서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매, 정신질환 등 인지능력 결함으로 종일 보호가 필요한 경우
- ③ 간병 또는 보호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
- ④ 월 평균 20일 이상이고 1일 4시간 이상의 사회복지서비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군·구 자체사업 등 포함)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로 판정하는 부적정 사례

- ① 투약으로 관리가 가능한 상태의 질병을 적용한 경우
- ② 경증 장애 및 경미한 단순질환자의 간병을 인정하여 적용한 경우
- ③ 아동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음에도 보호자를 아동 양육으로 적용한 경우
- ④ 세대(가구)별 간병·양육으로 2인을 적용한 경우

(3) 조건부과유예자 중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가)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사람

- 임신 사실 확인서(소견서) 및 출생증명서 또는 공부 확인

(나) 사회복지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사람

-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회복지요원, 상근 예비역 등
- 복무확인서를 첨부하고, 복무기간 종료 후에는 새로이 근로능력 여부를 판정
  - ※ 단, 산업기능요원 및 직업군인(부사관, 장교)은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사람으로서 근로무능력자로 판단하지 않음에 유의
  - ※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 판정은 『근로능력판정사업안내』 참조

### Ⅲ 소득조사

#### 1 소득의 의미

- “소득”은 사용되는 대상에 따라서 그 내용이 각각 다름
  -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 즉,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

#### 2 소득평가액산정 [법 제2조제9호 내지 제6조의3, 시행령 제5조 내지 제5조의2]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 산정결과 소득평가액이 “-”가 되는 경우 0원으로 처리하며, 동일 소득 유형별로 합산하여 “-”가 되는 경우 0원으로 처리

\* 사업장1(84백만원)+사업장2(-100백만원)=사업소득(0원)

※ 소득평가액이 (-)인 가구 중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에는 재산잠식 또는 부채증가 등으로 인하여 재산액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해당가구의 신청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유의

## 가. 소득 산정기준

- 상시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 사업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금액)’을 반영
    - \* 100인 이상의 사업장의 건강보험료는 월별로 갱신될 수 있음에 유의
  - 단, 기타 사업소득 금액에 변동이 있거나, 또는 수급자가 이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 평균 소득 반영 가능 (단, 이러한 경우에는 대상자가 매월 보장기관에 직접 소득신고 이행 필요)
    - ※ (주의) 동일한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면서 월 보수만 변동되는 경우(군인 등)는 전월 소득이 아닌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 평균소득을 반영
    - ※ 단, 전년도 소득액 적용이 곤란하다고 수급(권)자가 주장하고, 해당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 제출 시 전월 소득액으로 변경 반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수월액이 변경된 전·후의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 일용근로자소득 :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 반영
  - ※ 임시, 일용직 근로자 및 영세 자영자는 적정한 소득 파악 및 관리를 위해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을 반영함. 단, 확인조사시 조회되는 일용근로소득은 6개월 평균소득(2022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참조)
- 근로 및 사업운영 등 상태가 변경(신규취업, 이직, 실직, 퇴직, 휴직, 복직, 폐업 등)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월부터 변경된 상태를 반영하여 소득액을 산정
  - 공적자료로 조회된 소득이 현재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반영 제외 가능. 다만, 기 지급된 급여의 환수 여부, 소명내용에 대한 추후 사실여부 등 확인 필요
  - 육아, 학업, 기타의 사유로 휴직 중인 자의 소득은 휴직 전 소득을 참고하여 철저히 파악하여 반영
    - \* 반드시 지출실태조사표를 제출받아 소득신고서에 더 낮은 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부과하여야 함)
    - ※ 소득의 변동 상태를 발생월에 바로 반영하는 것이 발생월 기준 적용 반영 원칙에 타당(조사의 일반원칙 참조)
- 그 외 소득 :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 ‘전월 소득’ 반영

## 나. 실제소득 [시행령 제5조]

### 1) 실제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 (1)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2)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3)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4) 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 수급(권)자만 해당), 공적이전소득

### 2)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 [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제2항]

수급(권)자의 소득산정 시 수급(권)자의 소득에서 압류가 되는 금액은 실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음에 유의. 단, 부양의무자의 압류소득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에서 차감

#### 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재산으로 산정)

- (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 장려금

#### 나)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아동보육료
-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육비
- (3) 중·고·대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 (생계지원형 금품 제외)
-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유자녀장학금
- (5) 부양의무자가 아닌 타인 및 공사기관(국가·지자체, 민간기업 등)이 수급(권)자에게 일시적·정기적으로 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금품으로서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월 30만원 이내의 교육 부대비용
  - 단, 교육 부대비용으로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초과액에 대하여 전액 소득으로 산정(예를 들어, 교육 부대비용으로 매월 35만원 지급 시 5만원은 소득으로 산정)

※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보육료·학자금 등 부양의무자가 아닌 타인 및 공사기관에서 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수급(권)자를 거치지 않고 보육·교육기관 등에 직접 납입하거나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더라도 일정한 납입확인을 거친 후에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수급(권)자가 자신의 생계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금품에 한정됨

- 부양의무자가 학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직접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대상이 아니며 동 금액은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하여야 함

- (6)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지급되는 양육수당
- (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농어업인의 영유아보육비
- (8)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른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9)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및 같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영아수당
- (10)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이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자립수당

**다)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급(권)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

○ 다음의 3가지 특징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단, 공공근로사업 노임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에 포함

- (1) 조례에 지원 대상이 수급자나 저소득주민으로 명시
  - 저소득주민은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민” 등과 같이 선정기준이 조례에 명시되어야 함
- (2) 동 금품의 조성을 위한 예산이 100% 지자체의 부담인 사업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재산·장제·자활급여)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할 것
  - 예를 들어, 교육급여의 부가서비스인 중고생 교복비, 생계급여의 부가서비스인 동절기 난방비 등

**3)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2]**

**가) 장애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 (1)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및 동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 수당 및 보호수당
- (2)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동법」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
-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
-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재활보조금
  - 재활보조금을 지급받는 자가 재활(치료·요양 포함)에 지출하는 비용 중 동 재활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로 인정하여 차감
- (5)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가맹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국제경기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이 국민체육공단으로부터 받은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월정금
-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의3, 동법 시행령 제22조의5에 따라 국제장애인 기능올림픽대회에 입상한 사람이 기능 장려를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는 연금(연1회 수령)

## 나) 질병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 (1)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조사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 간 지출한 의료비(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첨부)
  - ※ 일정 기간 지속적 치료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일회성·단발성 치료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제외(의료기관 진단서 등을 통해 판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은 의료기관에 준하여 처리
    - ※ 보장결정 후에는 의료급여 지급에 따라 의료비의 본인부담이 감소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급여액을 산정해야 하며,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확인조사를 실시해야 함
- (2)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및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 (3)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위로지원금 (월 17만원)

### 다) 양육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비 및 「동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추가아동양육비
- (2)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3)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른 소년소녀가정(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부가급여
-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피부양보조금
  -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65세 이상인 수급자 (월20만원 지급)
- (5) 「입양특례법」 제35조에 따른 양육보조금
- (6) 농어민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 자부담 15만원 이내
  - ※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는 '15. 7월부터 삭제되었음에 유의

### 라) 국가유공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 (1)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체육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 (2) 참전명예수당 중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 (3)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에 따른 독립유공자(손)자녀 생활지원금(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월 345천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월 478천원)

## 4)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의2]

-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은 30% 공제 적용
-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30%이상 추가공제 대상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공제 기준은 아래의 표 참조
- 하나 이상의 근로소득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하며, 자활근로 참여자로 자활근로소득공제(30%)와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 적용에 따른 공제액이 같을 경우에는 자활근로소득공제 우선 적용
- 재산소득, 이전소득 및 모든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의 일용근로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자동공제 됨에 유의
- 자활소득 공제 및 자활장려금 지급방식은 자활사업안내 참조

**가) 생계·주거·교육급여 :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에 대해 30% 공제 적용**

**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등록장애인 등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은 아래 공제를 적용**

**| 수급(권)자 유형별 근로·사업소득 공제 현황 |**

공제 대상 수급(권)자	공제대상 소득	공제율
• 등록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 업 참여 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0% 추가공제
•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199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초·중· 고등학생인 경우)	근로·사업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	근로·사업소득	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75세 이상 노인(1947.12.31.이전출생자) • 등록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근로·사업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65세 이상~74세 이하 노인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근로·사업소득	30%
•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단, 대체복무에 따른 급여 등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산정 및 공제 대상이 아님)	근로·사업소득	3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자	행정인턴 참여소득	30%

(1) 등록장애인인 수급(권)자가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의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0% 추가 공제 적용

※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하며,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은 「정신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주간재활시설,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

(2) 25세 이상(199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생인 수급(권)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 범정부 “청년고용활성화 대책” 마련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 ※ 초·중·고등학생이란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교육급여 지급 대상과 동일
- (3) 24세 이하(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자 및 대학생 수급(권)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 대학생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의미하며, 야간대생을 포함하고, 「평생교육법」 제31조, 제32조, 제33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학사 및 학사 이상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정규대학생(사이버대학생, 학점은행제 대학생)도 근로소득 공제 적용
  - 대학생이 휴학, 졸업유예 시 최대 각 1년까지 근로소득 공제 적용, 군복무기간은 기간에 미산입함
- (4)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은 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5)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수급(권)자는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 북한이탈주민은 특례보장 기간 중에만 인정. 특례기간 종료 시 일반수급자에 해당
- (6) 65세 이상 74세 이하의 노인,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7) 사회복무요원 및 상근예비역(복무요원 및 상근예비역 근무수당은 비과세로 소득산정의 대상이 아니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른 검직 허가된 소득을 의미)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8)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의 30% 공제 적용
- ※ 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부·처·청),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시·도교육청 등을 의미하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의미함

## 5)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요인[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의2]

- (1) 1년에 6회 이상 정가지원 사적이전소득 중 부양의무자, 친인척 등의 “월별지원금액 총합” 중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 이하 금액
- (2)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급(권)자의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된 고지서에 따른 본인 부담분 연금보험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는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를 보장기관에 통보한 후 이를 확인하여 소득산정에 반영

※ 체납자로 파악되거나 납부유예자 등으로 분류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로 확인되면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에서 차감

※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급여”는 공적이전소득이며, 공제대상이 아님에 유의

(3) 농어민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농어업인 가구 특례” 중 관련내용 참고)

(가)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1ha미만 소유한 자(임차한 자 포함)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조·제24조에 따라 받은 경영이양소득 보조금·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27조·제42조에 따라 받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논활용직접지불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받은 기본직접지불금

(나) 농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상환액 중 이자비용 50%

(4) 대학생(34세 이하, 1년 이내 휴학생 포함)자녀 등록금을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에서 지출한 경우의 해당 지출금액

- 당월 반영 소득에 대하여 ‘해당 월이 속한 학기(또는 직전 학기~ 전년 학기까지 인정 가능)에 해당하는 등록금 중 실제 지출한 금액÷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며,

- 단, 공제금액은 해당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을 초과할 수 없음

※ '22년 1학기 해당 월 : '22.3~8월 / 2학기 해당 월 : '22.9~'23.2월(기 공제 적용한 해당 학기 등록금을 이후에 중복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

### 3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 일차적으로 관련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동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자료와 본인의 급여신청 시 신고소득 및 소득관계서류 등을 근거로 소득유형별 조사 실시
- 유형별 소득의 구체적인 파악방법은 다음의 방식에 따르되, 그와 다른 명백한 사실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확인에 따른 소득파악이 우선함

## 가. 근로소득

### 1) 정 의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단,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에 포함
    - ※ 국가근로장학금은 「소득세법」에서 비과세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산정에서 제외(「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서목)
    - ※ 단,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회원을 포함)에게 지급되는 수당 중 실비변상적 급여는 회의참석과 관련한 수당으로 국한(회의참석 수당 지급규정에 따르며, 별도의 회의참석 수당규정이 없을 시에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산정(기타소득 과세최저 금액 125,000원))

### 2) 유 형

- 상시근로자 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일용근로자 소득 : 다음과 같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기업, 취업성공패키지(고용 노동부)의 일경험지원프로그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 참여 소득

### 3) 조사방법

#### 가) 상시근로자 소득

#####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우선 반영

##### (가)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다음 순서대로 반영됨

#####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사이버민원」-「개인민원」-「조회발급」-「직장보험료개 인별조회」에서 신고 된 평균보수 월액을 본인이 확인 가능하므로, 취업자에게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으로 보수액 통보 이전에 월보수액 확인이 필요시 동 자료 제출 요청 가능

##### ② 근로복지공단 자료 (직장가입자의 월평균보수)

②-1 산재보험 :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수

②-2 고용보험 :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수

※ 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②-1 고용보험, ②-2 산재보험의 순서로 반영됨

##### ③ 국민연금공단 자료 (직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 장애인고용장려금 신고 자료의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자료의 장애인근로자 보수월액(장애인 근로자인 경우 해당)

##### ⑤ 국세청 자료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 (나)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①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영(입증자료는 시스템에 등록)

예) 공적자료 조회기준일 이후 실직으로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건강 보험공단의 자료를 수정한 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시 수정결과 반영

② 국세청 종합소득만 확인된 자로서 공적자료 조회기준일 이후 이직한 경우는 고용기관에서 발급한 월급명세서를 확인하여 인정

(2) 공적자료를 통해서는 근로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 적용대상 : 월급 이외의 실적급이나 수당이 수입의 주를 이루는 근로자  
예) 택시·관광버스·용달차 기사·관광안내원 등

## 나) 일용 근로자 소득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국세청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조회 결과를 반영하되,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영
-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취득상실통지서, 퇴직증명서 등 고용주 또는 공공기관의 입증자료 제출 시 제한적으로 인정  
※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EITC(근로장려금)제도시행을 위해 사업장에서 일용직에게 지급한 임금을 국세청으로 신고한 자료임

(2) 공적자료를 통해서는 근로소득이 파악되지 않거나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 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 적용대상 : 공적자료가 없거나 있어도 근로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파출부, 건설인부 등 단순 일용노무자

## 다) 자활근로소득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매월 반영 :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시·군·구에서 매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임금지급 내역을 반영내역을 반영

(2) 아래의 실비 지원적 성격의 지원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 (가) 자활근로사업의 참여로 인한 급여 중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
- (나)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프로그램 및 자활사업 등 참여자로 얻는 수당 중 다음 금액
  - ①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 : 1단계 취업상담 참여수당 25만원/월, 장애인 고용전환촉진수당 30만원/월
  - ② 취업성공수당 : 1인당 최대 150만원, 장애인 고용 전환성공수당 최대100만원
  - ③ 자립성과금 : 분기당 최대 210만원

- (다) 내일배움카드제(고용노동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 : 최대 11.6만원/월
  - (라)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지원(고용노동부)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 : 최대 5만원/월
  - (마) 청년도전지원사업(고용노동부)에 참여하는 구직단념청년에게 지급하는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 : 최대 50만원/월
- (3) 동일 사업장에서 자활근로소득과 상시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이 동시에 회신된 경우 자활근로소득만 반영

## 라)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하는 자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9조제1호에 따른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기간근로자)'의 임금
  - ※ 건강보험(직장가입자)에 가입된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임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직장가입자 보수월액)로 조회되어 상시근로소득에 반영됨
  - ※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소득은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지 않으므로(개발 추진 중) 동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참여자 중 수급자에 대해서는 소득 반영할 수 있도록 처리

## 나. 사업소득

### 1) 농업소득

#### 가) 정의

- 경종업,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나) 조사방법

- 공적자료(농지원부) 또는 신고를 통해 농지 소유여부, 면적, 재배작물을 파악
  - 농산물 소득정보의 단가를 참조하여 작황상황, 시장가격, 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경작면적에 작물별 단가를 곱하여 농업소득 산정
  - ※ 농산물 소득정보 : 농사로([www.nongsaro.go.kr](http://www.nongsaro.go.kr))→농업경영→농산물소득 참조

**농업소득 = 경작면적 × 작물별 단가**

- 경작면적 : 농지원부를 통해 확인
- 재배작물 확인 : 농지원부 또는 신고
- 재배작물별 단가(= 단위 면적당 작물별 소득 - 필요경비) : 농산물 표준소득정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자료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농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 축산업소득은 가축 종류, 사육두수 등 신고 자료를 통해 산정
- 공적자료를 통해서 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2) 임업소득**

**가) 정의**

- 영림업(營林業)·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임목재산 자료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임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 수급(권)자에게 임업협동조합, 임산물종합유통센터, 임산물직매장, 목재종합집하장 등 해당지역 임산물 유통기관의 판매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득산정
- 공적자료를 통해서 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3) 어업 및 양식업 소득**

**가) 정의**

- 어업 및 양식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어가(漁家) 및 양식업가가 어업 및 양식업 경영의 결과로 얻은 총수입에서 동 수입을 획득하는데 소요된 소모적 비용을 차감한 금액

## 나)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어업권 및 양식업권과 선박 보유여부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어업 및 양식업 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 유도
- 수급(권)자에게 수협(권)의 어가별 및 양식업(권)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을 통하여 어종별 및 양식업종별 출하량 및 수입 관련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득 산정
- 공적자료를 통해서 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 4) 기타 사업소득

### 가) 정의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나) 조사방법

-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
  - 2개이상 복수사업장의 사업소득 산정시 발생한 손실을 반영하여 합산하나, 이전 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반영하지 않음
- 사회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자'의 소득은 사회보험 소득자료를 국세청 소득자료보다 우선하여 사업소득으로 반영
  - ※ 상시근로소득 공적자료 반영 순서와 동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보유여부 및 수급자 소유사업장 피고용인수를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유도
  - ※ 수급자 소유 사업장 피고용인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시점부터 확인
- 국세청 종합소득자료로 파악이 곤란하거나 과소 파악되는 경우
  - 인적용역제공 사업자(서적·화장품·학습자·정수기·방문판매 등)는 본사의 월급명세서 등을 발급·제출토록 하여 국세청 종합소득과 비교하여 실제소득 반영
  - 국세청 소득자료만으로는 소득을 산정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 ※ 예) 행사, 노점상 등 소규모 영세자영업(고정적인 부업 포함) 등

## 다. 재산소득

### 1) 임대소득

#### 가) 정의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나)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의 임대소득을 우선 반영
- 공적자료 조회 결과 건물·상가, 본인 거주 외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소득 파악(귀속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참고)
  - ※ 임대소득은 국토교통부의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 정보를 추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하고 있으므로 성실신고 하도록 안내 요망

### 2) 이자소득

#### 가) 정의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이자소득에서 이자소득 공제액 24만원을 차감한 금액
  - ※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이자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이자소득\* - 24만원\*\*(이자소득 공제액)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제공받는 자료에서 조회되는 이자 소득으로 연 10만원 이하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계좌는 수집 대상에서 제외
  - \*\* 생활준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질의응답집 ‘이자소득 소명처리 방법’ 참조

#### 나)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이자소득 조회결과를 반영
- 이자소득 발생 적금·저축 등의 가입기간을 확인(계약원장사본, 통장사본, 해지영수증 등) 하여 12개월 초과 상품인 경우 초과된 개월수 (월단위산정)만큼 연간 최대 24만원(월2만원)범위 내에서 추가 공제 가능

### 3) 연금소득

#### 가) 정의

-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
-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연금보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나)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 적용
  - 연 1회, 연 2회 수령하는 상품의 경우 월할(月割)하여 소득으로 적용
    - ※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산정
    -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급여는 연금소득이 아닌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함에 유의

### 4)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 가) 정의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에 따른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지원사업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 나) 조사방법

-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등 가입여부 확인하여 적용
-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의 50%만 소득으로 반영하고, 그 중 50%는 소득에서 공제. 또한, 지급받은 연금누적액은 부채로 반영
  - ※ 단, 연금누적액이 금융회사 부채(예를 들어, 계좌명이 주택연금대출 등으로 표시되는 부채)로 조회되는 경우 연금누적액이 이미 부채로서 반영되었으므로 연금누적액을 부채로 직권 재입력하지 않도록 유의

### 라. 이전소득

#### 1) 사적이전소득

##### 가)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 (1) 정의 :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따른 지원금은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
- (2) 소득관리 방법
- (가)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은 보장기관이 그 소득을 부과한지 1년 이내에서만 유효하며, 1년이 지난 후 재조사하여 지속 지원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삭제
  - (나) 보장기관은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이 부과된 수급자의 지원 지속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확인조사를 실시해야 함**
  - (다) 확인 조사 시 사적이전소득을 재조사하여 부과기간이 1년이 도래되지 않은 사점이라도 수정된 금액으로 갱신 또는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즉시 삭제
- (3) 소득반영 비율
- (가) 부양의무자, 친·인척, 후원자 등의 지원 : “월별 지원 금액 총합”이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초과 시 초과금액은 정기지원 사적이전 소득으로 반영  
 ※ 부양비가 부과되는 부양의무자가 사적이전소득을 지원하는 경우 부과된 부양비에서 사적이전소득금액은 감액함(의료급여)
  - (나)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산정(외국인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외국인 배우자)은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 중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 시 초과금액을 당해가구에 사적이전 소득으로 산정
- (4) 소득반영 방법
- (가) 정기적 지원이란 조사시점 기준으로 최근 1년 중 수급(권)자가 6회 이상 지원을 받는 경우를 말함
  - (나)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은 조사 시점 최근 1년 중 6회 미만의 비정기적인 지원액은 소득에 반영하지 않음
    - 단, 1년에 6회 미만이라도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금액의 합이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반영
    - ※ 동 규정은 사적이전소득 지원횟수는 작으나 1회 당 지원 금액이 클 경우의 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도입. 단, 1회 지원받은 금액이 임대보증금 마련 등 타재산 증가분으로 명확히 확인되거나 수술비 지원 등 불가피한 지출로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반영 제외 가능

(다)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1/12로 나누어 수급자의 월소득으로 반영

###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산정 사례

- 예시1** 1인가구 수급자인 가정위탁보호아동에 대하여 정기후원자 A는 연중 매월 10만원씩 지원, 정기후원자 B는 연중 매월 10만원씩 지원하는 경우
- “월별 지원 금액 총합”을 기준으로 하여 수급자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5% 초과분을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므로,
  -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금액
    - 아동의 월별 지원금액 총합인 정기후원금(20만원)은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15%(291,722원) 이하로 사적이전소득 미반영
- 예시2** 2인가구 수급자에게 지난 1년 중, 부양의무자 A는 2회(1월~2월) 각각 30만원(총 60만원), 친척 B는 1회(3월) 20만원, 후원자 C는 3회(4월~6월) 각각 50만원(총 150만원) 등 총 6회의 지원이 있는 경우
-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금액
    - 부양의무자 A의 2건 총 60만원, 친척 B, 후원자 C의 지원 금액은 월별 지원 금액이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5%(489,013원)를 초과하는 지 검토하여 초과시 차액 소득 반영
    - 1~2월(월별 30만원), 3월(20만원)은 미반영하며, 4월~6월(50만원)은 초과금액인 10,987원을 각 월별로 반영하여 10,987원×3월인 32,961원임
    - 이에 동 수급자의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할 총 금액은 32,961원
  - 동 수급자 가구에 부과하는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월 부과액은 반영대상 금액 32,961원을 1/12개월로 나눈 2,746원에 해당
- 예시3** 부양비 20만원 부과자가 수급(권)자에게 사적이전소득 10만원을 매월 지원하는 경우
-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은 10만원, 부양비는 사적이전소득을 차감한 10만원을 각각 반영함

###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삭제 사례

- 예시1** 조사시점 기준으로 최근 1년 중 지원횟수가 6회 미만(또는 소득반영액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조사 월부터 삭제 가능
- 수급자가 2022.1월에 최초 신청할 당시 조사시점인 2022.1월 기준으로 최근 1년(2021.2~2022.1)간, 2021.5월 2회, 2021.7월 1회, 2021.8월 3회, 2021.9월 2회로 총 8회의 부양의무자 지원이 확인되어, 2022.1월부터 사적이전소득을 산정. 2021.10월 이후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의 지원이 전혀 없음이 확인되던 중, 2022.6월은 최근 1년(2021.7월~2022.6월)간 지원횟수가 6회로 성립, 2022.7월은 최근 1년(2021.8월~2022.7월)간 지원횟수가 5회로 미성립하여 2022.7월 소득인정액부터 사적이전소득을 삭제 결정
- 예시2** 부양의무자·후원자가 소득활동, 금융거래 등이 어려운 사정(교정시설 입소 등)으로 지원이 중단되었고, 이후에도 지원 재개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조사 월부터 삭제 가능

## 나)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 (1) 개념 : 부양의무자 또는 타인의 집에 사용대차로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를 지출하지 않음에 따라 간접적으로 얻는 이익을 고려하여 보장기관이 직권으로 부과하는 소득
- 주거급여 수급(권)자이면서 사용대차로 거주하고 있는 수급(권)자에게 부과하는 소득임

### 사용대차란

- 사용대차란 수급(권)자가 임대인에게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없더라도
  - 현물·노동 등 임차료 이외의 별도 대가(예 : 생활비 일부보조, 육아가사노동, 주택관리 등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거주형태를 말함
  - ※ 기존의 “무료임차”와 유사 개념임

- (2) 부과대상자 : 보장가구원이 아닌 자의 집(전·월세 포함)에 사용대차로 거주하고 있는 주거급여 수급(권)자로서 주거급여 지급대상자

- 주거급여 수급(권)자가 아니거나,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주거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수급(권)자는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을 부과하지 않음(주거급여 미지급 대상은 주거급여 사업안내 참조)

※ 예를 들어, 교육급여만 신청하거나 받는 수급(권)자는 사용대차로 거주하더라도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을 부과할 수 없으며,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사용대차로 거주하더라도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아니라면 부과할 수 없음

- 즉, 생계·의료·교육급여 수급(권)자가 동시에 주거급여 수급(권)자인 경우에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을 부과할 수 있으며, 주거급여를 미신청하거나 받지 않는 생계·의료·교육급여 수급(권)자에게는 부과할 수 없음

- (3) 전체사용대차와 부분사용대차 산정기준

- (가) 주민등록상 독립세대 구성여부와 사용대차공간의 독립성(방 외 주방과 욕실 포함 여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분

※ (예시) 수급자 세대의 주민등록은 부양의무자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으나 주거공간이 부양의무자가 소유한 3층 건물의 한 층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체사용 대차로 판단

※ (예시) 주민등록은 주거지를 사용대차로 제공한 형제와 분리되어 있으나, 수급자가 거주하는 별채에 방 외 주방과 욕실이 없어 형제가 거주하는 본채를 이용하는 경우 부분사용대차로 판단

- (나) 다음의 경우에는 제3자 제공 부분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을 적용함

- ① 보장시설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

-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시설운영주체가 개인인 개인운영시설(미신고시설 포함) 또는 공동생활가정 등 보장시설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
- ③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거주자

(4) 유형별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부과기준

(단위 : 원)

구분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 4급지 기준임대료		163,000	183,000	218,000	254,000	262,000	310,000
- 4급지 기준임대료의 60%	A	97,800	109,800	130,800	152,400	157,200	186,000
• 부양의무자 제공 전체	A×100%	97,800	109,800	130,800	152,400	157,200	186,000
• 부양의무자 제공 부분	A×78%	76,284	85,644	102,024	118,872	122,616	145,080
• 제3자 제공 전체							
• 제3자 제공 부분	A×20%	19,560	21,960	26,160	30,480	31,440	37,2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이전 가구원수 기준임대료의 10%씩 증가시키되, 천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여 산정  
 - 4급지 7인 기준임대료 310,000원  
 - 4급지 8인 기준임대료 341,000원  
 (7인 기준임대료 310,000원+7인 기준임대료의 10%인 31,000원)

- 부양의무자의 집에 사용대차를 하고 있는 경우,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하여 부양비가 산정되면 부양비에서 해당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액 만큼을 차감함

※ 예를 들어, 부양비가 60,000원 부과되는 수급자에게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이 76,284원 (1인 부분 사용대차)이 부과되는 경우 부양비는 0원으로 처리하고 사용대차 사적이전 소득을 부과

2) 부양비(의료급여)

- 개념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는 부양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생활비(부양비)를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 인정 [시행령 제5조의6제1항제4호다목]
- 부양비 산정방식 : 부양의무자 기준 참조
  - 부양비 산정시 유의사항 : 해당 부양의무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생활비 지원이 있어 이를 이미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한 경우는 부양비 산정 시 이를 차감하여 계산함

### 3)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항목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시까지는 해당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자체 파악 요망

#### 가) 개념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나)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되는 수당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 (4)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5조의9제4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중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 이하의 금액
-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에 따른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월 345천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월 478천원)

#### 다)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 (1) 복지급여 연계 자료
  - (가)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 (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 (라)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지원금
  - (마) 「입양특례법」에 의한 양육보조금(입양아동양육수당,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 (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 (사)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안내’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2) 타 기관 연계 자료

- (가) 「국민연금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급여
- (나)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 \*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포함
- (다)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직촉진수당
- (라)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수당
  - ※ 정부부처,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직업훈련수당도 최대 30만원 범위내에서 공제 가능하나, 여러개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라도 수급자 1인당 최대 30만원 범위내 공제
- (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당
- (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종 급여: 보상금,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6·25자녀 수당 등
- (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종 급여(보상금)
- (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에 관한 자료
- (차)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근로장려금

## (3) 조사과정에서 추가 확인되는 다음 급여

- (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지원금(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 (나) (지자체 지원) 이·통장 등 직책수당, 출산·고령화 관련 수당, 교통수당, 보훈대상자 추가지원 등
  - ※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복지대상자 추가지원 등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급(권)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 외 기타 지원
  - ※ 이·통장 직책수당은 20만원 범위내 공제 적용
- (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및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급여
- (마)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진폐위로금
- (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연금 및 수당 : 경기력향상연구연금, 대한민국체육 유공자 연금 및 수당 등
- (사)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 2항에 따른 위로지원금
- (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각종급여 : 간호수당, 부양 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등
- (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 (차) 「석면피해구제법」제10조에 따른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
- (카)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1ha미만 소유한 자(임차한 자 포함)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조·제24조에 따라 받은 경영이양소득보조금·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27조·제42조에 따라 받은 친환경 농업직접지불금, 친환경 축산직접지불금, 논활용직접지불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받은 기본직접지불금
- (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 (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하) 기타(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 4) 국외기타소득

- 외국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

## | 「공적이전소득」 범위 및 가구특성지출비용 요약 |

분 류	소분류	실제소득 포함여부 (시행령 제5조 관련)	소득공제 포함여부 (시행령 제5조의2 관련)		
			가구특성 지출공제	근로유인 공제	그 밖의 공제
생활조정수당	독립유공자	○	○	×	×
	국가유공자	○	○	×	×
	보훈대상자	○	○	×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	○	×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	○	×	×
참전명예수당		○	△	×	×
기초연금		○	×	×	×
장애수당	장애수당	○	○	×	×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	○	×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가급여	○	○	×	×
아동양육비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	○	×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	×	×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		○	○	×	×
양육보조금	입양아동양육수당	○	○	×	×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	○	×	×
연금급여	국민연금급여	○	×	×	×
	공무원연금급여	○	×	×	×
	군인퇴직연금급여	○	×	×	×
	사학퇴직연금급여	○	×	×	×
	별정우체국연금급여	○	×	×	×
실업급여		○	×	×	×
산재보험급여	휴업급여	○	×	×	×
	장해급여	○	×	×	×
	유족급여	○	×	×	×
	상병보상연금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 보험급여	진폐보상연금	○	×	×	×
	진폐유족연금	○	×	×	×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	△	×	×
국가유공자 급여	보상금	○	×	×	×
	간호수당	○	×	×	×
	무공영예수당	○	×	×	×
	6.25 자녀수당 등	○	×	×	×

분 류	소분류	실제소득 포함여부 (시행령 제5조 관련)	소득공제 포함여부 (시행령 제5조의2 관련)		
			가구특성 지출공제	근로유인 공제	그 밖의 공제
독립유공자 보상금		○	×	×	×
진폐위로금		○	×	×	×
국제경기대회입상 장애인의 연금		○	○	×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유족연금	○	×	×	×
	장애연금	○	×	×	×
	간호수당	○	×	×	×
한센인피해자생활지원금		○	○	×	×
보훈대상자급여	간호수당	○	×	×	×
	부양가족수당	○	×	×	×
	중상이부가수당	○	×	×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의료지원금		○	×	×	×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		○	×	×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수당		○	×	×	△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에 따른 지원금	재활보조금	○	○	×	×
	피부양보조금	○	○	×	×
지자체 지원	이·통장 직책수당	○	×	×	△
	보훈대상자 추가지원	○	×	×	×
	조례 근거 복지대상자 추가지원	×	×	×	×
	조례 비(非)근거 복지대상자 추가지원	○	×	×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호흡보조기 대여료	○	○	×	×
	기침유발기 대여료	○	○	×	×
	간병비	○	○	×	×
	특수식이구입비	○	○	×	×
만성질환 등의 3개월 이상 의료비		×	○	×	×
국민연금 보험부담금 보험료 (75%)		×	○	×	×
농어업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	경영이양소득 보조금 친환경 농·축산 직접지불금 조간불리지역소득 보조금 논활용직접지불금 기본직접지불금	○	○	×	×
	보육시설 이용 자부담 15만원 이내	×	○	×	×
	농어업에 사용된 채무의 채무상환액중 이자비용 50%	×	○	×	×
대학생 등록금 지출		×	○	×	×
구직촉진수당		○	×	×	×

## 마.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 조사 [법 제6조의3, 시행령 제5조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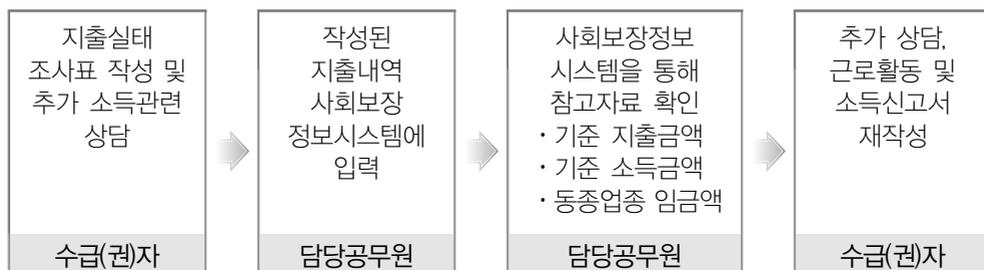
### 1) 공적자료 등으로 파악한 소득 외의 실제소득 조사

- 보장기관은 다음의 경우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 소득을 공적자료 등으로 산정한 소득에 더할 수 있음
  - 수급(권)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소득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2) 적용 대상

- 주거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파악된 소득 이외의 수입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시근로자 소득 : 택시·관광버스·용달차 기사, 관광안내원 등
  - 일용직근로자 소득 : 파출부·건설인부 등 단순 일용노무자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사적이전소득
  - 가구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근로능력이 있으나, 신고 및 공적자료를 통해 파악된 소득이 없는 경우
  - 월급 이외의 실적급이나 수당이 수입의 주를 이루는 근로자
  - 부채의 증가나 재산의 처분 등이 없이 근로·사업소득 등에 비해 일정수준의 생활이 유지되는 경우

### 3) 적용 절차



- 수급(권)자에게 지출실태조사표를 작성토록 하고, 추가 소득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며 작성된 지출항목들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기준 지출금액, 기준 소득금액, 동종업종 임금액 등 참고 자료 확인
  - ※ 기준 지출금액 :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를 토대로 조사대상 가구와 유사한 특성(소득계층, 거주지역, 가구원수)을 가진 일반적인 가구가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된 금액으로
    - 기준 지출금액보다 해당 가구 지출(합계)액이 적은 경우에는 지출실태조사표를 재작성토록 함
  - ※ 기준 소득금액 : 가구원의 인적 구성, 경제적 특성, 지출실태 등 다양한 변수를 이용하여 조사대상 가구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가구의 소득 수준 금액
  - ※ 동종업종 소득금액 : 수급권자와 동종 직업군에 종사하는 자의 평균임금액으로 조사된 소득금액
- 수급(권)자와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소득의 출처를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재작성토록 함
- 재 신고 된 소득을 그 출처에 따라 근로소득, 농·어·임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사적이전소득 등으로 부과
- 소득신고서 작성을 기피하거나 신고소득이 기준 소득금액에 비추어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을 검토(아래 “5)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참고)

#### 4) 지출실태조사표 작성요령 및 안내

- 수급자에 대한 인적 특성과 월 단위 지출항목별 평균지출액(전월 기준)을 기재
- 지출실태조사표 뒷면에 기재된 지출항목 및 해당품목의 지출액이 정확히 기재될 수 있도록 안내

#### 5)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 가) 정의

- (1)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5조제2항 등에 따라 산정하였으나 수급(권)자의 생활실태나 지출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수급(권)자의 소득관련 자료는 없거나 불명확하거나, 소득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질 경우
  - 지출실태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급(권)자와 상담을 하여 추가적인 소득의 출처를 확인하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작성, 소득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 소득신고서 작성을 기피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된 실제소득이 여전히 생활실태나 지출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 즉, 공적자료 및 지출실태조사 등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된 소득 외의 추가 소득을 확인한 경우 산정하는 소득
- ※ 당사자가 소득 확인을 거부·기피하거나 소득확인이 곤란한 경우 포함

#### 신규 신청 수급권자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금지

-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는 조사단계에서 근로능력 있는 수급권자로서 조건부수급자 선정 대상이나,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실직, 폐업, 건강상태 일시 악화 등으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조사 당시 수급권자의 소득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여 보장여부를 결정하고 신규신청자에게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금지
- ※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에게만 산정할 수 있으며,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에게는 산정할 수 없음

### 나)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대상자

- (1) 산정가능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급여종류별 수급자 모두)에게 산정 가능
- ※ 추가소득 또는 은닉소득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거나,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면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하여 즉시 삭제

#### (가)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가능 대상자

-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가능 대상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지출실태조사에 의한 소득확인」을 적용하여 수급자에게 “지출실태조사표”를 작성하게 하여 항목별로 지출 내역을 파악한 후,
  -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경우 미신고 소득은 무엇인지 등을 상담하고 진술하게 하며 우선적으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 소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 주거 및 생활실태 사실조사로 추가 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수급자
-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고 공적자료로는 소득을 확인할 수 없으나 주거 및 생활실태 등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추가 소득 있다고 확인한 수급자

- 특히, 취업알선의 조건을 부여받아 구직등록을 한 취업대상자의 경우 구직활동 사실만 증명하면 조건이행으로 판정되어 상당수가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으므로 소득과약을 철저히 하여 소득신고를 유도하고 추가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여부 검토

- 소득신고를 하였음에도 은닉한 추가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수급자
  -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9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조건부과유예자이나 주거 및 생활실태 등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추가 소득이 있다고 확인한 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로서 주거 및 생활실태 사실조사로 추가 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는 소득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은닉 또는 미신고한 채 소득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조건을 불이행 할 수 있으므로
  - 반드시 주거 및 생활실태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추가 소득 또는 은닉소득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에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 ※ 조건불이행자로 결정된 사유만으로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산정할 수 없으며, 추가 소득 또는 은닉소득이 있음이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상담, 사실조사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산정 가능

(나)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면제 대상자

-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산정가능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에 지출실태조사표, 사실조사보고서 등의 근거를 확보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 아래 (1)~(3)에 해당하는 '산정면제 대상자'가 아니면 모두가 '산정가능 대상자'로 판단하여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산정하지 않도록 유의

- '자활사업 안내'에 따라 조건부과유예자로 선정된 수급자
  - ※ 단, 근로무능력자, 조건부과유예자는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자이나 실제 근로를 통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소득을 조사(지출 실태 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등 활용)하여 소득 산정
- 수급자가 객관적인 소득 자료를 입증하고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 기타, 보장기관의 장이 근로에 종사하지 못할 명백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기간 (교통사고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 사실이 명백한 경우 등)

## 다)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기준

### (1) 소득관리 방법

- (가) 보장기관이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산정한지 1년 이내에서만 유효
- (나) 1년이 지난 후 산정기준에 따라 재조사하여 추가 소득 또는 은닉소득이 있다고 재확인(증빙서류 첨부)되지 않으면 기 산정된 소득을 즉시 삭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해당 소득 유효기간 입력란에 1년 단위로 입력 관리
    - ※ 단, 1년 이내라도 추가소득 또는 은닉소득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거나, 보장기관 확인 소득 산정면제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즉시 삭제

### (2) 2022년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기준금액

- (가) 1일 73,280원(「최저임금법」에 따른 2022년 최저임금)
  - ※ '22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 시간당 최저임금 9,160원 기준

### (3) 산정기준

- (가) 최소 월 15일 이상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대상자
  - 주거 및 생활실태 사실조사로 추가 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수급자
  - 소득신고를 하였음에도 은닉한 추가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로서 주거 및 생활실태 사실조사로 추가 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수급자
    - ※ 상기 수급자가 소득 추가 신고 시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삭제하고 해당 소득으로 반영
- (나) 월 15일 미만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대상자
  - 조건부수급자로 조건을 이행하고 있으나 주거·생활실태로 보아 추가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확인한 수급자
  -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9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 조건부과유예자이나 주거·생활실태로 보아 추가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
    - ※ 상기 수급자가 소득 추가 신고 시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삭제하고 해당 소득으로 반영
  - 단독가구 수급자가 추가소득 또는 은닉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월 9일 이상부터 15일 미만까지 산정 가능

## 라) 유의사항

### (1) 근거 없는 확인소득 산정 금지

-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신고 되지 않은 추가소득이나 은닉소득이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상담, 사실조사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산정
- 추가소득이나 은닉소득이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산정할 수 없음에 유의
- 우선적으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24호)의 징구를 통해 실제소득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실제소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수급자에게 소명기회 부여절차를 이행한 후 보장기관 확인소득이 산정되도록 유의
- 특히 상담 미실시, 소명기회 미부여 등으로 인해 부당한 소득산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
  - ※ 보장기관이 지출실태조사표나 수급자와의 추가소득 유무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등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산정한 근거를 확보하지 않고 동 소득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행정소송이나 이의신청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2) 조건부과를 유예하는 소득기준과의 차액 수준으로 산정하는 행위 금지

- 조건부과 유예 기준인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9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자’와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기준금액은 별개의 사항임
  - ※ 예를 들어, 근로능력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일용근로로 월평균 80만원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을 경우
    -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9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 조건부과유예자에 선정되지 않으므로 “자활사업 안내”에 따라 조건부수급자 지정 및 조건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 월 90만원 초과에 미달하는 금액 10만원 등을 보장기관 확인소득으로 산정하고 조건부과를 유예하는 방식 등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유의
  - ※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지출이나 생활실태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부분을 확인하여 추가 산정한 소득으로, 조건부과유예사유로 보지 않음

### (3) 거주지 이전 시 수급자 소명절차 이행 철저

- 수급자가 거주지 이전 시 현 거주지의 보장기관 확인소득 적용일수를 전 거주지보다 더 많이 산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소명절차를 거쳐 적용

### (4) 성실 소득신고 유도를 위한 안내 철저

-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으로 인하여 기존에 보장 중이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초과가 예상되는 수급자에게는 사전에 이를 고지하여 성실 소득 신고 유도

## IV 재산조사

### 1 재산의 종류 [시행령 제5조의3제1항]

#### 가. 일반재산

##### 1) 일반재산의 범위 (주거용 재산 포함)

- (1) 「지방세법」제104조제1호, 2호, 3호에 따른 토지(논, 밭, 임야 등),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및 주택
  -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
    - ※ 종중재산 등 공동재산은 공동명의로 변경 등기 완료시 그 지분만큼 재산으로 산정하고, 타인에게 명의 변경 시에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 (2) 「지방세법」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3)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4)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 등 동산
  - 단,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은 제외
- (5) 「지방세법」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재산
- (6) 「지방세법」제6조제13호 및 제6조제13조의2호에 따른 어업권 및 양식업권
- (7) 「지방세법」제6조제14호~제18호에 따른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 (8)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9)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 (10) 「지방세법」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 2)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중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은 일정 한도 내에서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하고, 별도의 재산의 소득환산을 적용함에 유의

### 가) 범위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및 그 부속토지
  - \*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이외에도 일용품 등의 소매점, 미용원 등 해당 재산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및 부속토지, 임차보증금이 없는 경우 1호에 한해 인정

### 나) 적용한도

- (1)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해당 재산에 거주하는 경우 1호(또는 세대)에 대하여 아래 표의 한도까지만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
  -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가액 등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으로 산정

**【수급(권)자의 주거용 재산 한도액】**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주거·교육급여	1,2억원	9,000만원	5,200만원
의료급여	1억원	6,800만원	3,800만원

- ※ 예를 들어, 중소도시에서 수급(권)자가 1억원 주택 보유 시
  - ① 주거용재산 적용한도인 9,0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은 일반재산 환산을 적용
  - ② 남은 주거용재산 9,000만원 중 4,200만원은 중소도시의 기본공제액으로 차감
  - ③ 차액 4,800만원은 주거용재산 환산을 적용 (순서에 유의)
- ※ 주거용재산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일반재산으로 반영

- (2) 부양의무자 : 거주여부, 적용한도 없이 상기 주거용 재산 범위에 해당하는 재산은 모두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

## 나. 금융재산

- 현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 다. 자동차

-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라. 기타 산정되는 재산

-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 중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

### 2

### 재산의 조사범위[시행령 제5조의3제2항]

- 조사대상 가구원 명의의 재산을 조사
  - 단, 군복무·해외체류, 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가출·행방불명·실종 사망 후 미상속 등의 사유로 보장가구에 속하지 아니한 자 명의의 재산을 보장가구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이는 수급(권)자 재산에 포함
  - 미상속 재산 반영 방법
    - ① 사망자의 미상속 재산을 수급(권)자가 사용·수익하면 수급(권)자의 재산에 포함
      - ※ 미상속 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납세자여부, 상속지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급(권)자의 재산에 전액 포함하며, 사용·수익하지 않는 경우에 재산세납세자 여부, 상속지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권)자의 재산에 포함함
    - ②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된 지분율에 따라 수급(권)자의 재산으로 반영
    - ③ 수급(권)자가 「민법」상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을 포기하거나 지분율보다 적게 상속받은 경우 포기한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 수급(권)자의 기타산정되는 재산으로 반영
      - ※ 상속재산 지분율 : 상속대상자가 배우자인 경우 지분은 ‘1.5’, 자녀는 ‘1’ 이므로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수급자인 배우자와 수급자가 아닌 자녀 3명이 동시에 상속받는 경우 수급자인 배우자의 지분은 1.5/4.5에 해당함

### 3 재산가액 산정기준

○ 재산가액은 공적자료로 조회된 가격을 원칙으로 하여 적용

재산 항목		산정 기준
일반 재산	• 토지, 건축물, 주택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주택의 경우 보정계수 0.95)
	• 선박, 항공기	(지방세법)시가표준액×보정계수(3.5)
	• 가축·종묘 등의 동산	조사일 현재 시가 (신고가액)
	• 입목재산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각종 회원권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어업권 및 양식업권	(지방세법)시가표준액
금융재산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금융재산별 가액, 금융회사등의 입증자료상의 가액	
자동차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sup>※</sup> 등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정보	

#### 〈참고〉 지방세법상 재산종류별 과세기준 산정방식

재산종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토 지		표준공시지가 (국토교통부, 1㎡당)	표준지공시지가×면적
		개별공시지가 (시장·군수·구청장, 1㎡당)	개별공시지가×면적
건 축 물	주택	공동주택가격 (국세청,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국세청, 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 (국토교통부)
		개별주택가격 (시장·군수·구청장)	개별주택가격 (시장·군수·구청장)
	건물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선박/항공기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입목재산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회원권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어업권 및 양식업권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4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 가. 일반재산

#### 1) 주거용 재산 (주거용 재산 환산율 월 1.04% 적용)

- 일반재산 중 주거용 재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함에 유의
- (수급(권)자가 주거용재산 적용한도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같이 일반재산으로 처리)

#### 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1) 정의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2호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및 그 부속토지

#### (2) 조사방법

(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나) 주택의 부속토지가 주택과 별도 등기되어 있어 공적자료로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공적조회 자료를 기준으로 ① 주택과 토지가 동일 지번이고, ② 그 토지의 주택 정착면적(주택의 건면적, 바닥면적)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에 따른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 5배, 그 밖의 지역의 토지 : 10배

- 부속토지가 주택정착면적의 5배 이내일 경우 전부 주거용재산으로 인정하여 주거용재산 환산율(월 1.04%)적용, 5배 이상일 경우 토지소재지가 도시지역인지 여부 담당자 확인하여 추가 면적을 주거용재산 환산율로 적용할 것인지 판단

※ 부속토지가 도시 또는 그 외 지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담당자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을 통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여 적용 (<http://luris.molit.go.kr>)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주택부속토지가 인정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는 주거용재산 환산율(1.04%)을 적용하고, 초과면적은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

## 나)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 (1) 정의

(가)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단독주택·공동주택, 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용 목적으로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 보증금, 월세보증금 등)

(나) 제3자 명의 임대차계약으로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수급(권)자의 주택조사를 통하여 주택의 사용, 수익 사실관계를 확인한 임차보증금

### (2) 조사방법 : 임차보증금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

※ 주택 임차보증금이므로 적용률 0.95를 적용함에 유의

## 다) 기타 거주를 목적으로 한 재산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1) 정의 : 일용품 등의 소매점, 미용원 등 해당 재산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및 부속토지, 임차보증금이 없는 경우 1호에 한해 인정

### (2) 조사방법

(가)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지방세법」상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에 대한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주거용재산에 방문하여 조사

(나) 해당 재산에 대한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주거용재산으로 산정

※ [수급(권)자의 주거용재산 한도액] 까지만 인정

## 2)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 반영)

### 가) 정의

○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제3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및 주택

(1)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 「지방세법」 제6조제4호

(가)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나)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

### 참고: 유형별 시설종류

- 레저시설 :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 옥외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소
- 도크 및 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
- 급·배수시설 : 송수관, 옥외 하수도, 지하수, 복개설비
- 에너지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송전철탑
- 기타시설 : 잔교, 주차시설,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 부수시설물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기타승강시설, 보일러 등

- (3)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나) 조사방법

- (1) 토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조회결과를 토대로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함께 제공되는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조회결과 토지 면적이 공부면적(공공문서 기록 면적)과 현황면적(실제 측량된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현황면적 적용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토지가액은 지방세정 시가표준액(공시지가)으로 제시되며, 적용률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동 적용
- (2) 건축물(건물, 시설물) : 건물, 시설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 (3) 주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주택, 공동주택, 비주거용 건물(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등)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 ※ 건축물, 주택은 적용률 없이 시가표준액 바로 적용

참고: 토지가격 적용률

$$\text{토지가격} = \text{시가표준액} \div \text{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률}$$

**예시** 시가표준액이 1,000만원이고 소재지 시·군·구의 토지가격 적용률이 0.9인 경우의 토지가액  
 ⇒ 1,000만원/0.9 = 1,111만원

|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률 |

지역	토지가격 적용률
서울특별시	0.9(전지역)
부산광역시	0.9(전지역)
대전광역시	0.9(전지역)
인천광역시	0.9(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0.8(중구, 동구, 연수구, 옹진군)
대구광역시	0.9(區지역) / 0.8(달성군)
광주광역시	0.9(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 0.8(남구)
울산광역시	0.9(區지역) / 0.8(울주군)
세종특별자치시	0.8(전지역)
경기도	0.9(수원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김포시) 0.8(상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양주시, 여주시, 화성시, 광주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0.7(용인시의 처안구) / 0.6(용인시의 기흥구, 수지구)
강원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충청북도	0.9(청주시 洞지역, 충주시 洞지역, 제천시 洞지역,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0.8(청주시 畝·面지역, 충주시 畝·面지역, 제천시 畝·面지역, 옥천군, 진천군, 음성군, 증평군)
충청남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전라북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전라남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경상북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경상남도	0.9(창원시 洞지역, 진주시 洞지역, 사천시 洞지역, 김해시 洞지역, 거제시 洞지역, 통영시, 밀양시, 양산시) 0.8(창원시 畝·面지역, 진주시 畝·面지역, 김해시 畝·面지역, 사천시 畝·面지역, 거제시 畝·面 지역,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제주특별자치도	0.9(전지역)

※ 토지가격 적용률(실거래가격 대비 시가표준액의 비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을 위한 재산가액 산정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행정내부 자료임

### 3) 주거용 이외 임차보증금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 반영)

#### 가) 정의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주거용 이외의 목적으로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나) 조사방법

- 대상자가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점포 등 임차보증금을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등)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반영
  - 확정일자를 받거나 또는 전세권 설정한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 ※ 수급(권)자가 주택임대차 계약의 확정일자 받기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이 확보한 임대차 정보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열람 가능하므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의 진위여부 확인
    - ※ 주거급여 수급을 위해 필요한 임대차 관계 입증에서는 LH에서 주택조사를 통해 임대차계약의 진위여부가 확인되므로 확정일자 여부는 필수사항은 아니나,
      - 주거용 이외 임차보증금의 파악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는 진위여부를 보다 객관화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나 전세권설정 여부 등 관계 자료를 징구
  - 유효기간이 만료된 임대차계약서는 무효이지만,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 없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만료 전 2개월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인정(「주택 임대차보호법」제6조)
      - ※ 디딤씨앗통장 저축액을 수령하여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한 경우 24세까지 산정제외
  - 임차보증금 중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전·월세는 적용률(0.95)을 곱하여 산출

$$\text{주택 임차보증금} = \text{전월세계약서 상 임차보증금} \times \text{적용률}(0.95)$$

- ※ 보정계수 설정취지 : 주택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나, 전월세는 시가로 산정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월세보증금 가액산정에 적용률을 곱하여 5%를 공제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계약서상의 전월세보증금을 입력하면, 적용률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동 반영

## 4) 선박·항공기

### 가) 정의

-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 항공기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선박 : 기선·범선·부선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나)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에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가격 산정

$$\text{선박·항공기 가격} = \text{시가표준액} \times \text{보정계수}(3.5)$$

- ※ 지방세정의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액이 시가의 약 20%이므로 시가의 70%수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보정계수 3.5를 적용(매년 과표현실화율에 따라 보정계수는 조정)

## 5) 동산

### 가) 정의

-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 등 동산

### 나) 조사방법

- 가축·종묘·귀금속 등의 동산은 개별 재산평가액이 100만원 이상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만을 조사하며, 대상자의 신고재산을 반영
  - 건설기계의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유여부 확인하고 건설기계 가액 평가 방식에 따라 재산 반영(「2022년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참조)
  - 각종 기계·기구류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12톤이상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제외한 건설기계는 동산에 포함하고,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나 냉장고나 TV등 생활필수품은 제외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12톤 이상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자동차로 분류
    - ※ 12톤 이상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이외 건설기계 :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기중기, 롤러 등

## 6) 입목재산

### 가) 정의

- 「지방세법」 제6조 제11호에 따른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입목의 종류)

- 산림목(총 5종) :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 유실수(총 18종)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밤, 감, 자두, 매실, 호도, 앵두, 대추, 살구, 모과, 다래, 유자, 보통은주밀감, 조생은주밀감, 기타과

### 나) 조사방법

- 입목재산은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 7) 회원권

### 가) 정의 : 「지방세법」 제6조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1) 골프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2) 콘도미니엄회원권 : 「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3)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에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
- (4) 승마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5) 요트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나)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골프장, 콘도미니엄, 헬스클럽, 승마 회원권, 종합 체육 시설 이용회원권 등에 대한 소유여부 확인 및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 8) 조합원입주권

### 가) 정의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나) 조사방법

- 수급(권)자와 상담을 통하여 조합원입주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관리처분 계획 등 입증자료를 개별 징구하여 기존 건물의 평가액에 청산금을 정산한 금액(분양가액)을 반영
  - ※ 관리처분계획은 시군구에서 인가(승인)하므로, 관계부서의 협조를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조회(스캔 등)하여 입증자료로 갈음 가능
-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기존 건물평가액)에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 건물평가액에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9) 분양권

### 가) 정의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나)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분양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중도금 납입현황 및 개별 가격을 조사 후 파악된 금액(조사일 현재까지 계약금, 중도금 등 불입한 금액)을 반영

## 10) 어업권 및 양식업권

### 가) 정의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 및 제6조제13의2호에 따른 어업권 및 양식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 정치망어업, 마을어업
  -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 :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 「양식산업 발전법」에 따른 양식업: 해조류양식업, 패류양식업, 어류 등 양식업, 복합양식업, 협동양식업, 외해양식업, 내수면양식업

## 나)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어업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 나. 금융재산 (금융재산 환산율 월 6.26% 반영)

### 1) 정의

- 현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賦金)·계금(契金)·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으로서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을 말함

### 2)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보험정보 포함) 조회결과를 적용

### 3) 금융정보 등 조회

- (1) 법률상 근거 : [법 제21조제3항, 제23조의2]
- (2) 조사대상자 : 수급(권)자 가구원, 수급(권)자 가구원의 부양의무자
  - ※ 신청조사 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징구
- (3) 조회범위 및 산정기준
  -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 3개월 이내 평균잔액 및 입금액 총액
  -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ISA계좌도 잔액 또는 총납입액을 산정기준으로 함
    - ※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하나의 통장에 예·적금 외에 펀드·파생결합증권(ELS) 등 금융상품투자를 통합 운영

- (다) 주식(비상장주식 포함), 수익증권, 출자금, 부동산(연금)신탁, 출자지분, 펀드, 양도성예금증서 예수금, 선물옵션 : 최종시세가액
  - 다만,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하되, 평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적용함
    - ※ 비상장주식은 금융기관을 통해 일부 입수되며 평가금액이 있는 경우 평가금액을, 없으면 액면가액으로 반영('17.5월 이후 국세청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의 양도/양수 정보를 수신)
    - ※ 공적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자진신고 안내를 통해 액면가액을 적용하되, 명의신탁, 휴폐업 등의 경우 본인 소명에 따라 조치
-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 펀드, 양도성예금증서(CD), 예수금, 선물옵션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되고 있음을 유의
- (마)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바) 보험증권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사) 연금보험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은 연금 개시 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월 수령액이 조회되며, 연금소득으로 산정
  - ※ 사유가 발생하면 청구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성보험 성격 (예 : 개인연금, 유족연금 등)은 월평균 수령액으로 계산하여 소득으로 반영하나,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청구하여 지급되는 보장성보험 성격(예를 들어, 교통사고보험, 민간 건강보험 등)의 수령액은 일시금에 해당하기에 금융재산으로 반영함

**참조** 수급(권)자가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 및 자녀장려금(CTC)을 받은 경우, 소득과 재산 어느 것으로도 반영하지 않으나 금융재산 잔액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금융 재산으로 산정

2015년부터는 수급자에게도 EITC 및 CTC가 지급되기에 보장기관은 근로무능력자나 근로소득 미신고자가 EITC를 수급하는 경우 근로활동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CTC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자녀 유무에 대한 사항을 재확인하여야 함

※ EITC란? (Earned Income Tax Credit)근로활동에 종사하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유인을 제고 하기 위한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 CTC란? (Child Tax Credit)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으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와 관계없이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국세청이 2015년부터 지원하는 제도

(4) 조회기준 금액 : 계좌당 10만원 이상

※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의 월 수령액은 모든 금액 조회

- (5) 조회절차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 시·군·구(읍·면·동)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 → 중앙 전담기관에서 금융기관 등에 일괄 조회 실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 결과 확인
- (6) 조회주기 및 기준일
- (가) 신청조사 : 신청 시 특정 월·일 기준으로 조회 실시
- (나) 확인조사 : 연 2회 조회 실시
- (7) 유의사항
- (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및 시스템 입력 시, 조사대상 가구원과 동의서 제출 가구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반드시 확인하여 일치시키도록 함
- (나)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여부를 확인 후 고지
- (다) 금융정보 등 조회 내역 누설 시 법에 따라 처벌 됨
- ①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자(위임·위탁 포함)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 등을 법이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② 금융정보 제공 누설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③ 신용·보험정보 제공 누설 시 3년 이상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4) 조회결과 적용

- (1) 조회된 금융재산은 원칙적으로 예금주(조사대상자) 명의의 재산으로 적용
- 금융재산(부채 포함)은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 결과대로 적용
  - ※ 가령 대출금이 평균잔액으로 조회되거나 각종 연금 및 보상금 등이 금융재산에 포함되어 조회되는 경우 등 그 원천을 고려하지 않음
- (2) 차명계좌 또는 도명계좌라고 주장하는 경우 처리방법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의 예외를 인정하여 재산 산정에서 제외
  - (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차명·도명계좌임을 판결 받은 경우
  - (나) 차명계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차명으로 인정하고 금융재산에서 제외

(다) 도명계좌 : 수사기관에 도명 해당자에 대한 고발을 하고 수사를 통해 도명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질 경우 금융재산에서 제외

## 5) 기타 일시금 처리 방안

### 가) 대상 일시금의 종류

- (1) 퇴직금 :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 우체국연금
- (2) 사망일시금 : 산재보험급여, 보훈대상자 명예수당·보상급여
- (3) 반환일시금(국민연금급여), 조기취업수당(실업급여)
- (4)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보상금
- (5)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 나) 확인 및 반영 기준

- (1)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른 적용대상 일시금은 예금 등의 금융재산으로 보유여부를 우선 확인
- (2) 동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는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하고, 기타 산정되는 재산의 조사방법에 따라 반영
  - ※ 기타 산정되는 재산의 조사방법인 타 재산 증가분 확인, 본인소비분 확인, 자연적 소비금액 확인을 동일하게 적용

용도	증빙서류
일시금의 출금 확인	일시금 입출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사용처를 명백히 제시	기타 산정되는 재산의 조사방법에 따라 타 재산 증가분 확인, 본인소비분 확인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채상환증명서, 의료비 영수증 등

### 다) 유의사항

- 수급(권)자가 기타 일시금을 예금 등의 금융재산으로 보유 시 이중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유의

## 6) 금융재산 중 공제대상 및 공제기준

### 가) 생활준비금 : 가구당 500만원 공제

- 의료비, 관혼상제비 및 기본적인 생활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가구당 500만원은 금융재산 산정에서 제외(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모두 적용)

## 나) 장기금융저축공제 : 가구당 연간한도 500만원, 총한도 1,500만원 공제

- (1) 적용대상 : 수급(권)자만 적용, 부양의무자는 미적용
- 정기예금·적금, 주택부금, 저축성 보험, 펀드, 연금신탁 중 3년이상 가입상품에 해당하는 금융재산(ISA계좌 포함)
    - ※ 금융재산 조사 시 3년 이상 가입상품은 별도로 표기되어 통보됨
    -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가입기간이 3년 또는 5년인 상품으로 장기금융저축공제 대상에 해당함
- (2) 적용방법 : 장기금융저축 공제는 수급자로 결정된 연도 또는 장기저축상품에 가입한 연도부터 적용(수급자 결정 이전연도로 한도를 소급적용하지 않음)하며,
- 개별상품에 관계없이 금융재산 조사결과에 따라 연간 한도 내(잔여한도는 다음 연도로 이월)에서 총액변동분을 반영

### | 장기금융저축 공제 적용 예시 |

(단위: 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례1〉	2022년 신규 결정된 수급자가 매년 일정액을 적금하는 경우					
적금액	400	400	400	400	400	해지
공제액	400	800	1,200	1,500	1,500	공제 미적용
〈사례2〉	2022년 신규 결정된 수급자가 매년 일정하지 않은 금액을 적립하는 경우					
적금액	200	600	600	400	400	해지
공제액	200	800 (이월한도적용)	1,400 (이월한도적용)	1,500	1,500	공제 미적용
〈사례3〉	2022년 10월 신규 결정된 수급자가 결정이전부터 5년만기 상품에 1,800만원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					
예금액	1,800	0	0	0	0	해지
공제액	500	1,000	1,500	1,500	1,500	공제 미적용

- ※ 장기저축상품을 가입한 연도 또는 수급자로 결정된 연도부터 3년간 연간 한도액 500만원이 적용되며, 해당연도에 채우지 못한 연간 한도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됨
  - 예를 들어, 첫째해에 200만원을 적금했다면 한도액 300만원이 다음해로 이월되고, 다음연도 한도액은 이월한도 포함 800만원이 됨. 단, 최대공제액은 1,500만원임
- ※ 장기금융저축을 해지한 날의 다음 달부터 공제적용을 하지 않으며, 해지한 예금액은 타재산증가분 본인 소비분 등을 확인하고,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반영 시에는 자연적소비금액을 적용함

**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자립지원 적립금**

- (1) 적용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과 생계를 같이하는 18세미만의 자녀
- (2) 인정사유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새희망새꿈통장 계좌를 만들어 매월 6만원씩 적립하고 있으나 18세 이전에는 인출 불가
  -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7조에 따른 유족구조금 및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의 수령금액 중 사용 후 잔여금액에 대한 공제는 2016년부터 삭제
  - 다만, 2015년 12월말 이전에 기적용한 경우는 계속 적용 가능

**라)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 가입기간 중의 통장 가입액**

**다. 자동차 (환산을 월 100%)**

**1) 정의**

-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조사대상 가구원 명의의 자동차
  - 종류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2) 조사방법**

-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자동차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자동차가액정보를 반영
  - ※ 자동차 가액 평가 기준 우선순위 : (1순위)보험개발원, (2순위)지방세정, (3순위) 국토교통부 최초 취득가액(\*잔가율) > 취득가액(\*잔가율), (4순위)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 전기자동차인 경우 조회된 자동차가액에서 보조금(환경부·지자체)을 차감하지 않으며, 자동차 처분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자동차 처분에 따른 기타 산정되는 재산 산정 시 해당 보조금을 부채(공공기관 대출금)로 산정하고 동시에 타재산증가분(부채상환)으로 차감

**3) 조회결과 적용**

- (1) 자동차 분실·도난 시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한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
  - ※ ‘차량도난확인서’ 제출만으로는 재산산정 제외 불가
-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정보와 달리 조회된 자동차가 실제로는 소유

및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공적인 증빙 서류 제출을 통한 소명 및 보장기관의 확인을 통해 재산산정에서 제외

(가) 자동차 분실·도난 시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

(나) 명의도용·명의대여 차량, 대포차량인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수사종결·판결)이 있는 경우 인정

- ※ 상기 말소등록증 제출 자동차 및 법원의 최종 확인이 있는 명의도용 등의 자동차는 재산산정 적용제의 대수에 제한이 없음(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없이도 재산산정 제외 가능)
- ※ 압류자동차, 명의도용·명의대여 자동차, 멸실자동차, 대포자동차 등임을 “보장기관이 확인”하여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것과, “법원의 최종확인”을 통하여 명의도용·명의대여 자동차와 대포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구분 요망
- ※ 폐차증은 범칙금·자동차세 미납 시 발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폐차 후 말소처리곤란,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로 분류하여 조치, 명의도용·대여 등으로 수사 중인 경우 최종적인 확정 결정(판결 등) 이전에는 공적자료를 적용, 단, 가구 특성으로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보장 처리할 수 있음

(3) 관공서 및 법인(단체)의 미등기 자동차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대표자(수급(권)자가 대표자인 경우) 성명 외 상호명이 함께 표기된 자동차이나 수급(권)자가 실제 사용·수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수급(권)자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음

- 실제 사용·수익 여부의 확인은 동 자동차의 구입비, 운영비, 각종 세금 등 자동차를 유지·운영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 관공서 및 법인(단체)의 회계에서 집행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수급(권)자의 재산이 아닌 것으로 인정

(4) 자동차로 인하여 수급자격 변동이 예상되는 자는 소명기회 부여와 더불어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감면되는 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

(5)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가 다른 사람과 공동명의인 경우로서 소유지분이 100%가 아니더라도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수급(권)자의 재산으로 전액산정

- 다만, 수급(권)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공동명의인이라서 1대의 자동차가 수급(권)자의 재산으로도 반영되고 동시에 그 부양의무자의 재산으로도 중복 반영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재산으로만 반영(부양의무자 재산에서는 제외)함
- 또한 동일 보장가구의 가구원인 둘 이상의 수급(권)자가 1대의 자동차에 대한

공동명의인이라서 해당 자동차가 동일 보장가구원인 각 수급(권)자의 재산으로 중복 반영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 가구원 중 한명의 가구원의 재산으로만 반영함  
 ※ 공동소유자동차는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장애인자동차로 인한 혜택이 주어지므로 장애인사용자동차로 인정

#### 4) 자동차 유형별 반영기준

##### 장애인사용자동차

- (자동차의 범위)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다음 자동차의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호에 따라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동차
  - 국가보훈처 훈령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2조제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로서 같은 훈령 제2조제1호 각 호의 대상자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동차
- ※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 발급대상) 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③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④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운전자의 범위) 장애인 본인 또는 상이자인 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경우는 수급(권)자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고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자녀가 운전하는 경우에 한함

##### 생업용자동차

- 생업용이란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적 소득활동에 참여하거나, 자동차가 없을 경우 소득활동이 곤란한 경우를 말함
  - 화물 운반을 통해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들이 도구를 차에 싣고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며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 새벽·야간에 소득 활동을 하는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및 여러 지역을 빈번히 이동하는 경우 등
- ※ 생업용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가능

### 가)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감면하는 자동차

(1) 자동차 가격 100% 재산 산정 제외 :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가) 적용대상 : 다음 ①~③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중형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1대

\*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중 하나라도 기준 초과

-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인 수급(권)자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 1~3급까지의 관정을 받은 수급(권)자
-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상이등급 1~3급까지의 관정을 받은 수급(권)자

(나) 상기 (가)의 ①~③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 본인 명의의 자동차 1대 (배기량, 차종, 운전자를 구분하지 않음)

(2) 자동차 가격 50% 감면 : 생업용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가) 다)-(2)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 (동 자동차로 인한 소득과약에 철저)

(나) 동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므로 수급(권)자의 재산이 기본재산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가격의 50%에 대해서만 월 4.17%의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적용함

### 나)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월 100% 적용하는 자동차

○ 적용대상 : 수급(권)자 명의의 「지방세법」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하단 다)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 타인명의로 자동차를 수급(권)자가 상용시에도 자동차재산 기준 적용

## 다)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 주거·교육급여에서 일반재산으로 인정하는 자동차 기준은 사업별 지침 참조

- **가구 특성에 따라 지생보 심의 없이 일반재산으로 인정하는 자동차보유 한도**
  - 장애인가구 : 재산가액 산정 제외 장애인사용자동차 1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1대
  - 일반가구 : 재산가액 산정 50% 감면 생업용자동차 1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1대
  - ※ 장애인가구 : 총 2대까지 인정 가(1) 또는 다(1)에서 1대 가)-(2) 또는 다)-(3)~(9)에서 1대
  - 일반가구 : 총 2대까지 인정, 가(2) 1대 또는 다(3)~(9)에서 1대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유 한도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 (5) 3륜이하 소형자동차(이륜자동차) 중 260cc이하 자동차 (2대까지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불필요)
  - (6)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자동차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7)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가 발급되는 자동차
  - (8)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불법명의 자동차
  - (9) 급여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처분 예정인 자동차로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동차
  - ※ 상기 (5)~(9)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1대인 경우(“5” 이륜자동차는 2대까지)에는 **지방생활 보장위원회** 심의 없이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가능
  - ※ 상기 (5)~(9)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대 이상 복수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에는 보유 한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 ※ 상기 (6)~(9)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행정기관(차량등록사업소나 국토교통부 등)이 이미 수급(권)자가 동 자동차를 실제 운행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자동차나, 행정적으로 말소처리만 되지 않은 자동차이므로 보유 한도의 제한을 두지 않은 것임

### (1)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중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중 하나라도 기준 초과

(나)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다)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 전방조종자동차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따라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전장)의 4분의 10이내인 자동차

- 다마스, 라보, 봉고(화물형봉고제외),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카니발, 카렌스, 썬타모, 깰로퍼, 스타렉스, 카스타, 무쏘, 렉스턴, 썬타페, 쏘렌토 등은 전방조종자동차가 아님)

(라) 적재적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

(마)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포함)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배기량 2,500cc 미만 자동차(스타렉스, 그랜드카니발 등)

## (2) 생업용 자동차

(가)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생업용 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 ①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소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
- ②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단, 아래 자동차는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이 아니더라도 승합자동차로 인정
  -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로서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
  - ㉡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예 : 타우너, 다마스 등)
  - ㉢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예 : 헌혈, 구급, 장의 등 특수한 목적으로 탑승인원이 줄어든 자동차를 말함)
- ③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 ④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 ※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하는 경우 동 자동차로 인한 소득파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 ※ 소득파악이 어려운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21년 69,760원)에 따라 월 15일 이상을 적용한 임금을 적용

## (3) 승용자동차

## 생계·의료

(가)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 표1의 소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중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 단, 차령 10년 미만이라도 자동차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

※ 차령 산정은 년(年)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규칙」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최초등록일(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서 확인가능)과 연식 중 빠른 날짜를 적용. 예를 들어, 최초등록일(연식보다 빠른 경우)이 '08.5.1인 경우 '18년 1월이 되면 10년 이상 된 자동차로 분류

(나)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 표1의 소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중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 병원치료가 필요하나 건강상태 및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

※ 거동 곤란이란 보장구가 있어도 스스로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

※ 질병·부상으로 자동차 소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원의 건강상태 및 병원소재지, 자동차 이용 실태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하여 자동차 소유가 불가피한지 여부 확인

## 주거·교육

(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별 표1의 중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중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 단, 차령 10년 미만이라도 자동차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 초과

※ 차령 산정은 년(年)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규칙」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최초등록일(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서 확인가능)과 연식 중 빠른 날짜를 적용. 예를 들어 최초 등록일연식보다 빠른 경우가 '08.5.1인 경우 '18년 1월이 되면 10년 이상 된 자동차로 분류

(나)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별 표1의 중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중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 병원치료가 필요하나 건강상태 및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 초과

※ 거동 곤란이란 보장구가 있어도 스스로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

※ 질병·부상으로 자동차 소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원의 건강상태 및 병원소재지, 자동차 이용 실태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하여 자동차 소유가 불가피한지 여부 확인

(다) 가구원이 6인 이상 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가구원은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보장가구 가구원으로 한정하고, 다자녀(3인 이상)는 가구주 기준의 자녀(출산 및 입양 포함)를 의미하고 자녀의 나이를 제한하지 않음

## (4) 승합·화물자동차

## 생계·의료

(가) 배기량 1,000CC 미만 승합·화물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별표1의 경형인 승합·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중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 단, 차령 10년 미만이라도 자동차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

주거·교육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 단 차령 10년 미만이라도 자동차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5)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260CC 이하 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중형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 \* 최고정격출력 15킬로와트 이하
- (6)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자동차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로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동차
  - ※ 교통법칙금, 자동차세 미납 등 행정적으로 압류 기록이 있으나 수급자가 동 자동차를 실제 운행 가능한 경우에는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않음에 유의
- (7)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가 발급되는 자동차
  -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 (8) 소유자의 요청·동의에 의한에 의한 불법명의 자동차
  - (가) 보장기관이 수급(권)자 명의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이 기재되어 소위 대포차임을 인정한 자동차
  - (나) 운행정지명령 : 불법명의자동차 소유자가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민원실 또는 인터넷으로 운행정지를 요청하거나, 불법명의자동차 신고에 따라 운행정지에 동의하는 경우에 시도 또는 시군구청장이 운행정지명령 가능
  - (다) 처분결과 : 운행정지명령 절차가 완료되면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으로 표기됨
  - (라) 보장기관이 아래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한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로 인정 가능
    - ①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이 기재 되어야 함
    - ② ㉠ 정기검사 3회 이상 미필, ㉡ 의무보험 6개월 이상 미가입, ㉢ 교통법칙금 50회 이상 미납, ㉣ 자동차세 6회 이상 미납 중 1가지 이상의 사실이 있음을 확인
- (9) 급여 신청일(또는 기존 수급자의 소명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처분 예정이거나

생업용으로 전환 예정인 자동차. 단, 처분 또는 전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반재산으로 환산하지 않음

(가) 신청인과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인정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 매매의뢰관련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처분 및 생업용 전환예정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나) 2개월 이내에 미처분 또는 생업용으로 미전환시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하고, 실제 2개월 내에 미처분 또는 생업용 미전환시 해당 가구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장비용 징수 여부 결정

\* 생업용으로 전환예정인 경우 “(2) 생업용 자동차” 요건에 해당하는 자동차여야 함

(10)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자동차로 인해 보장이 곤란한 가구의 자동차로,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반영하기로 한 경우

-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경우는 수급(권)자가 소유한 자동차가 (5)~(9)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나 그 자동차로 보장이 불가능한 경우 지생보 심의를 거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5)~(9)와 동일하게 보유대수의 제한을 두지 않음

- 보장기관은 수급(권)자가 소유한 자동차가 (5)~(9)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일반재산 환산율을 부과하려면 그 특별한 사유를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시 사실조사 담당자 보고서 등으로 보고 필요

※ 예를 들어, 자동차 분실·도난 자동차로 ‘차량도난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보장기관의 사실 확인 후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가능

## 라. 기타 산정되는 재산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제4호]

### 1) 정의

○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던 일반재산(주거용재산 포함), 금융재산, 자동차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 및 처분(매매, 금융재산 감소 등)한 경우

- 증여 및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수급(권)자나 (의료급여)부양의무자의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

기타 산정되는 재산 =  
증여 및 처분한 재산의 가액 - (타 재산 증가분 + 본인 소비분 + 자연적 소비금액)

## 2) 범위 및 적용

- 조사일 및 처분(증여)일에 관계없이 기타 산정되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
  - \* 단, 2021. 6. 30.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 중 조사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재산은 기타 산정되는 재산에 포함하지 않음
- 대상 재산의 산정가액이 0원이 될 때까지 적용

## 3) 조사방법

### 가) 재산가액 산정 기준

#### (1) 재산의 종류별 산정 기준

재산 항목		산정 기준
일반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지방세법)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주택의 경우 보정계수 0.95)
	선박, 항공기	(지방세법)시가표준액×보정계수(3.5)
	가축·종묘 등의 동산	조사일 현재 시가 (신고가액)
	입목재산	(지방세법)시가표준액
	각종 회원권	(지방세법)시가표준액
	어업권 및 양식업권	(지방세법)시가표준액
금융재산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금융재산별 가액, 금융회사 등의 입증자료상의 가액
자동차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정보

- 재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가액을 평가하며 실거래가로 재산가액을 평가하지 않음에 유의
- 일반(주거용)재산, 자동차재산을 증여 및 처분한 경우는 기타(증여)의 “일반”으로 입력하고, 금융재산을 증여 및 처분한 경우는 기타(증여)의 “금융”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
- 3개월입금 총액과 통보된 금융재산 잔액의 차액은 타 재산 증가분, 본인소비분 확인 후 기타산정되는 재산 산정 여부 확인 후 자연적 소비금액 반영.

- (2)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가입된 가구가 탈수급하여 지원을 받은 후 재신청시 동 지원금 중 타 재산 증가분 확인, 본인소비분 확인, 자연적 소비금액으로 차감되지 않은 금액은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반영

- (3)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에게 재산을 증여(금융재산을 이체한 경우 증여로 봄)하여, 증여한 재산이 수급(권)자의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됨과 동시에 증여받은 재산이 부양의무자의 재산가액으로 반영되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재산가액으로 반영되는 금액은 증여받은 재산의 재산가액에서, 증여한 재산 때문에 수급(권)자에게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된 금액을 차감한 차액만 반영함
  - 단,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에게 재산을 처분(매매 등)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부양의무자의 재산가액으로도 반영하며 차감반영하지 않음
    - ※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재산으로만 반영하며, 처분하는 경우 위와 동일기준 적용

#### 나) 재산의 소득환산율

- (1) 월 4.17% 적용 대상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포함), 자동차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 중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반영된 재산
- (2) 월 6.20% 적용 대상 : 금융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 중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반영된 재산

#### 다) 타 재산 증가분 확인

- (1) 재산으로 이미 산정된 경우 : 재산을 처분한 금액을 예금 등의 금융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어 이미 재산가액으로 산정된 경우 해당 산정금액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 시 “타재산구입(임차보증금 포함)”으로 선택 입력
- (2) 다른 재산을 구입한 경우 : 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을 구입한 경우 구입에 소요된 금액(구입한 재산의 평가금액이 아님)
- (3) 부채를 상환한 경우 : 부채로 산정된 범위 내에서 부채를 상환한 금액
  - ※ 예를 들어, 주택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수급자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이 5천만원인 주택을 실거래가 6천만원에 처분하고, 처분금액 중 3천만원은 전세보증금으로 사용, 1천만원은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 나머지 2천만원은 법원의 판결문으로 확인되지 않은 개인 간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 기타 산정되는 재산(일반)은 1천만원 = 시가표준액(공시지가) 5천만원 - 타 재산 증가분 (전세보증금 3천만원 + 금융재산 1천만원)
-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개인간부채의 상황은 타 재산 증가분 적용 불가

## 라) 본인소비분 확인

- (1) 본인 및 가구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사용액 확인: 진료비, 약제비(한약포함),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복지용구 구입 등에 사용된 금액
  - ※ 증빙서류(간이세금영수증은 불인정): 진료(약제)비 납입확인서와 납입영수증 등, 장례식장 및 혼례식장 영수증(장소사용 비용)
- (2) 본인 및 가구원의 교육비 사용액 확인: 학원비, 등록금, 학습지비 등 본인 및 가구원의 교육을 위해 사용된 금액
  - ※ 증빙서류: 학원비영수증, 등록금 납입영수증 등
- (3)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 여부 확인: 이혼 시 본인의 재산을 감소시켜 위자료로 지급한 경우, 위자료 지급금을 차감
  - 단, 재산 분할 청구로 인해 소득·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 가압류, 가처분 사실만으로는 불인정
  - ※ 증빙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등기부, 계좌이체내역서 등
- (4)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따른 처분 재산 확인: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경매 또는 공매된 경우, 해당 재산을 신청자의 재산에서 산정 제외
- (5)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 확인: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을 확인하여 그 금액만큼 차감
- (6) 재산 취득에 따른 세금 납부금 확인: 재산 취득에 따른 세금 납부금(증여세 등)을 확인하여 그 금액만큼 차감가능하나, 취득한 재산에 대한 확인 및 반영 철저
  - ※ 증빙서류: 납세증명서, 세금 납부 영수증
- (7) (부양의무자만 적용) 부양의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수급(권)자 가구에 지원한 재산
  - 수급(권)자 가구에 지원한 의료비·생활비 등 지출액은 부양의무자의 재산에서 공제하고, 동 공제된 지원금은 수급(권)자 가구의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며 일시지원금이 수급자의 타재산 증가분으로 확인될 때 재산으로 반영
  - ※ 증빙서류: 의료비영수증, 신용카드 결제내역, 통장 입출금 내역 등

### 마) 자연적 소비금액 확인

- (1)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항목으로 확인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경과 개월 수를 반영한 금액을 매월 차감(음의 값인 경우 '0'원 처리)
- (2) 경과 개월 수 :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장기관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차감하며
  - 금융재산의 경우 우선적으로 '계좌 해지일, 인출일, 이체일 등 거래내역변동일'을 확인하여 해당 일을 기준으로 보장기관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차감하되,
  - 소명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득이하게 확인이 안 되는 경우 해당 금융재산에 대한 최근 조사일자의 '조회 기준일'이 속한 달부터 차감
- (3) 차감액
  - (가) 수급(권)자 가구 :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50%를 매월 차감
  - (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 : 부양능력판정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를 매월 차감
    - ※ 자연적 소비금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계산되므로 반드시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

## 5 부채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1호나목]

### 1) 정의

- 임대보증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및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누적액,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중 미상환액
  - ※ 금융회사등에는 제도권 금융회사인 제1금융권 또는 제2금융권(법률용어는 아니나 통상적으로 시중에서 사용하는 용어)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부(중개)업체도 포함

#### 금융권의 범위

- 제1금융권 : 특수은행, 일반은행, 지방은행
- 제2금융권 :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금융회사(카드회사, 캐피탈회사, 리스회사, 할부회사, 신기술금융회사)
- 대부(중개)업체
  - ※ 제도권금융회사는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민원신청/민원안내/제도권금융회사 조회), 대부(중개)업체는 금융위원회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http://www.cfa.or.kr>/등록업체 조회)에서 조회

### 2)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의 범위

#### 가) 부채의 종류

- (1)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 (2) 금융회사 대출금
- (3)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
- (4)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 (가) 공공기관 대출금
    - ※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나)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인수한 부실채권은 개인신용회복지원이 적용되면 채무원금의 일부와 연체이자 전액이 감면되며, 기초수급자는 특수채무자로 분류되어 채무원금이 추가 감면되므로 캠코에서 인수한 수급자는 실제 상환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부채로 차감 필요

(라) 한국해비타트(사)에서 집짓기 사업을 지원받아 주택을 소유한 수급(권)자의 상환 대상 지원금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채가 확인된 경우

※ (유의) 이 경우 매월 지원금의 일정액을 상환하고 있으므로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지원금 상환액을 확인하여 부채액 조정 필요

(5)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철도공제회 등

(6) 개인 간 부채(사채) : 법원 판결문(지급명령, 지급결정 포함), 법원의 화해·조정조서로 확인된 사채

※ 공정증서 확인 사채는 2014년부터 전액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 나) 차감대상 부채금액

- 임대보증금 부채,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누적액은 전액 차감
-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부채는 부채의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처가 확인된 부채를 차감

#### 다) 부채의 용도 및 확인방법

- (1) 의료비부채 : 의료·진료비 영수증 등 의료비 사용을 증빙할 서류
- (2) 학비부채 : 등록금 영수증 등 학비사용을 증빙할 서류
- (3) 주거부채 : 전·월세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주거마련을 증빙할 서류
- (4) 일반부채 :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 등

### 3) 조사방법

(1) 임대보증금 부채

-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아 임대보증금을 확인하고, 금융재산 증가 또는 타 목적으로 기지출 여부 등 현재 보유상태를 파악
- 처리방식 : 주택이나 점포 등을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임대보증금은 타재산 증가분(금융재산 등)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할 부채이므로 임대보증금 부채로 반영

- ※ 주택이나 점포 등을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해당 건물 등은 일반재산 가액으로 산정하며, 만약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도 산정함
- 유의사항 : 수급(권)자가 임대보증금을 금융재산으로 보유 시 또는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이중 반영되지 않도록 유의
  - ※ 기타 산정되는 재산 반영 시 타 재산 증가분 확인, 본인소비분 확인, 자연적 소비금액 확인을 동일하게 적용
  - ※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보유(구입)한 경우 임대보증금은 주택 가액 범위 내에서만 인정

### 임대보증금 처리 방법 예시

- 대도시에 거주하는 재산가액 5천만원의 자가소유자가, 임대보증금 2천만원을 받아 금융회사에 전액 입금한 것이 확인된 경우
  - 5천만원의 주택은 주거용재산으로 산정
  - 2천만원은 타 재산 증가분 확인으로 금융재산에 산정함과 동시에 임대보증금 부채 2천만원도 산정
  - 임대보증금이 금융재산으로 전액 전환되었으므로 기타 산정되는 재산은 없음
- 중소도시 거주자가 재산가액 4천만원의 본인명의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 3천만원을 받아 15백만원 은행의 부채를 상환하고, 1천만원은 의료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4천만원)은 주거용재산으로 산정
  - 부채상환금액 15백만원은 타 재산 증가분(부채상환) 확인으로 차감하고, 의료비 1천만원은 본인소비분으로 차감하며, 잔액 5백만원은 기타 산정되는 재산(일반)으로 산정
  - 임대보증금 3천만원은 임대보증금 부채로 반영

## (2) 금융회사 등 대출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회사 등의 대출내역 확인
- 금융회사 등 대출금 중 대부(중개)업체의 대출 정보는 현재 정보 미연계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대출금 증빙서류(부채증명서 등)를 통해 대출내역 확인 및 6개월 단위로 대출내역 변동 사항을 재확인하여야 함
- 그 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의 종류에 해당되고 용도가 확인되는 부채는 부채증명서와 필요시 사용처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반영
  - ※ 6) 부채의 용도 확인 시 유의사항 참조

## (3)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 법원의 판결문(지급명령, 지급결정 포함) 또는 화해·조정조서에 따라 채무이행 대상 금액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자납입 증명(2회 이상)을 요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는 금융회사의 대출내역**

- 제공방법 : 금융정보 등 조회 시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대출내역 확인이 가능(단, 대부(중개)업체의 대출내역은 현재 제공되지 않으므로 대상자에게 증명 요구)
- 제공내역
  - 금융회사 대출금 : 담보대출(부동산 등), 신용대출, 약관대출(보험) 등 개인이 받은 '개인대출만 차감 가능하며, 기업대출은 차감대상이 아님
  - 신용카드 미결제금 :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원이상의 신용카드 대금
  - ※ 신용카드 미결제금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 가능토록 연계 확대

## 4) 부채를 차감하는 순서

- 1순위 : 주거용재산, 2순위 : 일반재산(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포함), 3순위 :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하고,
  - 상기 재산을 모두 차감하였음에도 부채의 잔액이 남는 경우라도,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의 재산 가액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음

## 5)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부채

- (1)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신청인이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부채로 차감)
- (2) 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 (담보설정액은 실 대출금의 120~130%로 설정 됨)
  - ※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저당권 설정 사실만으로 해당 채권최고금액 등을 부채로 산정하지 않음에 유의하고, 실제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부채증명서를 징구하여야 함
- (3) 한도 대출 (일명 '마이너스 대출')
- (4) 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카드론) 및 1년 이내의 단기간의 어음할인 대출
- (5)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인해 준 부채

※ 신용회복위원회는 수급자에게 부채를 빌려준 채권기관이 아니며, 신용회복위원회가 확인해준 수급자의 부채는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자료를 취합한 것에 불과함, 이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인한 부채는 원 채권기관인 금융기관 등에서 해당 부채 증명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함

(6)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이외의 모든 개인 간 부채

## 6) 부채의 용도 확인 시 유의사항

(1) 용도확인이 필요한 부채가 확인된 경우 다른 재산가액의 증가를 가져온 부분(주택, 금융재산 등)은 우선 해당 재산에 포함시켜 계산

※ 공공기관에서 1천만원을 얻어 기존 보유재산 1천만원을 합하여 2천만원짜리 주택을 구입했다면 2천만원은 주거용재산으로 산정하고, 1천만원은 부채로 차감

(2)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등의 부채가 보장기관의 확인 결과 아래의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을 수 있음

(가) 부채를 얻어 타인에게 다시 빌려주는 등 대부업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나) 재산가액을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부채를 얻은 경우

(다) 그동안의 생활실태를 보아 부채의 필요 상황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소득수준과 재산에 비하여 과도한 부채를 얻은 경우 등

※ 일반적으로 부채는 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의료비 지출을 위하여, 교육비 마련을 위하여, 사업 투자를 위하여, 단기간의 건강악화·실직·폐업 등으로 근로·사업 활동에 종사하지 못하여 생활비의 부족으로 부채를 얻는 것을 고려 시,

- 보장기관은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재산과 소득 상태에 비추어 과도한 부채를 얻은 경우는 그 부채를 얻은 이유의 입증을 요구할 수 있음

(3) 부채의 용도를 채무자(수급(권)자, 부양의무자 모두 포함)가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 보장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이더라도 부채를 차감하지 않을 수 있음

①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담당자의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② 사실조사보고서를 포함하여 부채의 차감여부 결정 건을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재산가액에서 해당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심의·의결이 있는 경우

(4) 차용 금액에 대한 이자는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음

※ 부채는 이미 재산에서 차감하고 있으므로, 이자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경우 이중 공제에 해당

## 6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 재산의 소득환산 결과 “-”값은 불인정(이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가. 기본재산액

#### 가) 개념

- 보장이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sup>8)</sup>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 나) 적용금액

- 지역별 전세가격(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적용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주거·교육급여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의료급여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 ※ 대도시 -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특례시
- 중소도시: 도의 “시”와 특별자치시·도
- 농어촌: 도의 “군”

※ 주택·농지연금 가입 가구도 기본재산 공제액 동일

#### 다) 기본재산액 공제방식

- (1)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
- (2) 공제결과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에도 수급자는 100%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가액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예시1** 대도시 거주 수급자의 재산이 주거용재산 1억4천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을 보유한 경우

- ① 대도시 주거용재산 한도액 1.2억을 초과하는 2천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은 우선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월 4.17% 적용
- ② 대도시 주거용재산 한도액 1.2억원에서 대도시 기본재산액 6,900만원 공제
- ③ 주거용재산에서 기본재산액 공제 후 차액 5,100만원은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 월 1.04% 적용

**예시2** 대도시 거주 수급자의 재산이 주거용재산 6,500만원과, 자동차가액이 1천만원인 일반재산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 ① 대도시 기본재산액 6,900만원에서 주거용재산인 6,500만원을 공제하면 400만원 추가 공제 가능
- ② 평가액 1,000만원의 자동차는 생업용 자동차이기에 평가액의 50%만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반영하므로 500만원만 반영대상이고, 기본재산으로 추가 공제 가능액은 400만원이므로 차액 100만원만 일반재산의 소득 환산액 월 4.17% 반영

## 나.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및 산출방식

### 1)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구 분	종류별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적용되는 자동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2.08%		

※ 부양의무자의 자동차는 부양의무자가 1-3급 장애인으로 장애인사용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등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배기량 기준 없음)하고, 그 외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 2) 소득환산율 산출방식

#### 가) 주거용 재산

- 수급(권)자의 주거안정성을 고려하여, 일반재산의 1/4 수준으로 환산율 완화

#### 나) 일반재산

- 지역별 전세가격 등 재산 수준, 신규 수급자 규모 등을 감안하여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일반재산을 2년 동안에 최대한 사용하는 경우의 환산율 적용

#### 다) 금융재산

-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재산의 1.5배 수준의 환산율 적용

## 라)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

- 수급(권)자가 재산가액에서 차감 또는 감면되거나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보유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 보장하기 곤란하다는 현재의 국민 정서를 감안하여 월 100% 환산율 적용

※ 부양의무자가 보유한 자동차는 부양의무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인 경우에는 본인 명의 1대에 한하여 배기량 및 기종을 구분하지 않고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그 외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 환산율 설정 원리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리와 최저생활보장 원리의 절충을 통해 산출되는 것으로 통상의 이자율(수익률)과 다르며, 현행 이자율에 기초하여 환산율을 설정하게 되면 역대 이상의 재산보유자도 수급(권)자로 선정 보장되는 문제 발생
  - ※ 일반재산 환산율인 4.17%는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재산은 2년 이내 소진하는 것을 산정하여  $\text{도출 } 4.17\% \times 24\text{개월} = 100\%$
- 즉,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선정보장되기 전에 자신의 재산, 소득, 근로능력 등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는 보충성의 원리에 기초하되, 최저생활보장의 원리도 반영하여 보유재산 등에 대한 활용 기간을 적정하게 부여

## 다. 수급(권)자의 재산범위 특례(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범위)

- 동 특례조항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게 모두 적용됨
- 동 특례조항은 부양의무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규정임
- 동 특례조항은 수급(권)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가구의 소득에 반영시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지 않아도 기준 적용
- 아래 1), 2), 3) 항목 적용자는 보장기관장의 확인만으로 특례적용, 4)번 적용은 지방생활보장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특례 적용

### 1)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 (1)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재산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동 재산은 재산의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
- (2) 상기 수급(권)자의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재산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기본조건과 추가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구분	재산가액 기본조건			추가조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주거 교육급여	10,000만원 이내	7,300만원 이내	6,600만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재산은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이내</li> <li>* 동 조항의 금융재산 산정 시 생활준비금 등 금융재산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기타 산정되는 재산인 금융재산의 기타(증여)는 포함하지 않음</li> <li>•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가 없을 것</li> </ul>
의료급여	8,500만원 이내	6,500만원 이내	6,000만원 이내	

- ※ 동 규정은 수급(권)자의 기본재산액을 인상(예를 들어, 대도시 6,900만원에서 1억원까지)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보장성 향상에 기여
- ※ 동 규정의 재산가액은 순재산액을 의미함. 즉, 해당가구의 총재산액에서 부채항목과 공제항목(생활준비금 공제는 미해당)을 차감한 금액임

## 2)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

- (1) 재산처분의 곤란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이 어려운 다음 경우에 해당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
  - (가) 가압류, 경매 상태에 있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
  - (나) 재산소유자가 정신질환자, 가출·행방불명·실종자, 소년소녀가정의 아동 등으로 처분이 곤란한 경우
  - (다)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등 거래가 거의 없어 처분을 하려고 해도 처분이 곤란한 경우
- (3) 상기 수급(권)자의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재산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기본조건과 추가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구분	재산가액 기본조건			추가조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주거 교육급여	10,000만원 이내	7,300만원 이내	6,600만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재산은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이내</li> <li>* 동 조항의 금융재산 산정 시 생활준비금 등 금융재산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기타 산정되는 재산인 금융재산의 기타(증여)는 포함하지 않음</li> <li>•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가 없을 것</li> </ul>
의료급여	8,500만원 이내	6,500만원 이내	6,000만원 이내	

- ※ 동 규정의 재산가액은 순재산액을 의미함. 즉, 해당가구의 총재산액에서 부채항목과 공제항목(생활준비금 공제는 미해당)을 차감한 금액임

### 3) 재산가액만 상승한 가구

- 상기 1) 또는 2)를 적용받는 수급자가 소득과 재산 형태·구성에 변화는 전혀 없으나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 보장기관장의 결정으로 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자로 3년간 추가보장 가능

### 4)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특정 재산을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한 가구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로서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의 특정 재산이 소득환산의 대상으로 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가구의 재산에 대해서는,
  - (가)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재산을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나)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례수급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이나 “기한” 등을 정할 수 있음
  - (다) 특례 적용 후 부과된 “조건”이 이행되지 않거나 “기한”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없이 보장기관의 결정으로 수급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라) 기한이 지난 후에도 계속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례수급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통 적용

### 5) 유의사항

- (1) 차감순서 등
  - (가) 1)과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가구에 유리한 규정을 적용
  - (나)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재산가액이 대도시는 1억원, 중소도시 7,300만원, 농어촌 6,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을 적용할 수 없음. 동 가구에 대해서는 일반가구와 동일하게 소득환산제를 적용해야 함
    - ※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을 공제하고, 소득환산율을 적용(대도시는 1억, 중소도시 7,300만원, 농어촌 6,600만원을 공제하고 소득환산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다) 2)~4)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해당 재산을 소득환산 재산에서 제외처리하고 나머지 소득환산 대상 재산에 대하여 기본재산액, 부채 등을 차감
- (2) 재산범위의 특례에 해당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의 구성원, 재산상태 등에 대해서는 반기별 1회 이상 조사를 원칙



| 제4편 |

# 급여의 실시



## I 급여의 개요

### 1 교육급여의 목적 및 기본원칙

#### 가. 목적

- 저소득 가정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급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보장

#### 나. 기본 원칙

##### 1)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 2) 개별성의 원칙

-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 3) 타 급여 우선의 원칙

-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이 먼저 행해져야 함

##### 4) 보편성의 원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국민에 대하여는 성별·직업·연령·교육수준·소득원 기타의 이유로 수급권을 박탈하지 아니함

## 2 급여의 보호 등

### 가. 급여의 보호

- 급여변경의 금지[법 제34조] :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
- 압류금지[법 제35조]
  - (가)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음
  - (나)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음

### 나. 수급자의 의무

- ※ [법 제37조] (신고의 의무) 수급자는 거주지역이나 세대의 구성이 변동되거나 제22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 교육급여의 경우 사도교육감이 보장기관이나, 소득·재산조사사항이 지자체에 위탁되어 있으므로 소득·재산조사 관련 변경 내용은 사군구로 신고해야 함
- ※ [법 제22조제1항] (신청에 의한 조사)
  1.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3.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육구 등 자활지원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수급권자의 생활상태에 관한 사항
  - \*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로 부양의무자에 관련된 내용은 신고할 필요 없음

### 다. 수급권의 양도금지

-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법 제36조]

### 3 급여의 결정

#### 가. 급여의 결정 [법 제26조]

- 시·군·구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에 전달되면, 학교(교육청\*)는 급여의 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즉시 결정하여야 함.[법 제26조제1항]
  -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쓰지 않는 학교에 다니는 수급권자의 경우 단기적으로 학교가 위치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교육청이 보장결정 및 통지하되, 해당 기관이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으로 학적관리를 사용하여 직접 교육급여 수급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권고
  - 읍면동은 신청 접수 시 학생의 학적이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을 반드시 확인하여 접수
-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의 판정 결과(적합/부적합)를 기반으로, 학교(교육청)에 대상자 명단 생성
  - 대상자가 해당 학교의 학적에 있는 경우 자동으로 “교육급여 보장 대상자 명단”이 생성되며,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의 소득·재산조사 판정 결과(적합/부적합)는 학교(교육청)에서 변경할 수 없음(전국 단일 기준)
- 학교(교육청)는 보장 대상자의 학적을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보장 결정
  - 확정된 수급자 명단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저장
    - \* 고등학생의 경우 보장 결정이 된 때부터 입학금·수업료가 학교로 납부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수급자의 편의 도모
- 대상자가 학적이 없거나, 퇴학, 제적, 졸업 등 교육급여를 받을 수 없는 학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보장 부적합 결정하고 관련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함

#### 나. 급여신청자에 대한 통지 [법 제26조제3항, 제4항]

##### 1) 통지 방법

- 학교(교육청)는 급여신청에 대하여 그 결정요지, 급여종류, 급여방법 및 급여개시 시기 등을 명시한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를 수급(권)자 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

- 서면으로 통지할 때 이의신청제도에 대한 안내도 함께 명기하여야 함
  - ※ 반드시 시도교육감의 명의로 통지해야 함
- 급여 신청 시 문자 발송을 희망한 자에 한해 문자 메시지 통보

### [교육급여 문자통보 문안]

-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 적합 결정 시〉  
OOO 학생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OO 고등학교
-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 부적합 결정 시〉  
OOO 학생은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실시가 부적합 한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교육청으로 이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OO 고등학교

## 2) 통지기일

-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4 소멸시효 및 소급지급 관련

- 수급자는 본인의 소득재산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을 사군구에 신고법 제22조
  - ※ 수급자의 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시도 교육감의 위임에 의하여 사군구의 소관사항에 해당
- 이에 수급자가 성실신고하지 않아 보장기관이 수급자의 소득재산의 감소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하였을 경우 지급할 수 있었던 급여와의 차액을 추가 급여로 소급 지급할 수 없음
- 이외, 보장기관이 공적자료 적용을 통보된 정보와 달리 적용하거나, 성실 신고하였음에도 반영을 누락하는 등 제도 운영을 법령 및 지침과 달리하여 적용하여 그 귀책사유가 보장기관에 있을 경우,
  - 보장기관은 수급자에게 미지급된 급여를 소급 지급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국가 재정법」 제96조에 따라 5년 이내에 미지급된 급여는 소급지급 받을 수 있음
  - 소급지급을 실시하는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타 보장기관으로 전출하였더라도 미지급 급여 발생 당시 보장기관임

※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 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써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② 국가에 대한 권리로써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 5 교육급여 내용 및 지원 기준

### 가.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 16조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른 의사자의 자녀 및 의상자와 그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교육급여)** ①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6조(교육급여)** ①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사람에게 입학금, 수업료(제6호의 경우에는 학습비를 말한다) 및 학용품비와 그 밖의 수급품(이하 "학비"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와 유사한 학교
  6.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한 시설만 해당한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교육보호)** 의사자의 자녀 및 의상자와 그 자녀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하는 교육급여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 및 그 자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학비(입학금·수업료) 지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 수급자가 초·중등교육법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를 감면 또는 면제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 불가
- 다만,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 상 필요한 경우의 학비 감면자에 대하여는 학비 전액을 수급자 계좌로 지급 가능

-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6조(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6조(교육급여)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자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를 감면 또는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장학 상 필요한 사람에게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를 감면 또는 지원받는 경우에도 학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다.

- 대상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시·도별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해 학비를 면제·감면 받는 ① 성적 우수자 ② 시·도 특별장학생 ③ 체육 등 특기생
- 선정 절차 : 교육감이 주관하는 위원회\*에서 선발하거나, 학교장이 선정할 경우 시·도교육청별로 위원회에 준하는 추가 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대상자 결정(교육청 자체 계획 수립)
  - \* 체육특기자, 시·도 특별장학생 선정을 위해 기 구성된 위원회로 대체 가능
  - ※ 학비 감면자에 대한 학비지급기준 : 해당 학교소재지의 급지별 학비기준
- 지원 중지 : 장학상 학비감면자의 생계의료수급 자격이 중지되는 등 지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수급자 계좌로 지급하던 학비는 사유발생일이 포함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지급 중지(정산 불요)
  - \* 자퇴나 퇴학 등의 학적 변동으로 지원이 중지되는 경우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일할계산

## 다. 지원 내용 및 지원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지급

## 라. 급여 항목 별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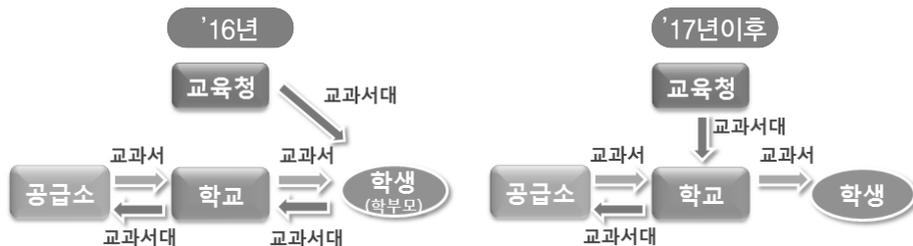
- 입학금·수업료
  - 지원대상 : 고등학생(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및 특성화고등학교 포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포함

- ※ 평생교육시설의 입학생 및 재학생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학습참가비 및 학력인정 여부에 대하여 시·도 교육청 상황에 따라 결정하여 입학금·수업료 지급
- 지원내용 : 연도별·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신규수급자의 경우
  - 입학금 : 급여신청일이 1학년 제1분기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 지급
    - ※ 입학금은 수급자가 최초 입학 시 1회만 지급하는 것으로, 재학 중 자퇴 등의 사유로 재입학하는 경우라도 입학금은 동일한 수급자에게 2회 지급하지 않음
    - 학교에서는 재입학하는 교육급여 수급 대상 학생의 경우 이전학교에서 입학금을 받았는지 확인하여 중복수혜 방지
  - 수업료 :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
    - \* 수급자가 입학금 또는 수업료를 학교에 기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학교에서 수급자에게 환급
    - \* 예시) 8월에 신청하여 9월에 수급 결정 및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교육청은 학교로 8~11월 수업료를 지급하고, 학교는 8월 학비를 수급자에게 환급 (수급자가 8월 학비를 기 납부한 경우)

○ 교과서비 \*교과서는 1~2월 등 학교 상황에 따라 배부

- 지원 대상 : 고등학생
- 지원 내용: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 ※ '16년까지 일정금액('16년 기준 부교재비 포함 131,300원)을 지급하였으나, 수급자가 교과서대금을 학교에 선납하는 경제적 부담 및 행정적 불편을 경감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의 대금 미납으로 인한 학교의 재정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급 방식 변경

〈교육급여 수급자 고교 교과서대 지급 방식 변경 흐름도〉



- 지원 방법 : 학교에서 수급자에게 교과서를 지급하되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 학생들과 구별 없이 배부하고, 학년 초에 교육청에서 학교로 수급자의 교과서대금을 일괄 지급

※ 수급자가 교과서대금을 학교에 기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학교에서 수급자에게 환급(전학 후 수급자가 되는 경우 전출교에 기 납부한 교과서대금을 전입교에서 수급자에게 환급)

- 유의사항 : 학교 별 교과서대금 징수 시 교육급여 수급자의 대금인출을 유예하여 수급자가 교과서대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교육청의 교과서 대금정산이 늦어지는 경우 개인부담금과 지원금을 1,2차로 분할하여 정산

※ 2월 말일 이전 교육급여 수급자격이 중지된 경우 해당연도 교과서대 징수 필요

- 이중지원 금지

① 해당 학년의 교과서를 지원 받은 경우 재입학, 재취학, 전학하거나 위탁교육 등을 받더라도 지원하지 않음(단, 해당 학년의 교과서를 지원받은 적이 없는 경우 지원 가능)

※ 교육급여 수급자가 교과서 신청 후 수령하기 이전 전출 시, 학교에서는 배부 받은 교과서를 공급소에 반납하고 수급자에게 전입교에서 다시 신청하도록 안내

②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사업 등으로 교과서경비를 지원 받은 경우 중복 지원하지 않음

③ 여러 학년에 필요한 교과서는 최초 1회만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과정이 의무교육으로 변경('10.7.5)되어 의무교육대상인 특수교육 대상 고교생은 별도 지원받으므로 교과서를 지원하지 않음(「장애인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제3조)

○ 교육활동지원비

- 지원대상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지원내용 : 1인당 **초 331,000원, 중 466,000원, 고 554,000원** 지급

- 지원방법 : 연1회 학년 초 일괄 지급 원칙, 신규수급자는 차기 학비지원 시

(단위 : 원)

구분	급여종류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 수업료
초등학생		<u>331,000</u>	-	-
중 학생		<u>466,000</u>	-	-
고등학생		<u>554,000</u>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방법		연1회	연1회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II 급여의 지급

### 1 급여 지급 절차

#### 가. 급여 지급 방법

- 교육활동지원비는 수급자 전용계좌에 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의 경우 학교로 직접 지급
  - 학교 별 교과서 배부시기에 학교에서 수급자에게 교과서를 지급
  - \* 수급자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을 학교에 기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학교에서 수급자에게 환급

#### 나. 절차별 처리 내용

##### 1) 변동 관리

-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 급여에 관련된 기초자료인 소득인정액 변동, 가구원 변동 등을 확인하고 매월 15일까지 변동자료 반영

##### 2) 중복 지원 방지

- 고등학교 교육급여 담당자는 수급자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을 이미 면제 또는 지원받았는지를 확인(단, 전액을 지원받지 못한 경우 차액 지원)
- 학비 지원 우선 순위 검토
  - 법정 면제(보훈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북한이탈주민)는 교육급여보다 우선하여 적용
  -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법령에 의해 교육급여와의 중복 지원을 제한하지 않는 법정지원의 경우 교육급여보다 우선 적용
  - 한부모, 장애인, 저소득층 학비 지원 등 법에 교육급여를 받으면 지원을 중단하도록 명시한 법정지원의 경우 보장내역이 더 큰 교육급여를 우선 적용\*하되
  - \* 교육급여를 지급한 이후 해당 사업 기관이 학비를 보내온 경우 해당 사업 기관에 반납 처리
  - ※ 장애인 학비 지원 사업은 교육급여로 통합

- 교육급여 ‘자격 결정’ 시에 이미 다른 법에 의해 해당 분기의 학비가 지원\* 또는 감면된 경우 교육급여는 다음 분기부터 지급
  - \* 지원기관이 공문으로 학비 지원을 확정된 경우 포함
-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은 법정 지원이 아니므로 교육급여가 우선 적용 (특성화고 지침에 따라 중복 지원 제한)
  - \* 교육급여 학비 지원과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이 중복되는 경우, 특성화고 장학금 반납 처리
- 시·도교육청 담당자는 급여 지급 시기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학교에 재학 중인 수급자의 학적 및 고등학생 수급자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의 급여 지급 요청액\*을 공문으로 확인
  -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을 다른 사유로 지원 또는 면제받은 경우, 해당 학교는 그 차액을 시·도교육청에 요청

### 3) 급여 자료 생성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 매 월 16일 00:00에 급여 자료 자동 생성
  - 초등학생 및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입학금·수업료
    - \* 교육급여 수급자 교과서대금이 “0”으로 생성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급여
- 지급이 필요한 교과서대금을 시스템에 입력 (16일~20일)
- 고교 입학금·수업료 예산 부담 주체 확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고등학생 수급자의 생계 또는 의료급여(중위소득 40%미만,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수급 여부 확인
    - \* 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의2에 따라 학생이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중위소득 40~50%, 중위소득 40% 미만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시·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부담하되, 입학금·수업료의 지원 또는 감면을 선택 가능

### 【입학금수업료 예산 집행 방법(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예산부담주체	집행 방법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위소득 40%미만, 부양의무자기준 적용)	국가, 시도, 사군구	학교에 직접 지급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중위소득 40%~50%, 또는 중위소득 40% 미만인면서 부양의무자기준 미적용)	시·도교육청	학교에 직접 지급 또는 감면(사립의 경우 차액은 재정 결함보조로 지원)

○ 한부모 학용품비 중복 지급 확인

- 교육급여 수급자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자격\* 을 동시에 신청하거나 갖고 있는 경우, ①한부모 가족지원 사업의 학용품비를 먼저 수령하였으면, 교육급여에서는 교육활동지원비에서 한부모 가족 사업 학용품비의 차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고, ② 교육활동지원비를 먼저 수령하였으면, 한부모 가족 사업의 학용품비는 미지급

\* 시·군·구에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초과 52%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 자녀에게 연 83,000원의 학용품비 지급

\* 교육청(학교포함)에서는 학용품비 수령 여부를 필히 확인, 시·군·구에서는 학용품비가 중복지급되지 않도록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 중 교육급여 수급 여부를 필히 확인

- 수급자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선택하여 시·군·구에서 지원받기를 학교에 요구 (별도서식1호)하는 경우, 해당 시·군·구에서 급여를 지원하도록 학교에서 시·군·구에 공문으로 안내하고 교육급여에서는 학용품비의 차액을 뺀 금액을 교육활동지원비로 지급

※ 한부모 가족 지원으로 학용품비를 받을 경우에는 차액만큼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을 수 있음을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

#### 4) 급여 확정 : 교육청 사업부서

- 교육청은 생성된 급여액을 마감하여 해당 분기의 급여 대상 명단 및 급여액 확정
  - 교육지원청 : 초등학생 및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 시·도교육청 :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급여
- 지방교육행재정보시스템(에듀과인)을 통해 지출품의 후 회계부서로 지급 의뢰
  - ※ 보장결정일과 실제 지급일 사이에 수급자가 전학하는 경우, 급여 생성일(16일 00시) 기준 학적이 있는 기관에서 급여 자료 생성

#### 5) 급여 지급 : 교육청(회계 부서)

- 의뢰된 급여내역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을 통해 원인행위→지출결의→지급명령 후 각 시·도교육청 금고를 통해 급여 입금
- 지급일 : 23~25일 중 (휴일 등에 따라 지급일 조정 가능)
  - 보장결정일과 실제 지급일 사이에 수급자가 수급권을 상실하는 경우, 이미 보장 결정이 되었으므로 교과서대,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신청시기가 고등학교 1학년 1분기인 경우)은 지급하고 수업료는 수급권을 상실한 사유에 따라 지급
    - ※ 학업 중단에 따른 수급권 상실 : 급여 신청일부터 중지일까지 지급
    - ※ 졸업에 따른 수급권 상실 : 졸업한 월까지 지급
    - ※ 소득인정액 증가에 따른 수급권 상실 : 급여 신청일부터 급여 중지일이 속하는 분기까지 지급 (단 수급자가 급여 신청을 취소하거나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급여 미지급)

예시1) 고등학생 1학년이 3월에 급여를 신청하고 4월에 보장 결정되었으나 5월에 퇴학한 경우, 6월 급여 지급 시에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3~5월) 지급

예시2) 고등학생 1학년이 3월에 급여를 신청하고 4월에 보장 결정되었으나 그 후 신청 취소 또는 급여 정지를 요청한 경우, 급여 미지급

- 과·오지급액 수정 및 지급 오류 처리 등으로 급여액이 생성되는 것을 특정 날짜로 확정하여 업무의 편의 도모

〈대상별 입력 시기 및 생성일〉

구분	입력시기	생성일
지급액 생성	전달 16일 ~ 금월 15일	16일 00시
과오지급 수정금액 생성	전달 21일 ~ 금월 20일	20일
지급오류처리 생성	금월 1일 ~ 금월 말일	말일 (12월은 25일)

6) 교과서대입학금·수업료 징수 및 수납 : 학교

- 교육청에서 교부한 교과서대입학금·수업료는 반드시 나이스·에듀파인 간 연계 받은 파일로만 징수 및 수납 처리

※ (참고) 교육급여 교과서 지원을 위한 학교 업무 흐름도

업무구분	시기	업무내용
교과서 배부	1~2월 (학교 상황에 따라)	교과서 배부(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학생들과 구별 없이 배부)
징수결의 및 수납	2~3월 (학교 상황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자 인출 유보 및 지원금 미납 처리
교육급여 교과서대금 생성 및 교부	3.16. 00시	교육급여 수급자 교과서대금이 0원으로 생성
	3.16.~3.20.	교육급여 수급자가 신청한 교과서대금 입력
	3.23.~3.25.	교육청에서 교육급여 수급자 교과서대금을 학교로 지급
교과서 대금 지급	3월 말 ~ 4월 (학교 상황에 따라)	교과서 공급소에 교과서대금 지급

다. 지급 시기

- 기존수급자 : 분기별 지급

해당 분기	1분기(3~5월)	2분기(6~8월)	3분기(9~11월)	4분기(12~2월)
급여지급시기	3월	6월	9월	12월
급여항목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금(1학년)	수업료	수업료	수업료

- 새로 보장 결정된 수급자도 분기 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교육청 별 상황에 따라 보장 결정 후 첫 급여를 월별 지급 가능
- 매월 15일 이전에 보장결정이 된 경우 해당 월에 지급액이 생성되고, 16일 이후에 보장결정이 된 경우 다음 달에 지급액이 생성

**〈예시〉**

① 초등학교 A는 4월에 신청 고등학교 1학년 B는 5월에 신청하여 6월 14일에 보장결정이 된 경우

지급 시기	6월	9월	12월
초등학교 A	교육활동지원비		
고등학교 B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실비) 수업료(2/4분기) * 입학금 및 5월 수업료 포함	수업료(3/4분기)	수업료(4/4분기)

② 중학생 C와 고등학교 1학년 D가 6월에 신청하여 7월 20일에 보장결정이 된 경우  
- 월별로 지급하는 경우(8월)

지급 시기	8월	9월	12월
중학생 C	교육활동지원비		
고등학교 D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실비) 수업료(2/4분기) * 6~8월 수업료 포함	수업료(3/4분기)	수업료(4/4분기)

- 분기별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 시기	9월	12월
중학생 C	교육활동지원비	
고등학교 D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실비) 수업료(3/4분기) * 6~8월 수업료 포함	수업료(4/4분기)

## 2 급여의 중지

### 가. 중지 사유

- (1) 수급자에 대한 ‘급여가 필요 없게 된 때’
  - (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을 초과한 때
  - (나) 교육급여 대상자의 휴학·자퇴·퇴학·졸업 등의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 (다) 기타 수급자에 대한 급여가 필요 없음을 확인한 경우
    - \* 교육급여 수급자의 사망 등
- (2) 수급자가 ‘급여를 거부한 때’
  - (가) 수급자가 급여의 중지를 요청한 때
  - (나) 기타 보장기관이 수급자가 급여를 거부한 경우로 확인한 경우

### 나. 중지 시기

- (일반) 사유발생일 또는 급여중지일이 속하는 분기에는 교육급여수급자로 처리하고 다음 분기부터 급여 지급 중지
  - \* 수급자증명서는 사유발생일 또는 급여중지일부터 발급 불가
- (학적 변동) 교육급여대상자가 자퇴, 퇴학, 휴학, 제적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교육급여 수급 자격 정지 및 급여 지급 중지
  - \* 수급자의 사망으로 학교에서 제적 처리된 경우 학적 변동에 포함되어 일할 계산

### 다. 중지 절차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중지처리하고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
  - 졸업 또는 학업중단으로 인해 자격 중지를 통지하는 경우, 통지서에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사업’ 안내(참고)를 동봉하여 송부(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생략 가능)

## 【급여 변경중지 절차】



- 수급자가 읍·면·동(시·군·구)에 급여 중지를 요청한 경우, 읍·면·동(시·군·구)에서 학교로 공문을 송부하여 급여 중지를 요청하고, 학교에서 급여 중지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미사용교 재학생인 경우 읍·면·동(시·군·구)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공문을 송부하고, 시·도교육청에서 급여 중지
  - 성인(19세 이상)인 수급권자와 수급권자의 가구원이 학교로 직접 수급권자의 급여 중지를 요청한 경우[별도서식 1호] 학교에서 급여 중지
- 중지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착오 등으로 수급자의 자격을 중지한 경우, 학교 담당자는 시도교육청에 중지 취소 요청을 하고 시도교육청에서 중지 사유를 확인하여 중지 취소 가능

## 라. 자격 중지 시 정산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입학금
  - 중지일 이전의 급여지급액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음[법 제47조]
    - \* 단, 신청 시부터 부정수급인 경우 전액 환수
- 수업료
  - (일반) 급여중지가 결정된 달의 다음분기부터 교육급여지원을 중지
  - (학적변동) 시·도교육청 조례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교육청으로 반납 처리
    - \* 초·중·고 교육법 제60조의 4에 따른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중 고교 학비 지원 대상자'인 경우(입학금·수업료는 교육급여 사업에서 받고 있어 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학교운영 지원비만 감면 받고 있는 경우) 교육급여가 중지된 때부터 교육비 지원 사업에서 해당 학년의 수업료 지원
      - \* 졸업으로 교육급여가 중지된 경우, 졸업한 달까지 월할 계산

## 마. 수급권자가 급여 신청을 취소한 경우 반영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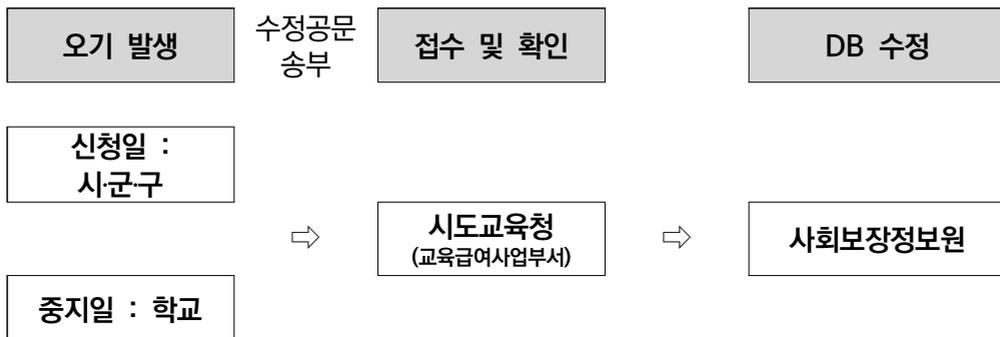
-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조사자결정정보 전송 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신청 접수 삭제

- 조사자결정정보 전송 후 보장결정 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신청 접수 삭제 및 교육부에 신청취소요청 전달(공문) → 신청 취소 결정 및 명단 삭제
- 보장결정(통지) 후 급여 지급 명단 확정 전 : 급여 지급 중지
- 급여 지급 후 : 급여 중지 요청으로 처리하여 다음 분기부터 급여 지급 중지

### 바. 교육급여 신청일, 중지일 오기 수정

- 신청일 수정 : 시·군·구에서 수급자가 재학 중인 학교가 위치한 시·도교육청에 오기 입력 변경요청 공문을 송부하면
  - 교육청은 교육급여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일을 수정하고 그에 따른 환수액 또는 추가지급액 지급 결과를 나이스에 입력(교육활동지원비·교과서대의 환수 처리는 지방교육행·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별도 처리) 후 그 결과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전송
- 중지일 수정 : 학교에서 해당 학교가 소속된 시·도교육청에 오기 입력 변경요청 공문을 송부하면
  - 교육청은 교육급여 프로그램을 통해 중지일을 수정하고 그에 따른 환수액 또는 추가지급액 지급 결과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의 환수 처리는 교육행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별도 처리) 후 그 결과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전송

【오기 수정 흐름도】



### 3 전·입학에 따른 교육급여 지급 관리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 급여자료 생성일 기준 학적이 있는 기관에서 지급
  - 보장기관 변경으로 인한 정산은 실시하지 않음
- 수업료
  - 급여자료 생성일 기준으로 학적이 있는 기관에서 지급

#### [전출입, 학적 변동에 따른 지원 방법]

구 분	지원방법	세부 내용
전입학	월할계산	전출교는 전출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전입교는 전입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원 * 수업료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관리 * 시스템은 전입일을 기준으로 계산 (예시) 8월 전출, 9월 전입 시 전출교는 8월까지, 전입교는 9월부터 지급
재취학 재입학 편입학	일할계산	수업료는 입학하는 날부터 지원
휴학 후 복학	일할계산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지원

\* 학비가 다른 학교 간 전학 시 수업료를 일할 계산하는 경우, 시스템으로는 월할 계산 하고, 나머지는 학교 간에 별도 정산

\* 나이스를 사용하지 않는 학교로 전출입하는 경우 나이스 전출, 전입일을 기준으로 계산  
- 일할계산 방식 : 재학한 월의 수업료와 함께, 학적변동이 일어난 월의 수업료에서 반환금액을 제외하고 징수 (다수 시도교육청의 세입업무편람 방식)

※ 예시) 3/4분기 징수결정 후 10. 8. 자퇴 및 퇴학 시

- 9월분 : 99,000원 전액 징수

- 10월분 : 자퇴/퇴학일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  
(반환 : 99,000원 × 23일/31일 = 73,451원 ⇨ 73,450원(10원단위 절사))  
(징수 : 99,000원 - 반환금액 = 25,550원)

- 11월분 : 99,000원 전액 반환

\*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계산한 일할계산결과가 해당지역의 계산방식과 맞지 않는 경우 수업료+/- 기능을 활용하여 금액 조정

※ 전·입학 또는 상급학교 진학 이후 추가지급 및 반납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지급은 현재 학적이 있는 전입교와 진학교에서 처리하고, 반납은 교육급여를 지급한 전출교와 졸업교에서 처리

## 4 상급학교 진학 시 급여 지급

- 초등학교 6학년 및 중학교 3학년 1~2월 보장 결정된 수급자의 경우, 보장 결정 당시 학적이 있는 기관에서 급여를 지급
  - 보장 결정 없이 상급학교로 진학하여 상급학교에 학적이 형성된 경우, 상급학교에서 보장 결정하고 미지급분을 소급 지급
-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학적이 정비되기 이전이라도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를 미리 감면하여 수급자의 편의 도모
  - 재학생은 나이스를 통해 수급자격 확인이 가능하고, 고등학교 진학 예정자의 경우 학적이 정비되기 전이라도 재학 중학교에서 교육급여 수급자 명단을 진학 예정 고등학교로 통보하는 방법으로 교과서대·입학금·수업료를 납부 유예하여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 재취학, 고교 검정고시 등의 경우는 수급자 증명서 제출을 통해 유예 실시
- 재학 중 신청하였으나 졸업 이후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전송된 경우, 학교에서 시도교육청에 대상자 명단 및 지급액을 공문으로 송부하면 시도교육청에서 지급

## 5 계좌관리

### 가. 급여계좌 원칙

- 모든 사회복지 보조금은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우편관서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는 학교로 지급

### 나. 급여계좌 예외 [시행령 제36조의3 관련]

- 수급자 명의의 금융회사(또는 우편관서) 계좌 개설이 곤란한 아래 수급자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여 지급함
  - (1) 수급자로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자(성년후견제 개시 심판 확정을 받은 수급자 중 계좌 개설이 되지 않는 자 등)

- (2) 수급자로서 급여를 계좌로 입금할 경우 압류를 당하는 채무불이행자  
(종전의 신용불량자)  
※ 상기의 경우 수급자 명의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토록 안내
-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4)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 (1),(2),(3),(4)의 경우 해당 수급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로 계좌에 입금할 수 있음
- (5) 친인척이 없는 미성년 단독가구 또는 무연고 신원확인 곤란자 등 수급자 본인  
명의로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보장기관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혈족 이외 제3자 중 이해관계자(실제  
수급자를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자)의 계좌로 설정 가능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급여계좌를 제3자의 계좌로 등록한 경우,  
보장기관은 반드시 급여관리자 지정 및 반기별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6) 법령에 따라 제3자 또는 기관(학교)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경우  
○ (1)~(5)의 경우 수급자의 배우자 등의 계좌로 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기초생활급여  
대리수령 신청서(서식 15호)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가) 급여 지급대상자인 수급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상기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대리수령인이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대리  
설정 이해관계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대리수령 신청 해당사유 확인방법

- 법원의 성년후견개시 심판 결정문 또는 후견인 선임이 명기되어 있는 가족관계  
등록부 확인
-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시·구청 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담당에게 확인 가능)  
-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 기타 상기에 준하는 입증자료로서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 보장기관의 장은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치매, 중풍, 뇌병변 등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단서를 제출받아 거동불가 여부를 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받아 확인
  -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하는 입원통지서 및 소견서를 제출받아 확인
- 미성년 단독가구 또는 무연고 신원확인 곤란자 등으로 직계존속이나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없거나 있어도 계좌 개설을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교단체 관계자이거나 개인운영시설장 등으로 실제 동 수급자를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이해관계자임을 확인

## 라. 수급자 명의 확인방법

- 교육청 금고를 통해 수급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가 금융기관에서 보유한 예금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와 일치하는지 사전점검 후 이체

## 마. 계좌 관리 절차

- 급여 신청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정보 및 계좌번호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연계
- 교육급여 보장 적합 결정이 되었으나 급여를 지급할 계좌 정보가 없는 경우, 보장 결정 통지 시 교육급여 계좌 (변경) 신청서(별도서식 2호)를 동봉 송부하고 관련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안내

문자 안내 예시 : 안녕하십니까? 00학교 교육급여 담당자입니다. 000학생이 교육급여 보장 결정이 되었으나 급여를 지급할 계좌번호가 없어 급여 계좌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릴 예정이니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00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계좌 변경의 경우 교육급여 수급자는 학교(교육청)에서 변경(별도서식2호)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급자의 편의를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계좌번호 변경(등록)을 대행하고 있으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연계 됨
  - \* 수급자가 읍·면·동에 계좌번호 변경을 신청한 경우, 읍·면·동의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계좌 변경 반영 여부 바로 확인 가능
    - 매 분기 급여 생성일 이틀 전(분기별 13일)까지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며, 해당 분기에 변경 계좌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 다음 분기에 반영

## 바. 압류 방지 전용 통장

-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1인 1계좌 원칙의 예외로 운영됨
    - ※ 수급자 본인이라도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별도 금액을 입금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 개설
-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방법
  - 수급(권)자의 서비스 및 급여 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결정통지서 발송 시 보장기관장은 압류방지 전용통장 제도를 안내하고, 금융기관 등의 압류가 있는 수급(권)자가 동 제도를 알지 못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기초생활수급자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에 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 사. 급여계좌 수 : 1인 1계좌

- 2개 이상의 사회복지 보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도 급여계좌는 1인 1계좌만 등록 가능
  - ※ 기존 수급자 중 1인 다수계좌인 경우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 가능

## 6

## 의사자의 자녀 및 의상자와 그 자녀 지원

## 가. 대상자 결정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에서 의사상자 결정 및 대상자를 지자체(시·도 ⇒ 시·군·구) 담당과에 안내

## 나. 대상자 안내

- 시·군·구의 의사상자 담당과에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상자 본인 또는 자녀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

## 다. 신청 접수

- 신청자가 교육급여 신청서[별도서식3호] 시·군·구의 의사상자 담당과에 제출하면, 해당과는 접수한 신청서와 함께 대상 학생의 지원 자격\*\*을 명시하여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를 관할하는 시·도교육청에 공문 송부
  -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와 그 가족이 대상 학생을 위해 교육급여 신청 가능
  - \*\* 교육급여를 지원 받을 학생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라 의사자의 자녀 또는 의상자와 그 자녀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이어야 함

## 라. 급여 지급

- 시·도교육청은 시·군·구에서 발송한 공문을 근거로 대상 학생의 재학 여부를 확인하여 급여 지급

## 마. 급여 중지

- 지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급여를 거부하거나, 졸업 등으로 급여 지급이 필요 없게 되는 경우 지원 중지

| 제5편 |

# 수급자 관리



## I 수급자 증명서 발급

### ○ 수급자 증명서 발급 [시행규칙 제40조]

- 발급대상 : 수급자(특례수급자 포함), 그 친권자, 후견인 등
  - ※ 발급제한 : 폭력피해자(가정폭력, 성폭력 등), 성매매 피해자 등으로 사생활보호가 필요하거나, 본인의 보호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 외 제3자에 대하여 증명서 발급제한
- 신청절차 : 복합 급여 수급자의 경우, 전국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며, 신청자가 수급자 본인인 경우 별도 신청서 작성없이 신분증명서 확인 후 발급 가능
  - ※ 신청자 중 그 친권자, 후견인 외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보장기관에 신청
- 교육급여 단독 수급자가 수급자증명서를 신청할 경우에는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가 소재하는 시도교육감의 직인이 날인되며 학교(교육청) 발행이 원칙이나, 수급자의 편의를 위해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도 발급(FAX민원)

### 유의사항

- 수급자 증명서를 위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제출
  -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작성 필요
  - ※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에는 작성연월일을 기재하며,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 부터 기산하여 6개월
- 학교(교육청)에 신청하는 경우, 교육급여 수급자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참(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 학교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신청자와 수급자의 가족관계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처리기간 : 즉시발급, 타거주지에서 신청 시 해당 보장기관 확인 후 발급
- 발급비용 : 무료
- 발급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출력
  - ※ 민원24, 홈에듀에서도 발급 가능
- 제출처, 제출용도를 확인하여 불필요한 증명서 발급으로 판단되는 경우 발급 제한 가능

## II 보장비용의 징수

### 1 부정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 [법 제46조제2항]

#### 가. 부정 수급의 확인

##### 1) 부정 수급의 정의

- 부정수급이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를 말함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의도적으로 불법을 행하거나 또는 상습적인 신고누락 및 지연신고로 부당하게 수급을 받는 경우로 볼 수 있음(협의를 개념)
  - 이 경우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를 부정수급자로 지칭
  - 수급자뿐만 아니라 기타 관계인(예를 들어 수급자에게 허위로 고용임금 확인서를 발급해준 고용주)도 부정수급자에 해당될 수 있음
- 상습적인 신고누락 및 지연신고라 함은 확인조사 주기(6개월)이상, 급여별 1인 지급액(6개월분) 이상인 경우로 볼 수 있음
  - 성실신고의무 위반 수급이 3회 이상 계속될 경우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음

##### 2) 부정수급의 확인기관

※ 과오수급(반환명령)도 부정 수급에 준하여 처리

- 부정수급 신고에 의한 업무 절차 : ①-②-③
- 확인조사(정기 년2회) 시 절차 : ②-③

- ① 부정수급 신고접수(사업팀) : 급여종류별 부정 수급 확인은 급여종류별 사업팀에서 행하며, 부정 수급 확인 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자산조사 및 자격조사 일원화에 따라 통합조사관리팀이 수행
- 생계·해산·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사업팀, 의료급여는 의료급여 사업팀, 주거급여는 주거급여 사업팀, 교육급여는 시·도교육감이 행함
    - ※ (각 사업팀) 부정 수급 확인, 보장비용 징수결정 및 징수,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및 징수진행 상황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통계관리(생계급여 사업팀) 부정 수급 관리 총괄
- ② 확인조사(통합조사관리팀): 부정 수급의 확인은 수급자에게 직접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보장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교육감이 행함. 단, 전출입 발생에 따른 부정수급 확인 절차 진행은 보장기관간 업무 협조하여 실시하고 사후 관리를 위해 반드시 전출입 기관에 통보
- 생계·의료·주거급여에 대한 부정 수급 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며, 교육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확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제4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62조제3항에 근거하여 위임받은 시·군·구청장이 행함
  - 부정수급 조사를 실시한 통합조사관리팀에서는 부정수급 확인 결과가 부정수급자로 확인되었을 경우 그 결과를 각 급여사업팀 그리고 각 해당 보장기관(전출기관, 시·도교육청)에 반드시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정 수급의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정 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③ 부정수급 결정 및 환수 통보 : 각 해당 급여사업팀에서는 통합조사관리팀에서 통보 받은 결과를 토대로 부정수급 결정 및 환수 조치 진행
- 교육급여 단독 수급자의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시·도교육감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 부정수급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고, 재조사를 거쳐 확인된 부정 수급 내용, 기간, 대상자 등은 시·도교육청에 통보

### 3) 부정수급이 결정된 경우의 조치

- 부정 수급으로 결정된 경우 중점관리대상자 등록·관리
- 부정 수급으로 결정된 경우 보장비용 징수 및 징수제외, 고발조치 여부 결정
- 부정 수급으로 결정된 경우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자인 급여종류별 중지자에 대하여는 부정 수급으로 결정된 달의 급여 전액을 중지(선정기준 초과사유 발생월의 급여는 지급)

- 급여종류별 수급자격은 유지하나 급여액을 변경해야 하는 급여변경자에 대해서도 부정 수급으로 결정된 달부터 변경된 금액을 지급
- 보장비용 징수대상 기간은 징수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사유가 종료된 달까지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판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비용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비용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함

- **판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 12. 23, 2016고단724
  - 피고인은 딸의 명의로 아파트와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었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사실혼 배우자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원받고 사실혼 파기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지급받아 보유 중이었으며, 식당을 운영하여 실제로는 사업소득이 있었음에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0년간 약 75백 만원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부정 수급 하였으므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
- **판례 2 [주택법 위반]** 대법원 2005. 10. 7. 2005도2652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라 함은 같은 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또는 그러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또는 공급받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거짓,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직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부작위)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 부정수급 유형 |**

부정 수급	허위 신고(신청)	소득·재산·가구원 변동(출생·사망) 미신고, 축소 신고
	목적 외 사용 (제3자, 시설장 등)	급여를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과오 수급 (반환 명령)	행정 착오	시스템 오류, 행정 담당자의 실수(신고내용 누락 포함) 등 행정상 착오로 인한 급여 지급
	행정 시차	수급 자격요건 등의 변동 정보가 행정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도달되지 않아 발생하는 일시적인 급여 오지급
	사정 변경	급여 신청 당시에는 수급요건을 충족했으나, 이후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급여지급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기 타	그 외 수급자 등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하는 부정적 지급

## 나. 보장비용 징수결정

### 1) 보장비용 징수금액의 산정 [시행령 제41조]

#### 가) 징수기간 산정기준

##### (1) 보장중지

- (기초생활보장급여 원칙) 선정기준 초과로 급여가 중지된 수급자는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산하여 징수
  - 단, 수급 중지사유 발생월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중지사실을 확인한 달부터 기산하여 징수
- 교육급여의 경우,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해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분기부터 기산하여 징수

#### 나) 징수금액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입학금 : 정산하지 않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7조]
  - \* 신청 시부터 부정수급인 경우 전액 환수
- 수업료 : 자격중지일이 속하는 다음 분기부터 지원을 중지하고 기지원금이 있을 경우 징수
  - \* 교육급여 기 수급자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중 고교 학비 지원 대상자’인 경우 수급자가 교육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때부터 교육비 지원 사업에서 해당 학년의 수업료를 지원하여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
  - ※ 확인조사로 인한 징수는 하지 않음

- 예시1) 수급자가 7월에 취업하여 신규 소득이 발생하여 교육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함에도 소득을 타인의 계좌로 받는 등 신고를 누락하다가 당해 연도 10월 적발된 경우
- 선정기준초과 : 7월(당월 소득인정액에 반영)
  - 보장비용 징수기간 : 9월~11월(중지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분기부터)
  - 급여중지 : 12월부터 급여 중지
  - 보장비용 징수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입학금은 정산하지 않음, 9월~11월 수업료 징수
-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중 고교 학비지원대상자인 경우 9월부터 해당 사업에서 수업료 지원
- 예시2) 수급자의 소득재산이 늘어 교육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한 것이 10월 적발된 경우(소득 재산 증가 월 확인 불가)
- 선정기준초과 : 10월(당월 소득인정액에 반영)
  - 급여중지 : 12월부터 급여 중지
  - 보장 비용 징수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입학금은 정산하지 않음, 수업료 11월까지 지급(징수 내역 없음)

## 2) 징수 대상자 관리

- 학교(교육청)는 보장 비용 징수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

※ 2015년 7월 맞춤형급여 개편 이전에 지급된 보장비용 징수금액은 지급한 시군구에서 처리

## 다. 보장비용의 징수 절차

### 1) 보장비용 납부통지

- 보장기관이 보장비용 징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징수 대상자에게 납부 통지하여야 함
  - 보장비용·부당이득 징수통지서(서식8호) 및 고지서를(등기우편 등) 송부
- 징수대상자가 타 시·군·구 거주 및 전출 시에는 보장비용납부 통지서 및 고지서를 산출내역과 함께 우편(등기우편 등)으로 송부하여 납부토록 함
- 보장비용 징수대상자로 결정된 수급자가 보장비용의 징수에 대하여 상계처리를 동의하는 경우 지급할 급여에서 상계처리 가능
  - ※ 단, 타법에 따른 급여(기초연금, 장애연금 등)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에서 상계는 불가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각각의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간에도 상계 불가

## 2) 분할납부

- 보장기관은 보장비용 징수대상자의 생활실태, 가구여건 등을 감안하여 분할 납부토록 할 수 있음
  - 분할신청이 있는 경우 징수대상자의 생활실태 등을 감안 분할 징수

## 3) 독촉

- 보장비용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sup>\*</sup>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에 따라 징수
  - \* 「국세징수법」 제3장 강제징수(제24조~제106조) 참고

## 라. 징수금액의 처리

- 징수한 보장비용을 징수 당해연도 급여분과 지난해 급여분으로 구분하여
  - 당해 연도 급여에 대한 징수금은 당해연도 세출예산과목으로 반납 처리
  - 지난해 급여에 대한 징수금은 시·도교육청의 그외수입으로 처리

## 2 결손처분

- (1) 보장기관은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음
  - (가)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부족한 때
  - (나) 보장비용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 ※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서 국가의 권리로서 소멸시효는 5년
  - (다)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등 체납처분 중지사유가 발생한 때
  - (라) 지방행정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확인 결과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 단, 결손처분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함

### 3 소급지급

- 보장기관의 급여결정대로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소급지급은 불가
  - 단, 보장기관에서 급여 결정된 사항과 달리 과소 지급한 경우는 그 귀책사유가 보장기관에 있기에 소급지급 가능하며, 반대로 급여 결정된 사항보다 과다 지급된 경우는 반환명령 대상임

### 4 소멸시효

- 보장비용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관련법령의 시효로 인하여 소멸
  - 관련법 : 「국가 재정법」 제96조
  - 보장비용징수 적용대상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모두 적용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경우, 민사상의 부당 이득 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 10년
  -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적용대상 : 수급자 적용, 부양의무자 미적용
    - ※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며 소송비용과 기대이익의 비교 필요

### 5 고발조치

- (수사 및 처벌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벌칙규정 또는 개별법 벌칙규정
  - 부정수급기간이 6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자는 [법 제49조에 따라 고발조치
  - 단, 위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고의성이 농후하거나, 부정수급을 부인하여 보장비용 징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해당
    - ※ 본인이 보장비용 징수에 성실히 응하여 납부하고 있는 경우 제외 가능
- (절차) 수사 의뢰서 또는 고발장을 작성한 뒤 현장점검자료 등 부정수급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수사기관(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문서로 의뢰

### Ⅲ 과오수급(반환명령)

#### 1 과오수급(반환명령)의 요건 및 대상 [법 제47조]

- 과오수급(반환명령)이란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등 수급자 선정 및 급여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중 기 신고 된 자료의 변동(임금의 인상, 재산의 가액증가, 부정기적 일용소득 등 단순변동을 의미)에 대한 신고누락 및 지연신고로 인하여 과다하게 급여를 받는 경우”를 말함
  - 단, 신규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은 경우(본인 신고의 의무 미이행) 및 재산 취득과 가구원 변동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됨
    - ※ 업종, 직종을 변경하는 경우, 금융재산 증감(이자, 기존 예금의 평가액 변동은 제외) 발생한 경우, 소득환산대상인 재산의 취득은 신고 대상임

#### 2 과오수급(반환명령)의 감면 (감액 또는 면제)

- 보장기관의 장이 수급자의 생활실태, 가구특성, 급여내용,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또는 천재지변, 화재, 부도 등으로 사실상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환을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 3 과오수급(반환명령)대상자 관리

- 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한 반환명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해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시·도교육청에 통보
- 시·도교육감은 반환대상자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
  - 징수유형 구분 : ①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② 반환명령
  - 수급자 동의 시 향후 지급할 급여에서 상계 처리 가능

### 4 과오수급(반환명령)의 절차 및 처리 방법



제5편

## IV 이의신청

### 1 이의신청 접수 : 읍·면·동(교육청)

- 급여신청 또는 급여변경, 급여증지 등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구두나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의 복지담당공무원, 시·군·구 통합조사관리부서 복지담당공무원)에게 이의신청서 제출
  - 민원인이 구두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 양식은 [서식9호]를 활용하여 작성
    - \* [법 제38조]에 따라 교육급여에 대한 이의신청은 교육급여 보장기관인 시도 교육감에게 직접 이의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육급여 수급자인 학생의 낙인감 방지 및 접근성 편의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 접수를 대행함
- 교육급여만 신청한 수급(권)자가 교육급여에 대하여 교육청에 직접 이의신청하는 경우, 교육청은 해당 이의신청 접수 (타 급여 이의신청 접수 불가)
  - \* 읍·면·동(시·군·구)에서 접수받은 서류 중 기타 이의신청 관련 서류는 학교(교육청)에 전달
  - \* 교육청에서 접수받은 서류 전체를 시·군·구에 전달
- 시·도교육감에 대한 이의 신청은 결정통지서, 급여변경 및 중지통지서 등을 받을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2 이의신청 이송 : 읍·면·동(시·군·구) → 학교(교육청)

- 교육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가 보장기관의 보장결정에 이의신청하는 경우,
  -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 내용이 교육급여 신청서 기재사항, 소득재산조사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조사하여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학교(교육청)에 송부하고
  - 기타 이의신청사항은 즉시 학교(교육청)에 송부
  - 단, 이의신청서를 학교(교육청)에 송부한 이후 신청인이 신청 취하를 한 경우에는 취하서를 즉시 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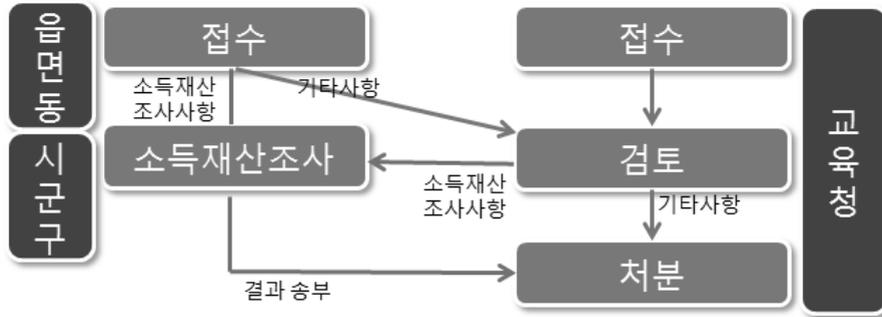
### 3 이의신청 이송 : 학교(교육청) → 시·군·구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가 이의신청서를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에 제출하였으나 이의신청 내용이 소득·재산 조사에 관한 사항인 경우
  -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는 공문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시행한 시·군·구청에 소득·재산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 조사를 의뢰받은 시·군·구청의 통합조사관리팀은 즉시 소득·재산 재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교육감에게 공문으로 송부
    - ※ 소득·재산 재조사는 공적·금융재산 자료 재조회가 아니라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대한 소명 및 그에 따른 재산정 등의 재조사를 의미함

### 4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등

- 학교(교육청)은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 심판법」 제43조에 따라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함
    - \* 이의신청의 대상보다 신청인에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함
    - \*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등의 통지서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분명히 명시하여야 함
-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서식11호]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를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 이의신청인에게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하여 다시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도교육감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함께 알림
- 이의신청에 따른 처분의 효력
  - 이의신청의 대상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처분 및 재결은 그 효력의 소급에 대하여 달리 결정하지 않은 한, 급여신청 또는 급여변경을 신청한 날(급여중지 결정일 포함)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함

[이의신청 흐름도]



**5 교육부 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 시·도교육감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공문으로 송부[법 제40조]

## V 개인정보 보호

### 1 개요

- 지원 학생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점검 필요
- 업무관련자가 취득한 개인정보 자료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 수행

### 2 조치사항

- 교직원 연수 강화 및 개인정보 노출 소지 자체 점검·보완
- 고교 학비 고지서 발급은 가정통신문 안내로 대체
- 업무관련자 비밀 엄수 및 자료 관리 철저
  -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 의거 최고 파면에 처해질 수 있음
  - 학부모가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과의 관계 확인 후 안내 가능
    - ※ 학생에게는 정보 제공 금지
  - 교육급여 지원 업무담당자를 제외한 교직원(담임교사 포함)의 단순 열람은 원칙적으로 금지
    - ※ 단, 학교장 추천 지원, 장학금 추천, 학생 생활지도 등 필요한 경우 학교장 승인 후 해당 목적을 위해서만 열람 가능

## VI 데이터 미이관자 정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예상되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교육급여 수급자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학생이 시·도교육청, 학교에서 발견되는 경우,
  - (시·도교육청) 해당 학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학생의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확인 및 수급자인 경우 교육급여 신청 처리 요청 공문 발송
  - (시·군·구) 시·도교육청에 해당 학생의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확인해 주고, 수급자인 경우 교육급여 신청·조사 절차 진행
  - (학교) 해당 수급자가 신규 보장결정관리에 나타난 경우, 보장결정 후 기지급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급여 지급

### 〈수기 관리 교육급여 수급자 정비 흐름〉



| 제6편 |

# 기 타



## I 보장기관

- 보장기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교육급여를 실시하는 교육부장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임
- 교육급여는 수급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 실시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법령에서 위임된 구체적인 교육급여 사업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
-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준 중위소득,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결정, 수급자 범위의 특례, 지역자활센터 지정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요 정책사항을 결정
  - 교육급여의 지급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 II 예산 부담 및 정산

### ○ 항목별 예산부담주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의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의2(교육급여 보장비용 부담의 특례)**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부담한다.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수급자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원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다.
2.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수급자에 대한 학용품비와 그 밖의 수급품은 국가, 시·도, 시·군·구가 부담하며, 구체적인 부담비율에 관한 사항은 제43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다.
3.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미만인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은 국가, 시·도, 시·군·구가 제43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라 부담하되, 제12조의2에 따라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원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다.

- (1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50% 이하 및 (3호 하반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미만인 경우 법 제12조의 2(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른 수급자의 입학금·수업료의 지급은 시·도교육청이 담당
  - (2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50% 이하의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금은 국가, 시·도, 시·군·구가 분담
  - (3호 상반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미만인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은 국가, 시·도, 시·군·구가 분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늘어난 입학금·수업료 제외)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 국가, 시·도, 시·군·구가 입학금·수업료 부담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 시·도교육청이 입학금·수업료 부담
- \* 고교 입학금, 수업료의 예산분담주체를 구별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해당 수급자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 미만,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인지 확인

기준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중위소득 40% 이상~50% 이하		시·도교육청	국가, 시도, 시군구
중위소득 40% 미만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미약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국가, 시도, 시군구	

○ 보장 비용 부담 비율[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

**기초법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① 보장 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시·군·구가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중 제42조제3호 및 제4호의 비용(이하 이 호에서 "시·군·구 보장비용"이라 한다)은 시·군·구의 재정여건, 사회보장비 지출 등을 고려하여 국가, 시·도 및 시·군·구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차등하여 부담한다.

가. 국가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를 부담한다.

나. 시·도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에서 가목의 국가부담분을 뺀 금액 중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70 이하를 부담하고, 시·군·구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에서 국가와 시·도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부담한다.

- 생계, 의료, 주거 급여 등 타 급여의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부담비율에 준하여 교육급여 예산 반영

※ 예산 편성 절차 : 시도에서 광역(시도)과 기초(시군구)의 부담률을 교육청으로 통보(9월 초) → 교육청은 부담률에 맞추어 교육급여 지방비 가내시 통보(9월 중) → 지자체별 예산 편성

○ 보장 비용 부담 수급자 기준

- 해당 지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9조(보장기관)의 시도교육감은 해당 시도의 교육을 담당하는 바, 학생의 실 주소지에 상관없이 학생이 교육을 받는 학교의 위치에 따라 관할을 하게 되므로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한다는 의미는 수급자가 다니는 학교(실 거주지)를 관할한다는 의미로 해석

- 따라서 급여 신청자의 소재지와 교육급여 수급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시도·시군구에서 교육급여 예산 부담

사도·사군구 별 연간 보조금 예산 산출 식

· 지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 초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수 × (331,000) × 보조율\*
- 중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수 × (466,000) × 보조율
-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수 × (554,000 + 94,000<sup>\*\*\*</sup>) × 보조율
- 고등학생 생계 또는 의료급여<sup>\*\*</sup> 수급자 수 × 2,313,000<sup>\*\*\*\*</sup> × 보조율

\* 보조비율 : 생계, 의료, 주거 급여 등 타 급여의 예산부담비율에 준하여 반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미만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 교과서대 평균 단가이며, 실제 지급액은 학생이 구입한 교과서 실비에 따름

\*\*\*\* 입학금·수업료 평균 단가이며, 사도교육청 별로 입학금·수업료 기준액은 다름

- (예외) 사·군·구별 재정부담 문제로 사·도, 사·군·구, 교육청이 협의하여 해당 사·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급여 수급자의 사·군·구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결정한 경우, 타 사·도에 주소지가 있으나 해당 사·도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보장 비용은 학적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타 사·도에 부담이 없도록 조치

(예시) A시 내 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급여 수급자가 32명인 경우

정산 방식	원칙	예외
a구	a구에 위치한 학교에 재학 중인 수급자 14명 (a구 주소지 10명, b구 주소지 3명, B도 주소지 1명)	a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수급자 12명 (a구 주소지 11명, B도 주소지 1명)
b구	b구에 위치한 학교에 재학 중인 수급자 7명 (a구 주소지 1명, b구 주소지 4명, B도 주소지 2명)	b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수급자 10명 (b구 주소지 8명, B도 주소지 2명)
c구	c구에 위치한 학교에 재학 중인 수급자 11명 (b구 주소지 1명, c구 주소지 10명)	c구 주소지 수급자 10명 (c구 주소지 10명)

※ 예외적인 방법으로 보장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정산내역과 상이해짐

○ 예산 이체 및 보조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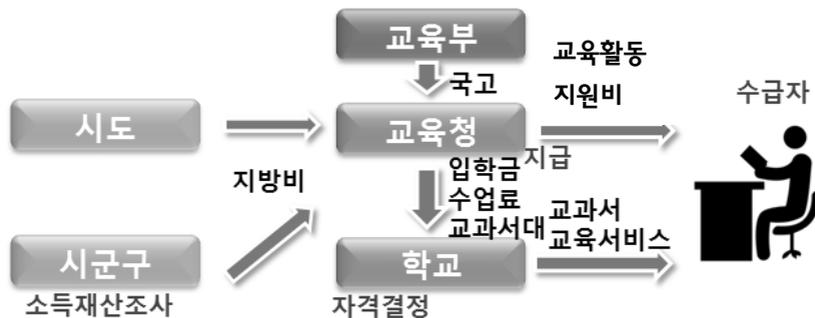
- 국고 :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에 교부
- 지방비

- ① 교육부에서 지자체, 시·도교육청에 가내시(전년 9월)→확정내시(전년 12월)
- ② 사·군·구 예산 확보(전년 9~11월)
- ③ 시·도교육청이 사·도에 지방비 이체 요청 공문 송부(당해년도 1월~2월)

·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의2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등이 적용되는 국고보조금 사업이므로 공문으로 교부 요청 및 정산

- \* 교육청에서 시·군·구별로 산출하여 교부를 요청한 예산이 교육부의 확정 내시와 다를 수 있음
- ④ 시도·시·군·구에서 지방비를 시도교육청으로 이체 (당해년도 1월~8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3조의2에 따라, 시도, 시·군·구에서 국고 비율에 맞추어 확보한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교부
- ⑤ 교육부는 예산 과부족분을 반영하여 7~8월에 시도, 시·군·구에 변경 내시하고, 시·도, 시·군·구는 이를 추경에 반영하여 시도교육청에 보조금으로 교부
  - 시·도, 시·군·구교육부의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과부족분을 반영하여 시·도 교육청에 12월 10일까지 지방비 교부
- ⑥ 변경 내시 등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국고부족분이 발생하였을 경우, 교육부에서는 차차년 예산에 부족분을 반영하여 교부하고, 시도, 시·군·구에서도 국고 비율에 맞춰 예산을 반영하여 시도교육청으로 교부

[교육급여 예산 흐름도]



○ 정산 : 시도교육청은 이듬해 3월까지 국가, 시도, 시·군·구 별로 교육급여 집행액(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을 정산하여 통보

\* 해당 연도의 예산 집행 이후 이듬해에 반납이 발생하는 경우 정산에 포함하여 반납

## ○ 국고보조금 관련 월별 진행사항

월	지자체 국고보조금 관련 진행 사항	비고
전년도 9월	이듬해 국고보조금 가내시	중앙부처
전년도 10~11월	가내시 자료를 기초로 이듬해 예산 편성	지방자치단체
전년도 12월말~1월 1~3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12월말) 국고보조금 교부(1~12월)	중앙부처
1~3월	전년도 국고보조금 실적 및 정산보고(3월)	지방자치단체
3~7월	전년도 국고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에 대한 검토·확정 통보(3~4월)	중앙부처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추경예산편성(4~7월) - 가내시 기준 예산을 확정내시를 반영·수정 - 전년도 정산 확정에 따라 반납 예산 반영 및 납부	지방자치단체
7~8월	국고보조금 중간정산 및 내시변경 - 지자체로부터 2분기까지 실적 및 3~4분기 소요추계를 파악하여 변경내시	중앙부처
8~10월	지방자치단체 당해연도 정리추경예산 편성 - 변경내시액에 맞추어 정리추경에 반영	지방자치단체

## ○ 교특회계 예산편성체제

구분		편성과목 등	
세입	국고보조금	11201 국고보조금 목	
	광역자치단체이전	12106 교육급여보조금 목 (광역자치단체보조금 원가통계목)	
	기초자치단체이전	12106 교육급여보조금 목 (기초자치단체보조금 원가통계목)	
세출	교육청에서 직접집행	세부 사업	[01] 학비지원 단위사업 내 [04] 교육급여지원
		성질	310-01 보상금 세목 (사회보장적수혜금 또는 장학금 및 학자금 원가통계목)
	학교회계로 전출	세부 사업	[01] 학비지원 단위사업 내 [04] 교육급여지원
		성질	620 학교회계전출금 내 공·사립학교에 해당하는 비목 (620-03 목적사업비 또는 620-10 사립학교 목적사업비 등)



| 제7편 |

# 서 식



## 제7편 서식

[서식1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183
[서식2호] 소득·재산 신고서 .....	187
[서식3호]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188
[서식4호]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 신청서 .....	190
[서식7호] 사회보장급여(결정/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 .....	191
[서식8호] 보장비용 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 .....	204
[서식9호] 이의신청서 .....	205
[서식11호]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	206
[서식12호] 수급자 증명서 발급신청서 .....	207
[서식13호] 수급자 증명서 .....	208
[서식14호] 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등 동의서 .....	209
[서식17호]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 .....	210
[서식23호] 지출실태조사표 .....	211
[서식24호]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212
[서식41호]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변동 사전 안내문 .....	213
[서식42호] 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자 구비서류 목록 .....	214
[서식43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관리자 지정서 .....	215
[별도서식1호] 교육급여 교육비 중지 요청서 .....	219
[별도서식2호] 교육급여 계좌 (변경) 신청서 .....	220
[별도서식3호] 의사자 자녀 및 의사자와 그 자녀의 교육급여 신청서 .....	221

※ 법정 서식(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 ★ 표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는 대장 성격의 서식은 등 자침에 수록하지 않았으며, 필요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공통서식 별지 제7호],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공통서식 별지 제8호], 복지대상자 통합연명부[공통서식 별지 제10호]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http://www.law.go.kr))의 '행정규칙'에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참조

※ 등 서식의 전자문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http://www.mohw.go.kr)) [정보]-[사업]-[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서식 1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서식 1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4쪽 중 1쪽)

처리기간	별도안내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실거주지 주소 <sup>1)</sup> : )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미동거사유)	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
							직업	직장명	
1. 배우자 관계 <sup>2)</sup> ([ ] 법률혼 [ ] 사실혼 [ ] 사실상 이혼)      2. 외국여권 소지자명 <sup>3)</sup> : _____, _____ 3. 국외출생자명 <sup>4)</sup> : _____, _____                      4. 복수국적자명 <sup>5)</sup> : _____, _____									

부양의무자 <sup>6)</sup>	수급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가구원수	전화번호	

급여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 <sup>7)</sup>

통지방법    [ ] 서면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기타 (                      )

### 작성방법

- 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의 주소 기재(주거급여 신청자 중 임차가구에 한함)
- 2),3) 해당자에 한함
- 4),5) 아동수당, 양육수당 신청대상에 한함
- 6) 부양의무자 조사 사업 해당자에 한함(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7) 동일보장가구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디딤씨앗계좌(CDA) 또는 압류방지통장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4쪽 중 2쪽)

보장구분	사회보장급여 내용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자가 [ ]임차 <sup>9)</sup> [ ]기타 <sup>9)</sup> ) [ ]교육급여	
영유아	[ ]양육수당(대상자 이름 : _____), ([ ]가정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_____),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_____)	
아동수당	[ ]지급대상아동이름: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아동·청소년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①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② 급식(중식)비 ③ 고교학비지원 ④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PC 신청 여부 : [ ]신청 [ ]미신청] [통신사 [ ]KT [ ]SK브로드밴드 [ ]LG U+ [ ]SK 텔레콤 [ ]기타( _____ )] [인터넷 가입(예정)자 성명 : _____, 주민번호 : _____] * (필수) 본인 관련 정보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 기관(PC 설치업체, 인터넷통신회사)에 제공 동의[ ]
	[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 ]청소년특별지원 ( [ ]연장신청)	
노인	[ ]기초연금( [ ]배우자 동시신청)	
장애인	[ ]장애연금( [ ]배우자 동시신청 [ ]차상위 부가급여) [ ]장애수당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한부모 가족	[ ]한부모 가족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기타	[ ]차상위계층 확인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차상위 자활급여 [ ]사실이용-입소 [ ]차상위 자산형성 [ ]타법 의료급여 <sup>10)</sup> ( _____ ) [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 의뢰 및 연계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			
자격구분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생계 [ ] 의료 [ ] 주거 [ ] 교육) [ ] 차상위계층 [ ] 장애인 [ ] 한부모가족 [ ] 기초연금		
감면 서비스	전체 신청	[ ] ※ 전체서비스 (대행)신청 시 체크	
	선택 신청	[ ] 전기요금	[ ] TV수신료 면제 [ ] 휴대전화요금 [ ] 지역난방요금 [ ] 도시가스요금

※ 아래항목 작성 시 신속·정확하게 요금감면대상 확인이 가능하며, 미 작성 및 부정확한 정보를 작성 시 감면서비스 (대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기 고객번호 : \_\_\_\_\_ ◦ 지역난방 열사용자번호 : \_\_\_\_\_ ◦ 이동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도시가스 (사용계약자명 : \_\_\_\_\_ 사업자명 : \_\_\_\_\_ 고객번호 : \_\_\_\_\_)

가구원 추가 기재 (휴대전화 요금할인 신청시)					
가족 사항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휴대전화 번호	이동통신사
					[ ] KT [ ] SK 텔레콤 [ ] LG 유플러스
					[ ] KT [ ] SK 텔레콤 [ ] LG 유플러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인 (√ 체크)
<p><b>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b>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input type="checkbox"/>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기초생활보장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 영유아 및 한부모 가족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노인 및 장애인은 본인 및 배우자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p>	[ ]

(4쪽 중 3쪽)

<p><b>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b></p> <p><input type="checkbox"/> <b>제공받는 자:</b>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공사</p> <p><input type="checkbox"/> <b>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b> 요금감면 (대행)신청 및 요금감면 대상 자격변동 여부 확인</p> <p><input type="checkbox"/> <b>제공할 개인정보 범위:</b>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p> <p><input type="checkbox"/> <b>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b> 요금감면대상 자격상실 후 5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b>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b>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시 요금감면 (대행)신청이 제한됩니다.</p>	[ ]
---	-----

선택적 동의	동 의 (√ 체크)
1.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차상위 자격이 확인되었으나, 위탁 심사결과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등록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장애수당 신청일로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3. 교육급여를 신청한 경우,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4.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경우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급여)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전부 중지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5.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 등이 변동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의 제2항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6.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가능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금융·신용·보험정보 등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족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자선형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에 한함)	[ ]

유 의 사 항	확 인 (√ 체크)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멸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복수국적발생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요건이 향후 변경되는 경우(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구원의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상실 또는 지급 정지, 장애정도 하향조정 등)에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한 서류(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요금감면 (대행)신청을 한 경우 관련한 결정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V 수신료 및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휴대전화요금 : 이동통신사, 도시가스요금 :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비납금 : 지역난방공사	
7. 맞춤형 급여 안내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안내해 드리기 위한 것으로, 실제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거부 의사가 없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는 가구 단위로 신청되며, 가구원은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를 통해 안내된 사회보장급여는 정보통신망에서 조회된 공적자료 위주로 확인한 결과이므로 실제 신청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신청인과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 안내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선택적 동의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sup>1)</sup> 성명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동시신청 시)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 8) 민간·공공임차, 사용대차, 공동생활가정 거주자,  
9) 가정위탁(입양대상), 보장시설, 타 법령 우선지원 주거시설, 공공운영 공동생활가정 등,  
10)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1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안 내 사 항**

<b>처 리 기 한</b>	- 14일 : 유아학비 - 30일 : 기초생활보장(연장시 60일), 아이돌봄서비스지원(연장시 60일), 기초연금(연장시 60일), 장애인연금(연장시 60일), 청소년특별지원, 아동수당(연장시 60일), 한부모가족(연장시 60일) - 60일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연장시 90일)	
<b>관 계 법 률</b>	<b>보장구분</b>	<b>해당 법률</b>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초·중등교육법, 주거급여법
	영유아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
	아동 ·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학교 밖 청소년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아동수당법
	노인	기초연금법
	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기타	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발제한구역법
<b>신청시 구비서류</b>	<b>추가 제출서류</b>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 학생 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 <sup>12)</sup>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차상위계층 확인)	소득·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별지 제1호의3서식)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 (보호자 부재·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9.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0.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1.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12. 차상위 자산형성 신청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13.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거급여 임차수급자에 한함) 14. 복수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외국여권 사본1부(외국 여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소지자)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15.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단, 국내여권이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노인, 아동 · 청소년, 기타(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산형성)	소득·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b>제출하는 곳</b>	관할 시·군·구청(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1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서식 3호]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앞 쪽)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1. 지원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 유의사항 : 인감으로 동의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포함)으로 대신합니다.

세대주와 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sup>1,2)</sup>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에 동의함 <sup>3)</sup>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 1)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맞춤형 급여 안내,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교육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교육감·광역시교육감·특별자치시교육감·도교육감·특별자치도교육감(관련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 이하 '보건복지부장관 등' 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 전(맞춤형 급여 안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유효기간)까지,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상실 전까지

### 5. 정보제공 목적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아이돌봄 지원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초·중등교육법」, 「의료급여법」, 「주거급여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확인조사 지원, 맞춤형 급여 안내 및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위한 수급가능성 확인,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 ]년 [ ]월 [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뒤 쪽)

##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사 대행회사
  -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8)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10)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1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1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3개월 입금액 총액\*  
\* 기초생활보장제도만 해당
  -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2. 신용정보
  -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2)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 1) 보험증권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2) 연금보험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유의 사항

-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인무자가 이 **동의를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 「기초연금법」 제11조제4항,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 제14조, 「아이돌봄지원법」 제24조제3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4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기초연금법」 제10조, 「장애인연금법」 제8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2항, 「주거급여법」 제9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향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 「기초연금법」 제11조제2항, 「장애인연금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 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를 제출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맞춤형 급여 안내를 위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를 한 번만 제출하면, 이후 주기적인 맞춤형 급여 안내를 위한 금융재산조사의 경우에는 동의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인과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를 제출 여부에 따라 수급가능성을 확인하여 안내하는 사업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인무자)의 금융정보 등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8항 및 제49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 「기초연금법」 제12조제6항,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6항 및 제12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제6항, 「장애인돌봄 복지지원법」 제15조제6항,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6, 「주거급여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대상자 선정·확인조사, 맞춤형 급여 안내, 수급회량 이력관리, 급여 지급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 등의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4조 또는 해당 법률의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서식 4호]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서

##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서

자 격 구 분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생계 [ ] 의료 [ ] 주거 [ ] 교육) [ ] 차상위계층 [ ] 장애인 [ ] 한부모가족 [ ] 기초연금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감면 서비스	전체 신청	[ ] ※ 전체서비스 (대행)신청 시 체크				
	선택 신청	[ ] 전기요금	[ ] TV수신료 면제	[ ] 휴대전화요금		
		[ ] 지역난방요금	[ ] 도시가스요금			

※ 아래항목 작성 시 신속·정확하게 요금감면대상 확인이 가능하며,

미 작성 및 부정확한 정보를 작성 시 감면서비스 (대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기 고객번호 :                      ◦ 지역난방 열사용자번호 :                      ◦ 이동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도시가스 (사용계약자명 :                      사업자명 :                      고객번호 :                      )

### 가구원 추가 기재 (휴대전화 요금할인 신청시)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휴대전화 번호	이동통신사
가족 사항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요금 감면 및 복지지원 연계를 (대행)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_\_\_\_\_ (대리신청의 경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유의사항

1. 본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공사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및 복지지원 연계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고 개인정보(교육식별정보 포함)를 상기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 등)
2. 복지대상자 요금감면을 받을 경우, 자격변동 내용을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요금감면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본 감면 신청과 관련한 결정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V 수신료 및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휴대전화요금 : 이동통신사, 도시가스요금 :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비감면 : 지역난방공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7호] 사회보장급여관련[결정(적합)/결정(대상제외)/변경·정지·중지·상실]통지서

[1 면]

## 사회보장급여 [ ] 결정(적합) [ ] 결정(대상제외) [ ] 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

신청인/ 세대주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신청내용	신청구분			급여·서비스내용	
비고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 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 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보장급여	급여개시일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 생계·의료·주거급여 보장결정사항은 시·군·구청장이, 교육급여 보장결정사항은 시·도교육감이 각각 통지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및 임대차 계약조건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을 초과하거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격이 중지, 변경되거나 급여가 감소 될 수 있습니다.

- 중지 :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기출 또는 행정불명으로 신고 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해당 사실을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수급권자에게 급여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권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월임치 연체 등

- 변경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임대차 계약조건 및 근로능력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 급여감소 : 3개월 중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중인 경우 등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자는 적합통지를 받은 해의 다음 연도부터 주택노후도 등에 따라 주택수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 ] 한부모가족 ([ ] 급여지급, [ ] 증명서 발급) [ ] 장애인복지 [ ] 기타  
( ) 급여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 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보장구분	보장급여	보장기간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될 수 있으며**, 부정 수급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한부모가족 또는 장애인복지(장애(아동)수당) 수급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증명서(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를 초과하고 60%이하인 한부모가족지원 신청자(기준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고 72%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 신청자)는 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됩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영유아보육 수급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 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보장급여	보장기간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2. 가정양육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다만, 출생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3.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의해 해당 기간동안 양육수당 지원이 정지되므로,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4. 어린이집 0-2세 연장보육반 수급 아동이 부모의 취업 여부 등 연장보육반 자격 인정 요건에 변동이 생긴 경우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의 어린이집 입소,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입학,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등 가정양육수당 수급 인정 요건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하며, 변경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은 환수될 수 있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연장보육반 수급 아동의 경우 유효기간 내일지라도 해당 사유가 소멸할 경우 직권으로 기본보육반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른 보육료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급 예정 장애인연금 급여액 및 지급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성 명	장애인연금 급여액	금융기관	계좌번호
본 인				
배우자				

3. 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사전신청의 경우 18세가 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0일에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4.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수급권 상실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 재산의 증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장애정도 변경 등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 변경 : 연금지급액의 변경을 초래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결혼·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 지급계좌 변경, 연금지급 정지사유 소멸
  - 정지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국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특별지원청소년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보호자, 지원기관,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자	성명	관계	생년월일
	주소		
지원기관	기관명	주소	대표자
	주소		담당자
지원내용	연락처		

3.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4.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급예정 연금액 및 연금지급 지급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성명	기초연금 급여액*	금융기관	계좌번호
본인		원		
배우자		원		

\* 이 금액은 예상연금액으로 실제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사전신청의 경우 65세가 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4. 거주지역, 세대구성,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을 초과하거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권상실, 변경되거나 지급정지 될 수 있습니다.
  - **수급권 상실**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 재산의 증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 **변경** : 기초연금 급여액의 변경을 초래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결혼·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 지급계좌 변경, 기초연금 지급 정지사유 소멸
  - **정지**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 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초연금 수급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7. 기초연금법 제11조, 제28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또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귀하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급 예정 아동수당 급여액 및 지급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인과의 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지급금액	금융기관	계좌번호	급여개시일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3. 아동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가능하며 각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 출생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4. 아동수당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법 제13조제1항제1호 의해 해당 기간동안 아동수당 지원이 정지되므로,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5.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는 아동수당법 제15조(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중지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
    - 변경 : 보호자의 변경, 지급계좌 변경, 기타 정지사유 소멸
    - 정지 : 행방불명 신고 후 30일이 경과한 자, 실종선고가 진행 중인 자, 해외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6.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수당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7. 아동수당법 제26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8. 아동수당수급권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아동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아동·청소년복지 대상자 (소년·소년기정보보호비 / 그룹홈·가정위탁보호비 / 기타)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사회복지서비스 조사·심의 결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 통>**

지원대상		사회복지서비스명	정부지원액 (월)	본인부담금 (월)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본인부담금납부계좌		이용권 유효기간	지원내역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인 경우**

활동지원등급	등급	종합점수	점	
<b>결정 급여</b>	[ ] 활동지원급여 [ ] 특별지원급여 [ ] 긴급활동지원			
<b>월 한도액</b>	월	원	활동지원급여	월 원
			특별지원급여	월 원
			긴급활동지원	월 원
<b>본인부담금</b>	월	원		
<b>본인부담금 납부계좌</b>				
<b>급여개시일</b>				
<b>유효기간</b>				
<b>수급자격심의위원회 의견</b>				

\* 서비스 제공기관 : 이용안내문 참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 서비스 수급자인 경우**

이용 서비스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서비스이용시간	[ ] 시간
급여개시일	
유효기간	

## 2.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 안내

-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 ※ 희망e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은 향후 이용권 재발급 신청시까지 희망e카드를 계속 사용하실 수 있으며,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도 기존 카드로 금번에 대상자로 결정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은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전화하여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 \* BC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롯데카드, 삼성카드
- 다만, 카드를 통한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원 대표번호 1566-3232(단축 4번)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 본인부담금 납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별로 지정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매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사회보장정보원 지정 계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기타 사회서비스 : 제공기관 지정 계좌
-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에서만 산정되고, 특별지원급여에서는 면제됩니다. 또한, 긴급활동지원 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차상위계층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4% 미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 됩니다.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나 방과후활동 서비스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 4. 서비스 개시 및 이용

사회서비스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수령 후 지정된 계좌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다음달 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이용 시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 부담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 수급자가 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바우처 포인트는 영아 기준으로 생성되며, 포인트가 지급된 날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구매처에서 지원대상 품목(기저귀 또는 기저귀와 조제분유(조제이유식 포함))을 국민행복카드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구매처에서는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지원대상 품목 뿐만 아니라 구매처에서 판매 중인 모든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품목 외의 구매품목에 대한 비용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또한, 지원품목의 구매금액이 지급된 바우처 포인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 ※ 바우처 포인트 잔여현황 및 구매처는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또는 “국민행복카드 해당 카드사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의 바우처 포인트는 여성청소년 기준으로 생성되며, 포인트가 지급된 날부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구매처에서 지원대상 품목(생리대)을 국민행복카드(신청서 상의 신청인, 청소년 본인 명의 국민행복카드)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의 구매처에서는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지원대상 품목 뿐만 아니라 구매처에서 판매 중인 모든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품목 외의 구매품목에 대한 비용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또한, 지원품목의 구매금액이 지급된 바우처 포인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 바우처 포인트 잔여현황 및 구매처는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또는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 지원제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1인당 연간 2개 서비스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6. 이용자 준수사항

- 사회서비스 이용권은 반드시 이용자 본인이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제공인력 또는 제3자가 소지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서비스 이용도중 신청자격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거나 부당하게 지급받는 서비스 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위법·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법에 의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연속하여 2개월 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자격이 시·군·구청장 직권으로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 신고내용, 행정기관 확인조사 결과,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공계획 변경 등에 따라 이용자 자격 또는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권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교정시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된 경우 및 「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 중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에 따라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제공이 중단되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기에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로 선정 된 경우와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검사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가 중단됩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 차상위계층 등 보유자격의 상실, 영아의 사망, 연락처 변경 등 인적 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보건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 내용에 따라 지원금액 또는 부가서비스 수혜 여부 등에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통해 구매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는 동 가정의 영아양육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 청소년의 사망, 수급자 자격 변동 등 지원자격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읍면동주민센터로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내용에 따라 바우처 포인트 사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을 통해 구매한 생리대 등 보건위생물품을,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구매 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함께 구매할 경우 각각 나누어 별도 결제하여야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발달재활서비스는 연속하여 6개월 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연속하여 3개월 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청장 직권으로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단,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제외)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지출한 생활비용 지출내용을 항목별로 아래와 같이 기재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기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항목	금액(원)
합계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기타	

3. 제출된 지출서류를 심사한 후 60만원을 한도로 귀하께서 신청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4.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형사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서비스유형	지원유형	보장기간/지원시간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2.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며 서비스 이용 신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go.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실시기간 중 서비스 신청자격과 관련한 변동사유 발생 시 즉시 시·군·구(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또는 제공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유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은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 초과, 여성가족부 및 시도·시군구가 규정한 '서비스 이용 준수사항' 위반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귀하는 **타법 의료급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보장유형	급여개시일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2. 의료급여대상자로 선정되신 분께는 의료급여증이 발급되며,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때에는 의료급여증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우선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진료 후 필요한 경우에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상급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노숙인 등은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
4.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는 다음 각 질환별 연간 365일이며, 불가피하게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10개 만성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및 10개 만성고시질환에 해당하지 않은 기타 질환을 모두 합하여 연간 365일
5. 의료급여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되며, 빌려준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6.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및 근로능력이 변동이 있는 경우 의료급여의 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급권자에게 급여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료급여가 중지 됩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관계	차상위 계층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생년월일

2. 귀하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사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가능 사업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나 읍·면·동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거주지역, 세대구성,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에도 자격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1. 귀하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급 예정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급여액 및 지급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지급금액	금융기관	계좌번호	급여개시일

3.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0일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가능하며 각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보호종료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 시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4.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 아동은 수급권 상실·정지·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상실 :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 난민인정 취소 등
  - 정지 : 교정시설 입소, 행방불명,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거주 불명 등록된 경우 등  
※ 국외체류 90일 이상 지급 정지 예외 사유 : 인턴, 해외유학 등 자립에 기여하는 경우  
(단, 공적자료로 증빙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
  - 변경 : 거주지 변경, 지급계좌 변경 등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수당은 환수됩니다.
6.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권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입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입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비 고

※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1) **기초생활보장**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을 말함)에게, 시·도지사 또는 시·도교육감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
  - 2)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3) **장애인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4) **기초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 5) **이동수당**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6)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의 경우 20일 이내,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의 경우 20일 이내)
  - 7) **차상위계층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
  - 8)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의해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수급기간 중 인적사항 및 소득·재산 변동, 지급정지 사유의 소멸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시·군·구(읍·면·동)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직급 성명

문의 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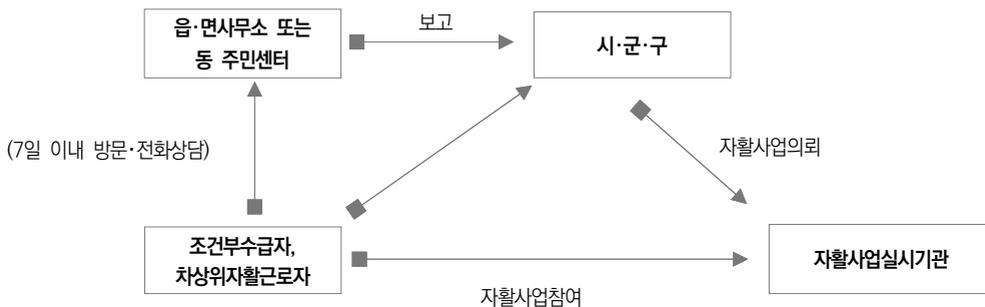
###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결정

조건부수급자	대상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구분
					[ ] 조건부수급자 [ ] 조건부과유예자
					[ ] 조건부수급자 [ ] 조건부과유예자
					[ ] 조건부수급자 [ ] 조건부과유예자
	특이사항	[ ] 가구원 일부보장( ) [ ] 조건부수급자( ) [ ] 기타( )			
	보장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가구원은 근로능력가구여건취업상태 등이 기준에 해당하여 <b>조건부수급자로 결정</b>되었음을 통보합니다.</li> <li>※ 조건부수급자는 일할 수 있는 수급자 중 자활노력을 조건으로 선정된 수급자임</li> <li>○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가구원은 결정된 날부터 7일 이내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시·군·구(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복지담당공무원과 상담하여야 합니다.(전화상담도 가능)</li> <li>○ <b>상담에 응하지 않거나 자활사업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생계비를 지급받지 못하게</b> 되므로, 불가피한 사유(건강문제 등)가 있는 경우 시·군·구(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반드시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li> </ul>			

#### 유의사항

1. 조건부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근거하여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받는 수급자를 말합니다.
  2.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에 응하지 않거나 자활사업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생계급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본인의 생계비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법 제30조제2항)
- ※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한 경우 생계비가 다시 지급됩니다.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산정결과

신청인/ 세대주	성 명			
	주 소			
	보장가구원수	명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산정결과		결정사항
생계급여	원	○ 소득인정액 (가=나+다)	원	
		- 소득평가액 <sup>1)</sup> (나)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sup>2)</sup> (다)	원	
의료급여	원	○ 소득인정액 (가=나+다)	원	
		- 소득평가액 (나)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다)	원	
주거급여	원	○ 소득인정액 (가=나+다)	원	
		- 소득평가액 (나)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다)	원	
교육급여	원	○ 소득인정액 (가=나+다)	원	
		- 소득평가액 (나)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다)	원	

- 1) 소득평가액 :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한 금액을 말하며, 소득평가액 산정방식은 세부 항목에 따라 급여별로 차이
-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을 말한다)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율(주거용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함
  - 자동차는 기본재산액, 부채 공제 적용하지 않으며, 주거용재산 한도액 및 기본재산액을 급여별·지역별 차이 있음

### 【참고】○○○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내역

#### 〈소득 금액〉

(단위: 원)

근로·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이전소득 등	부양비*
			생계급여: 의료급여:

\* (부양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결과(미약구간)에 따라 수급(권)자 가구에 부과되는 소득

#### 〈재산 가액〉

(단위: 원)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산정결과

신청인/ 세대주	성 명			
	주 소			
	보장가구원수	명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산정결과		결정사항
생계급여	원	○ 소득인정액 (가=나+다)	원	
		- 소득평가액 <sup>1)</sup> (나)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sup>2)</sup> (다)	원	
의료급여	원	○ 소득인정액 (가=나+다)	원	
		- 소득평가액 (나)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다)	원	
주거급여	원	○ 소득인정액 (가=나+다)	원	
		- 소득평가액 (나)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다)	원	
교육급여	원	○ 소득인정액 (가=나+다)	원	
		- 소득평가액 (나)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다)	원	

- 1) 소득평가액 :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한 금액을 말하며, 소득평가액 산정방식은 세부 항목에 따라 급여별로 차이
-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을 말한다)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율(주거용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함
  - 자동차는 기본재산액, 부채 공제 적용하지 않으며, 주거용재산 한도액 및 기본재산액을 급여별·지역별 차이 있음

### 【참고】○○○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내역

#### 〈소득 금액〉

(단위: 원)

근로·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이전소득 등	부양비*
			생계급여: 의료급여:

\* (부양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결과(미약구간)에 따라 수급(권)자 가구에 부과되는 소득

#### 〈재산 가액〉

(단위: 원)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서식 8호]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

###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 (○차)

수급자 (보호대상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거주지(소재지)			
비용(부당이득) 납부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수급자·보호 대상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양의무자 [ ] 기타( )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제공내용				
환수(반환) 사유				
환수결정액		원	납부장소	
기 납부액		원		
납부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까지	산출내역	별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6조 및 제47조, 「아동복지법」제61조, 「장애인복지법」제51조, 「기초연금법」제19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 및 제26조, 영유아보육법 제40조2, 「의료급여법」제23조, 「주거급여법」제20조, 「아동수당법」제16조,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10에 따라 에 따라 보호대상자 또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비용을 반환 및 환수하고자 하오니,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직인

#### 안내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장애인활동지원 및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경우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른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다른 급여는 민사집행 절차에 따라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을 말함)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음
  -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유아학비: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기초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 또는 중질지(80g/m)]

[서식 9호]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 )			
처분내용		[ ] 선정 [ ] 보장변경/중지/정지/상실 [ ] 환수 [ ] 기타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년	월	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년	월	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7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8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28조, 「긴급복지 지원법」제16조, 「기초연금법」제22조, 「장애인복지법」제84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6조, 「의료급여법」제30조제1항, 「장애인 연금법」제18조, 「장애인동 복지지원법」제38조, 「아동수당법」제19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구비서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초연금관련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 안내사항

1.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교육급여의 경우 시·도교육감)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에게 송부합니다.  
다만, ① 기초연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③ 한부모가족지원 및 장애인복지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④ 장애인연금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⑤ 장애인활동지원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⑥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동양육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⑦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방과후활동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⑧ 영유아보육지원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⑨ 아동수당지원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이내, ⑩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관련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결정통지 처리합니다.
2.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3.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받은 보장기관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12호] 수급자 증명서 발급신청서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 증명서 발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세대주 성명(시실명)	세대주와의 관계		
	수급자 구분	<input type="checkbox"/>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의료급여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주거급여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교육급여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보장시설 수급자		
제출용도	용도			
	제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호에 따라 수급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급자와의 관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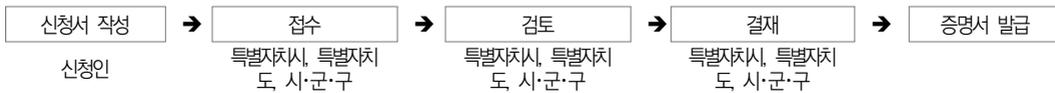
첨부서류	수급자 증명서 발급 신청을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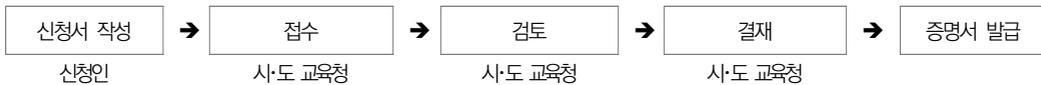
신청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2호에 따라 수급자의 친권자, 후견인 등 수급자로부터 수급자 증명서 발급 신청을 위임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 처리 절차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보장시설 수급자〉



〈교육급여 단독 수급자〉



210mm×297mm[백상지 80g/m]

[서식13호] 수급자 증명서

제 호

## 수급자 증명서

1. 성명: (생년월일: )

2. 세대주 성명(시설명): (세대주와의 관계: )

3. 주소(소재지):

4. 수급자 구분: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5. 제출용도:

(용 도)

(제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직인





[서식23호] 지출실태조사표

<b>&lt; 지출 실태 조사 표 &gt;</b>					
I. 가구특성					
<input type="checkbox"/> 맞벌이 여부 ( Y / N ) <input type="checkbox"/> 자영업자 여부 ( Y / N ) <input type="checkbox"/> 주택소유 여부 ( Y / N ) - 면적 (            )㎡					
II. 지출내역 (한달 단위의 항목별 지출사항)					
지출항목		지출금액(원)	지출항목		지출금액(원)
식비	1. 식료품비		교통통신비	12. 교통비	
	2. 외식비(배달포함) 등			13. 자동차유지비	
주거비	3. 월세			14. 전화요금(휴대전화포함)	
	4. 관리비(수도·전기·전가·가스·난방포함) 등			15. TV·인터넷이용료 등	
피복비	5. 의복, 신발 등		기타	16. 담배, 술값	
의료비	6. 입원, 진료비			17. 각종보험료(사회보험료포함)	
	7. 의약품비			18. 채무상환비	
	8. 간병비 등			19. 기타 생활용품 등	
교육비	9. 보육관련비용 (어린이집·유치원 등)				
	10. 학교납입금				
	11. 기타(학원, 학습지 등)				
합 계			(            ) 원		
III. 가구 총소득 (            ) 원					
IV. 추가 지원내역(소득이 지출에 비해 부족할 경우 보충 방법)					
구분	관계 및 단체명	월평균 지원금(원)	비고		
부모·자녀					
형제·친지					
단체·기관					
대출·카드					
기 타					
합계(물품은 금액으로 환산하여 기재)			(            ) 원		
작성일 : 20    년    월    일 작성자 : (주 소) (연락처) (성 명)					
					(인)



[서식41호]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변동 사전 안내문

<b>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변동 사전 안내문</b>		
대 상 자 (가구주)	성 명	
	주 소	
보장별 예상 변동내역	현재 지원받고 있는 보장	예상 변동내용
		<input type="checkbox"/> 급여증가 <input type="checkbox"/> 급여감소 <input type="checkbox"/> 해지 <input type="checkbox"/> 자격중지(급여중지)
		<input type="checkbox"/> 급여증가 <input type="checkbox"/> 급여감소 <input type="checkbox"/> 해지 <input type="checkbox"/> 자격중지(급여중지)
		<input type="checkbox"/> 급여증가 <input type="checkbox"/> 급여감소 <input type="checkbox"/> 해지 <input type="checkbox"/> 자격중지(급여중지)
<p>우리 시·군·구에서는 복지 수급 자격이 있는 대상자가 적절한 급여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 법률에 따라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확인하였습니다.</p> <p>이번 달 귀하의 가구의 최근 소득 및 재산 정보를 확인한 결과, 위와 같이 자격 또는 급여 변동이 예상되어 본 사전 안내문을 보내드리니</p> <p>귀하께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시는 경우 그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자료를 아래 문의처(소명처)에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아래 소명기간 안에 별도 연락이 없을 경우 조사 결과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p> <p style="margin-left: 20px;">- 소명기간:           년    월    일 까지</p> <p style="margin-left: 20px;">- 소명방법: 소명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서면 제출</p> <p style="margin-left: 20px;">- 문의처(소명처):</p> <p style="margin-left: 20px;">- 추가 안내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lef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left: 100px;"><b>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b></p>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10px; display: inline-block;">직인</div> </div>		
유 의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명기간 동안 확인조사 내용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경우에는 본 사전안내문을 통해 안내받은 대로 급여자격이 중지되거나 급여액이 변동됩니다.</li> <li>○ 시·군·구의 안내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하려는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와의 가족관계 변동사항에 대한 소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명할 수 있습니다.</li> <li>○ 생활수준이 현재보다 어려워져 자격기준에 다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li> </ul>	

제7편

[서식42호] 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자 구비서류 목록

<b>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자 구비서류 목록</b>			
수급(권)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 업무담당자는 공적자료로 조치가 가능한 서류를 수급(권)자에게 요청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수급(권)자가 서류 구비의 어려움으로 신청을 포기하지 않도록 상담을 통하여 필요 서류를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구비 필요서류 목록  ※ 제출 필요 서류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기 하여 전달	수급자 구비 서류	필수 서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서식3호) <input type="checkbox"/> 기타 ( )
		필요자 제출 서류	<input type="checkbox"/>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 사본 <input type="checkbox"/>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추가: <input type="checkbox"/> 제적등본) <input type="checkbox"/> 실종 등의 신고접수서 <input type="checkbox"/>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input type="checkbox"/> 재학증명서·병적증명서(전역예정증명서)·수용증명서 <input type="checkbox"/> 근로능력 증명서류 :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의료비 지출영수증 등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input type="checkbox"/> 소득 증명서류 : 고용주발급 고용임금확인서·월급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퇴직증명서, 연말정산서류,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24호) (기타 소득증빙서류 : ) <input type="checkbox"/> 재산 증명서류 : 세금납부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input type="checkbox"/>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서식21호) <input type="checkbox"/>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input type="checkbox"/> 부채 증명서류 : 법원판결문, 법원의 화해·조정조서, 부채증명원 <input type="checkbox"/> 지출실태조사표(서식23호) <input type="checkbox"/>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 소명서 <input type="checkbox"/> 기타 ( )
	부양 의무자 구비 서류	필수 서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료급여만 해당)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서식3호) <input type="checkbox"/> 기타 ( )
		필요자 제출 서류	<input type="checkbox"/>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임대차계약서 <input type="checkbox"/> 부채 증명서류 : 법원판결문, 법원의 화해·조정조서, 채무변제증빙서류 <input type="checkbox"/> 의료비 지출영수증 <input type="checkbox"/> 대학생 학비납입 영수증 <input type="checkbox"/> 부양기피사유서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제출요청일 및 제출기관	<input type="radio"/> 제출 요청일 : 20 . . 일 까지 <input type="radio"/> 제 출 기 관 :		
업무담당자 및 문의처	( ) 시·군·구 ( )과 / 읍·면·동 담당 ○○○ (연락처 : 000-0000)		
(주의사항) 1. 상기 수급(권)자는 구비 필요서류 목록에 표기된 본인 및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를 상기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요청일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사가 지연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없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 내지 제23조제3항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보장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취업·창업, 재산의 매각·구입, 전입·전출, 가구원수의 변동 등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기 제출한 서류라 할지라도 시군구·읍면동에서는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식43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관리자 지정서

##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관리자 지정서

1. 성 명:
2. 생년월일:
3. 주 소:
4. 지정기간: 20 년 월 일부터 3년

위 사람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수급자 \_\_\_\_\_ (생년월일)의 급여관리자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참고]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관리자 급여관리실태 점검 결과(보고양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관리실태 점검 결과**

□ 수급자 현황

의사무능력(미약)자인 수급자 수(A+B)							
___명	급여관리자 지정된 의사무능력자(A)				급여관리자 미지정된 의사무능력자(B)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   |  |
|---|--|
| ① : 일반수급자<br>② : 보장시설 외 시설입소자<br>③ : 무연고 장기입원자<br>④ : 위탁가정 보호 수급자 | ⑤ : 후견인이 지정된 수급자<br>⑥ : 급여관리 능력을 보유한 수급자<br>⑦ : 급여관리 능력이 없으나 본인이 급여를 관리하길 희망하는 수급자 |
|---|--|

□ 급여관리자 지정 대상 현황

(1) 급여관리자 지정 대상 세부 현황: \_\_\_명

급여관리자 유형			수급자 수	비 고
수급자와의 관계		점검주기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친족	직계존속	연 1회		
	직계비속			
	형제·자매			
	3촌 이내 친족			
수급자와 주거를 달리하는 친족	직계존속	반기		
	직계비속			
	형제·자매			
	기타 친족			
위탁가정	위탁부모	반기		
지역사회 등	병원·시설 관계자	반기		
	이웃			
	기타			
총 계				

(2) 급여관리자의 급여관리실태 점검 결과

건		전체 점검 건수	
		적정 건	부적정 건
급여관리자 유형별 부적정 적발 건수			
수급자와의 관계		적발 건수	비 고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친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3촌 이내 친족		
수급자와 주거를 달리하는 친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기타 친족		
위탁가정	위탁부모		
지역사회 등	병원·시설 관계자		
	이웃		
	기타		
부적정 급여관리에 대한 조치 건수			
주의(구두조치)		시 정	고 발
_____건		_____건	_____건
주요 부적정 급여관리 사례			

**급여관리자 미지정 대상 현황**

⑦\*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급여관리실태 점검 결과

\* 급여관리 능력이 없으나 본인이 급여를 관리하길 희망하는 수급자

_____건	전체 점검 건수	
	적정	부적정
	_____건	_____건
주요 부적정 급여관리 사례		



(별도 서식 2호)

<b>교육급여 계좌 (변경) 신청서</b>				
신청인	성명	학생과의 관계	연락처	
대상학생	성명	생년월일	학년	반
예금주	성명	학생과의 관계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 동의 <input type="checkbox"/> 거부 <input type="checkbox"/>				
본교 및 교육청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교육 급여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동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함에 동의합니다. - 목적: 교육급여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및 이용 동의일로부터 본교 재학 기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 행사 시 급여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b>안내사항</b>				
1.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 급여를 받으실 통장 사본 1부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인과 예금주는 대상학생을 포함하여 학생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 (부모, 형제, 자매, 같이 사는 조부모 등)만 가능합니다. 3. 급여계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여 계좌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급여는 본교에 등록된 학생의 스쿨뱅킹 계좌나 CMS 계좌로 입금됩니다. 4. 매달 15일 이후에 급여 계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번 급여부터 신청한 계좌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00 학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제활용품))

(별도 서식 3호)

## 의사자 자녀 및 의상자와 그 자녀의 교육급여 신청서

교육급여 대상 학생 명 <sup>(1)</sup>		학생의 생년월일	
재학 학교 명		학년 / 반	/
신청자 명 <sup>(2)</sup>		학생과의 관계	연락처
신청인 주소			
입금 계좌	예금주	은행 명	계좌번호
<p>「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                   (서명)</p> <p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p>			

### 〈안내사항〉

- (1) 교육급여를 지원 받을 학생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라 의사자의 자녀 및 의상자와 그 자녀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여야 합니다.
- (2) 교육급여 신청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 의상자의 가족이 가능합니다.
- (3) 작성하신 신청서는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를 관할하는 시·도교육청에 전달되어 시·도교육청에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 제8편 |

# 부 록



# I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안내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 감면제도

지원내용	비 고
<p>■ <b>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li> <li>• (관련근거) 「지방세법」 제75조제1항제1조</li> </ul>	<p>시·군·구에서 일괄 면제</p>
<p>■ <b>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li> <li>• (관련근거)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li> </ul>	<p>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p>
<p>■ <b>전기요금 할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여름철 : 7,8,9월 청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2만원)</li> <li>-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12천원)</li> </ul> </li> <li>• (관련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li> </ul>	<p>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p>
<p>■ <b>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li> <li>- 가구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 : 주민등록기준 만 65세 이상 해당</li> <li>*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만 7세 미만 영유아 해당</li> <li>*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li> <li>*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li> <li>*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기준</li> <li>*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li> <li>* (추가) 세대원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2에 따른 수급자로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 포함</li> </ul> </li> </ul> </li> <li>• (지원제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장시설 수급자</li> <li>-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li> </ul> </li> <li>-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1년 10월~) 지원받은 수급자</li> <li>- 한국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 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가구)</li> <li>-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1년 연탄 쿠폰을 발급받은 자(가구)</li> </ul> </li> <li>• (관련근거) 「에너지법」 제16조의3</li> <li>•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 <a href="http://www.energyv.or.kr">www.energyv.or.kr</a></li> </ul>	<p>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p>
<p>■ <b>도시가스요금 감면</b></p>	<p>읍·면사무소 또는</p>

지원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li> <li>-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li> <li>-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근로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li> <li>-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li> <li>-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li> <li>-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위탁 아동 포함 다자녀 가구)</li> </ul> </li> </ul>	<p>동주민센터 / 지역 도시가스회사</p>
<p>■ 문화누리카드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li> <li>-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부기급 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li> </ul> </li> <li>• (지원내용) 1인당 연간 10만원 지원</li> <li>•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 www.mnuri.kr</li> </ul>	<p>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p>
<p>■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li> <li>•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li> </ul>	<p>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p>
<p>■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li> <li>* 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li> <li>•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 www.kotsa.or.kr</li> </ul>	<p>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p>
<p>■ 기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p>	<p>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p>

##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 가)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득이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서민지원 정책

- (시행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 나) 감면대상

구분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li> </ul>
차상위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수급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감면대상 가구원 수</li> <li>•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li> <li>-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li> <li>-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li> <li>- 「한부모가족지원법」 제6조에 따른 보장대상자.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사람 포함</li> <li>- 「장애인연금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li> <li>-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차상위계층으로 등재된 사람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동전화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li> <li>※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li> </ul> </li> </ul> </li> </ul>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li> </ul>
국가유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 :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부상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자유상이자(81), 5.18민주화운동 부상자(85)</li> </ul>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li> <li>•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li> <li>•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li> <li>•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li> </ul>
기초연금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li> </ul>

※ 국가유공자와 단체의 경우 통신사 별로 법적 대상보다 확대 지원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통신사 문의

## 다) 감면내용

구분	장애인·국가유공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 통화 75도수(225분) 면제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월33,000원 사용액 까지만 감면을 적용)	시외통화 75도수(225분) 면제		
114 안내료	• 전액감면 (직접연결서비스 요금 제외)			
이동전화	• 기본료 : 35%할인 • 데이터 : 35%할인 • 국내음성 : 35%할인	• 기본료 또는 월정액 (26,000원 한도) 면제 • 음성통화료, 데이터통 화료 각각 50% 감면 단, 통화료는 기본료 또 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음 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사용액 합하여 4,000원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	• 기본료 또는 월정액 (11,000원 한도) 면제 • 11,000원을 초과하는 기 본료 또는 월정액, 음 성통화료, 데이터 통 화료 각각 35% 감면 (최대 감면액 30,000원)	• 기본료, 데이터, 국내 음성 : 50% 감면 단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 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를 합쳐 청구한 이용료 22,000원을 한 도로 상기 감면 을 적용
인터넷 가입자 접속 서비스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휴대 인터넷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복지 감면회선	개인당 1회선	개인당 1회선	가구당 총 4회선 (개인당 1회선) 만6세이하의 아동은 제외	

## 라) 신청방법

○ 개인 :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

구분	신청장소	신청방법	구비서류
개인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24 www.gov.kr 가입</li> <li>서비스명 :이동통신요금할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인인증서</li> <li>회원가입 필수</li> </ul>
	주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문신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 작성)</li> <li>개인정보제공 및 조회동의서</li> </ul>
	각 통신사 대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문신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 작성)</li> <li>개인정보제공 및 조회동의서</li> <li>복지자격증명 관련 서류 (ex 수급자증명서, 복지카드 등)</li> </ul>

- ※ 요금감면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서류 요구 가능
- ※ 신청자 또는 재신청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을 통한 자격 확인 시행 결과에 따라 자격 유지할 경우에는 혜택이 자동 연장되고,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중단
- ※ 차상위계층(차상위분인부담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 보장대상자, 장애수당 수급자, 우선돌봄 차상위 등)로 인해 가구원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요금감면 신청시 감면 대상자와 가구원(이동전화 명의자)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고지 필요

○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구분	신청장소	신청방법	구비서류
단체 및 시설	각 통신사 대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문신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영자 신분증</li> <li>사회복지법인 인·허가증 사본</li> </ul>

- ※ 요금감면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신사별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복지 시설/단체, 특수학교 이외의 사회복지법인인 감면대상이 아님 (예 : 노인복지시설 등은 감면대상이 아님)
- ※ 법인설립허가증 있는 시설 및 단체의 경우 2회선이 감면대상

## II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안내

구 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용자
신청연령		만35세 이하	만55세 이하	제한없음
지원 대상	가능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생 (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으로 대한민국 국민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생 및 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 으로 대한민국 국민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생 (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으로 대한민국 국민
	제외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성적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li> <li>- 단, 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저이수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따름</li> <li>-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li> </ul>		
		지원대상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 이수학점
		졸업학년 학생, 대학원생	70/100점(C학점)이상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군, 장애인	기준 적용 제외	기준 적용 제외
소득구간 (분위)		학자금지원 1~8구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대학생은 소득구간 무관	학자금 지원구간 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자금 지원구간 무관</li> <li>-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 자녀 또는 학생 본인</li> <li>- 기초생활수급자, 차 상위계층, 장애인, 다 문화, 다자녀(3인 이상)</li> <li>•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부모 자녀</li> </ul>
지역거주요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 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 는 학부모의 자녀</li> <li>•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 하는 학생 본인</li> </ul>

구 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용자
생활비 대출	대출가능금액	학기당 150만원 한도, 최소 10만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용자 불가</li> <li>• 취업후상환/일반상환 이용 가능</li> </ul>
등록금 대출 규모	대출한도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대학 : 4천만원</li> <li>•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 6천만원</li> <li>• 의·치의·한의계열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li> </ul>	등록금전액 (입학금, 수업료 등)
	최소대출금액	등록금 : 10만원 이상(입학금, 수업료 등)		
상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자별적 상환)</li> <li>•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을 초과하거나 상속 및 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을 통한 상환(의무적 상환)</li> </ul>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중 본인 선택	원금균등분할
생활비대출 이차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4구간이하인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 무이자(단, 생활비대출 지원 시점에 과거 학기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의무상환 개시 이력을 보유한 자는 이차 지원 없음)		이차지원 없음
대출금지급		승인된 대출제도 중 선택하여 대출금을 지급 신청하면 대학의 계좌로 입금. 다만, 생활비는 본인계좌로 입금		

□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 1599-2000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www.kosaf.go.kr](http://www.kosaf.go.kr)

## Ⅲ

## 압류방지 전용통장

## 1.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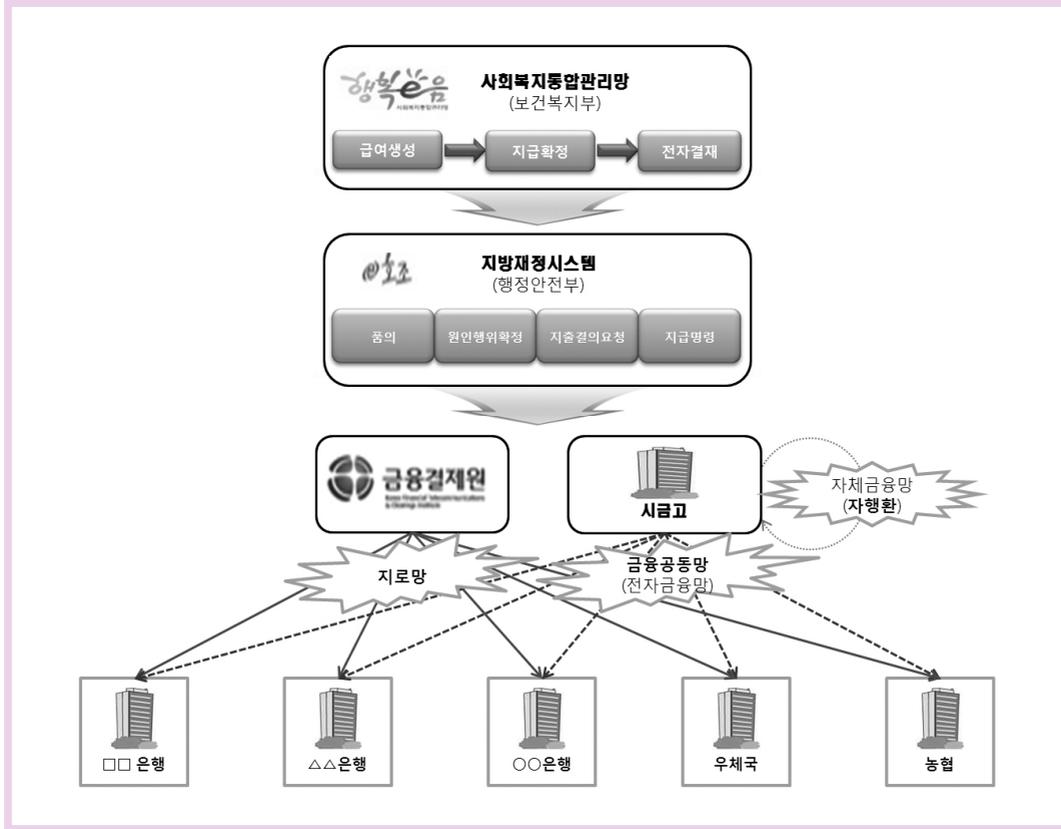
- 금융기관은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신규 상품으로 개발
- 보장기관(국가·시도·시·군·구)이 위 전용통장에 기초생활보장 급여내역을 송부할 때 일정한 코드 값을 부여하여 전송
- 금융기관은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동 코드값이 있는 경우에만 압류방지 계좌에 입금을 허용하고, 코드값이 없으면 입금을 차단
  - 아울러, 동 전용통장에 대해서는 압류조치가 되지 않도록 관리

## 2. 급여지급 흐름에 따른 관계기관의 역할

## 가. 급여지급 흐름도

- 보장기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입금을 의뢰하면 행정자치부의 「지방 재정관리시스템 (혹은 e-호조 시스템)」을 경유하여 이후 크게 세가지 흐름을 통해 최종적으로 수급(권)자 계좌에 입금
  - 첫째, 금융결제원의 지로망을 통해 각 금융기관으로 전송되는 흐름
  - 둘째, 시금고 은행을 거쳐 전자금융망을 통해 각 금융기관으로 전송되는 흐름
  - 셋째, 시금고 은행에서 자체 전산망(일명 자행환)을 통해 자기 해당은행의 계좌로 입금되는 흐름

### | 복지급여 지급의 흐름도 |



#### 나. 각 관련기관의 역할

-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압류금지 구분 필드(2자리) 추가 및 전송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시스템에 압류금지 구분 필드 추가 및 전송
- (금융결제원) 지로망과 전자금융망에 압류금지 구분 필드 추가 및 전송
- (시금고은행) 지방재정시스템과 전자금융망 압류금지 구분 필드 추가
- (모든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프로그램 추가 개발사항(지로망과 전자금융망)과 동일하게 프로그램 개발
- (압류방지 참여 금융기관) 압류방지 프로그램 개발 및 상품개발

## | 상품내용(案) |

구분	내용
상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복 지킴이 통장』</li> <li>※ 각 은행별로 상품명은 ‘우리’ 행복지킴이통장, ‘국민’ 행복지킴이통장으로 ‘은행명’+‘행복지킴이통장’ 식으로 표시됩니다.</li> </ul>
통장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장 첫 페이지의 “압류방지전용통장” 문구로 확인</li> <li>※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확인은 통장의 첫 페이지 (인감이 날인된 면)에 “압류방지전용통장”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li> </ul>
가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생활수급자</li> <li>※ 은행은 통장을 개설할 때, <b>예금주(수급자)가 ‘기초수급자 증명서’ 제출한 경우에만 개설해 드립니다.</b></li> </ul>
상품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통장은 법원의 압류결정통지에 대하여 <b>원천적으로 압류가 방지됨</b></li> <li>※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압류명령이 은행에 도달한 경우, ‘행복지킴이통장’을 제외한 나머지 예금에만 은행은 압류등록합니다.</li> </ul>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압류금지)</li> </ul>
상품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금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급비만 가능</li> <li>※ <b>은행이나 개인이 입금하는 것은 제한됩니다.</b> 따라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수급자의 성명이나 계좌번호를 오입력한 경우, 은행에서 오입력사항에 대해 회신해 드리며 이러한 경우 수정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현재는 일부 시금고에서 공문접수후 처리중이나, 향후 제한됨) - 지급 : 제한없음</li> </ul>
거래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권의 제한이나 변동이 발생하는 일체행위 제한</li> <li>※ (가)압류, 질권, 담보제공, 상계, 지급정지 불가</li> <li>※ 타인으로서의 양도, 타인에게서 양수하는 행위 불가</li> </ul>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복 지킴이 통장’을 카드결제용, 대출금납입용으로 사용하여 취소나 연체발생시 은행에 직접 내점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li> <li>※ 압류방지를 위해 ‘복지부’의 입금만 허용하기 때문에, ‘카드결제후 취소시 카드사의 환급금’이나 ‘연체발생시 연체납부금’도 입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카드사에 연락하여 별도로 환급받거나, 대출연체금 납부를 위해 영업점을 내점하는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결제계좌를 별도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li> <li>•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급비만 입금가능하므로, 카드결제 사용은 자제하도록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ul>

### 3. 압류방지 전용통장 계좌 변경 주의사항

#### 가. 기초생활수급자만 전용통장 개설 가능

-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는 금융 상품으로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급받는 급여만 입금되며 그 이외의 금원은 입금될 수 없음
    - ※ 본인이라도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별도 금액을 입금할 수 없음에 주의
    - ※ 기초연금, 장애급여 등을 받는 수급자도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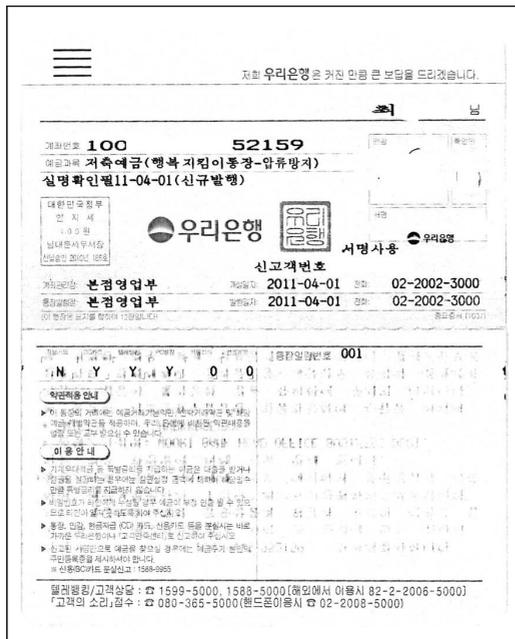
#### 나. 계좌변경 주의사항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수급자의 급여압류에 따른 생활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1인1계좌 원칙의 예외로 운영
  - 수급자가 기초연금, 장애인, 한부모가정 관련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급여 신청 가능(계속 확대 추진중)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압류방지계좌 등록관리에만 등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상담·신청/ 계좌관리/ 계좌정보등록관리/ 압류방지계좌 등록 관리에 입력
  -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방지계좌로 등록할 수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 외의 다른 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압류방지 전용 통장이 발급되지 않으므로 압류방지계좌 등록관리에 등록하지 않음에 주의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시스템상 일정한 코드번호가 부여되어 금융전자망을 통하여 수급자 계좌에 입금되므로
  - 압류방지계좌를 일반계좌로 입력하거나 일반계좌를 압류방지계좌로 입력하면 입금오류 사태가 발생하게 되니 계좌등록에 각별한 주의 요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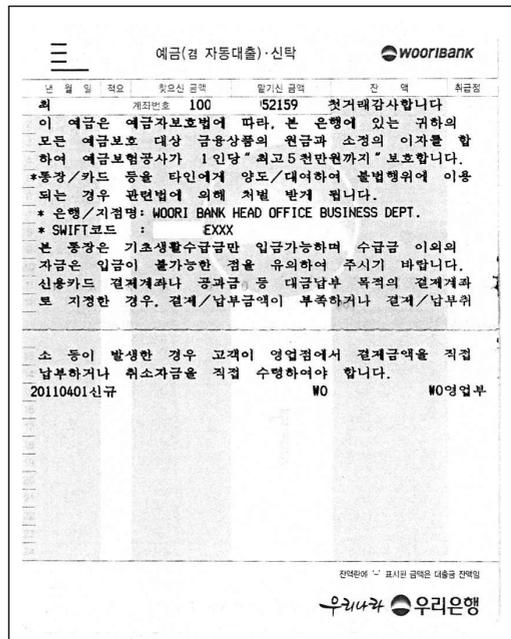
## 다. 입금오류 발생시 처리방법

- 은행 이체 이후 입금불능 처리된 경우(일반계좌오류처리와 동일)
  - (오류내역 확인) 압류방지계좌인데 압류방지 여부가 “No” 되어 있거나 일반 계좌인데 압류방지 여부가 “Yes” 되어 있는 경우 및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성명 등 오류확인
  - (반납처리) 오류대상자를 e-호조(지방재정시스템)에서 반납처리
  - (오류현황조회) 반납처리된 대상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방재정연계 처리 현황” 메뉴, 오류현황 화면에서 조회
  - (계좌 변경 후 재지급) 오류현황에서 조회된 대상자를 확인하고 계좌정보만 변경처리 하여 재지급
  - ※ 유의 : 오류현황에서 변경한 계좌정보는 1회성임
  - (계좌정보변경) 지급이후 오류발생대상자의 “복지급여계좌신규·변경신청” 화면에서 계좌정보 정정처리

| 행복지킴이 통장 - 표지(예) |



| 행복지킴이 통장 - 내지(예) |



제8편

## IV 연도별 최저생계비 및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연도 (인상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00	최저생계비	324,011	536,614	738,076	928,398	1,055,588	1,191,134
	현금급여	261,000	433,000	585,000	729,000	816,000	913,000
2001 (3.0%)	최저생계비	333,731	552,712	760,218	956,250	1,087,256	1,226,868
	현금급여	286,207	481,662	666,874	841,845	958,776	1,083,389
2002 (3.5%)	최저생계비	345,412	572,058	786,827	989,719	1,125,311	1,269,809
	현금급여	304,100	503,639	692,722	871,348	990,723	1,117,939
2003 (3.0%)	최저생계비	355,774	589,219	810,431	1,019,411	1,159,070	1,307,904
	현금급여	313,224	518,749	713,504	897,489	1,020,445	1,151,478
2004 (3.5%)	최저생계비	368,226	609,842	838,797	1,055,090	1,199,637	1,353,680
	현금급여	324,186	536,905	738,476	928,901	1,056,160	1,191,780
2005 (7.7%)	최저생계비	401,466	668,504	907,929	1,136,332	1,302,918	1,477,800
	현금급여	343,498	571,978	776,833	972,256	1,114,789	1,264,419
2006 (3.0%)	최저생계비	418,309	700,489	939,314	1,170,422	1,353,242	1,542,382
	현금급여	357,909	599,653	804,143	1,001,424	1,157,846	1,319,677
2007 (3.0%)	최저생계비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현금급여	372,978	628,370	832,394	1,031,467	1,202,484	1,377,214
2008 (5.0%)	최저생계비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
	현금급여	387,611	656,544	859,357	1,059,626	1,245,484	1,433,250
2009 (4.8%)	최저생계비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현금급여	405,881	694,607	900,048	1,105,488	1,310,928	1,516,369
2010 (2.75%)	최저생계비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현금급여	422,180	718,846	929,936	1,141,026	1,352,116	1,563,206
2011 (5.6%)	최저생계비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현금급여	436,044	742,453	960,475	1,178,496	1,396,518	1,614,540
2012 (3.9%)	최저생계비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현금급여	453,049	771,408	997,932	1,224,457	1,450,982	1,677,507
2013 (3.4%)	최저생계비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현금급여	468,453	797,636	1,031,862	1,266,089	1,500,315	1,734,541
2014 (5.5%)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현금급여	488,063	831,026	1,075,058	1,319,089	1,563,120	1,807,152

연도 (인상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15 (2.3%)	최저생계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현금급여	499,288	850,140	1,099,784	1,349,428	1,599,072	1,848,716
2015 (하반기)	기준중위소득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생계급여	437,454	744,855	963,582	1,182,309	1,401,037	1,619,764
	의료급여	624,935	1,064,078	1,376,546	1,689,013	2,001,481	2,313,948
	주거급여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2,487,494
	교육급여	781,169	1,330,098	1,720,682	2,111,267	2,501,851	2,892,435
2016	기준중위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생계급여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의료급여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주거급여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교육급여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2017	기준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생계급여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의료급여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주거급여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교육급여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2018	기준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생계급여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의료급여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주거급여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교육급여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2019	기준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생계급여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의료급여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주거급여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교육급여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연도 (인상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0	기준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생계급여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의료급여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주거급여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교육급여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2021	기준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생계급여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의료급여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주거급여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교육급여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2022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생계급여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의료급여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주거급여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교육급여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제작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누리집 (Homepage)	<a href="http://www.moe.go.kr">http://www.moe.go.kr</a> (교육부)
<p>지침과 관련된 질의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02-6222-6060(교육부 콜센터)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비매품〉

이 지침은 교육부 업무용 지침이므로 무단전재, 무단인용을 금합니다.

